

월간
재정포럼

2020. October_Vol.292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0

권두칼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검토 | 안경봉

현안분석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 장우현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한동숙

정책토론포트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기준 해외 사례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검토 | 안경봉 02

현안분석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 장우현 06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한동숙 32

정책토론포트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5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기준 해외 사례 외 84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검토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상임 초빙연구위원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하 2020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최종 발표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 세법개정안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은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금융세제에 대한 비판 - 배당소득 범위의 지나친 확장

현행 금융세제에 대한 대표적 비판은 배당소득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다.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나 손실을 취하게 되는데, 그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또한 파생결합증권(ELS)의 거래로부터의 이익과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서도 파생결합증권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수익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 등의 거래형식을 보면, 그로 인한 이익은 자본이득의 일종이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2020 세법개정안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 대상 범위에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을 포함하고, 적격집합투자기구는 분배금에 관해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

생한 금융투자소득 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유보이익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익자에 대해서는 분배 시 배당소득으로, 환매 및 양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서는 적격집합투자기구 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펀드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이 불일치한다든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인지 투자회사인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처리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2020 세법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최근 문제되는 사모펀드의 과세체계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세법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은 소득내용별로 과세하고, 유한책임사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할지는 현재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개편방안에 맞추어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2020 세법개정안은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잠정원천징수세액(=수익×20%)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하거나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의 신설과 함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부담은 커진 셈인데,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이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신고납세에 가까운 소득이 아닌가 싶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분배금을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분리과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이 전제되어 있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신고방식과 원천징수방식을 병행하는 방식 혹은 신고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2020년 세법개정안은 펀드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의 불일치, 집합투자기구에 따라 이익 처리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감소,
소득 원천에 따라 구분해
과세해야 하는
복잡성 완화 등의
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비율이 유가증권 시장 50%, 코스닥시장 90%에 근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을 향후 2년에 걸쳐 0.1%p 추가 인하(2021년 0.02%p 인하, 2022년 0.08%p 인하)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15조원이 증가되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24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세수감소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향후 과제이다. 2020년 8월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면 이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차입공매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분석해 보면 ‘(1) 주식의 대차거래 + (2) 주식의 매도 + (3) 주식의 매수 + (4) 주식의 반환’으로 구성된다. 차입공매도 거래를 (1)과 (2), (3), (4) 거래의 결합으로 보면 (2) 거래의 매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3) 거래의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재검토

금융세제와 관련하여 함께 검토할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이다. 거주자의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소득과세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그 과세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동일 금융소득에 대해 차별적 과세체계를 갖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기준 금액 전후의 세부담 차이가 커 비효율적인 절세 노력을 유발하여 자산분배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요구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차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분배금을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한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안의 복잡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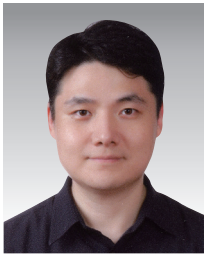
| 현안분석 |

■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현황 및 정책점 시사점
한동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¹⁾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wchang@kipf.re.kr)

I. 서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는 지난 경제발전 단계에서 형성되고 정책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현재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구조는 중소기업의 성과는 물론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주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도급 관계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 및 재정 정책연구에서 하도급 관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과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자료의 한계에 따라 일반적인 분석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되는 의견과 입장이 존재한다. 하도급 관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유인구조 측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도급 참여는 중소기업의 선택으로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하도급 관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하도급 관계를 통해 모든 중소기업이 이익을 보고 있지는 않으며,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인 하도급 관계에 묶여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착취당하게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하도급 관계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비록 중소기업의 하도급 참여 유인 구조와 그에 따른 효율성을 인정하더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원도급 대기업의 막강한 협상력 차이 때문에 하도급 체계하에서의 이익이 중소기업에 적절히 공유되지 않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하도급 관계

1) 본고는 Chang W., "Does Sub-contracting Pay for SMEs? Case of Korea," Working Paper, 2020과 장우현·우석진(2015)의 내용을 재정포럼에 소개할 목적으로 정리한 원고이다.

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하도급 구조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앞선 주장들은 각각 나름의 논리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기업과의 수직거래관계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용 가능한 최선의 자료를 선택·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의 실증분석에 있어 핵심적인 분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분석은 대기업과 수직거래관계를 맺은 기업의 성과 변화와 거래관계를 맺지 않은 유사 기업의 성과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대기업과 수직거래관계를 맺은 기업들만을 선택하여, 원도급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 변화에 따른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수직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유사한 기업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대기업의 성과가 하도급 중소기업과 연동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관계를 통해 수직관계의 전체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지 실제 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2013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수직관계 자료에 기반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하도급 기업과 비하도급 기업의 성과 변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 여부 및 원도급 대기업의 성과 변화와 중소기업의 성과에 대해 현재 사용 가능한 최선의 자료를 조사시점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고에서 활용한 수직관계 자료는 비록 거래의 규모가 기록되지 않았고 다층 수직관계를 명시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현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볼 수 있다.²⁾ 참고로 이전의 연구 중에서는 임원혁 외(2014)에서 동일한 수직관계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수직관계 조사시점과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해 횡단면 분석만을 진행한 아쉬움이 있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과 이어지는 제II장에서는 분석에 이용한 수직관계 데이터와 연계한 재무정보에 대해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하도급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는 유사 중소기업 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제IV장에서는 원도급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중소 수급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제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본고에서는 대기업과의 수직거래관계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용 가능한 최선의 자료를 선택·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가 가장 신뢰도가 높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 외부의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자료도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와 같은 한계점(거래규모의 미비, 다층 수직관계 조사의 미흡)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생태계 자료로
KISData의
2013년과 2014년
자료를 활용한다.

II. 분석에 사용한 자료 개관

1. 재무정보: KISData

본고에서 사용한 재무정보는 Nice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큰 규모인 KISData의 2013년과 2014년 자료이다. 본고에서 KISData를 분석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2013년 이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량이 더 보강되면서 중소기업의 정보가 다수 추가되어 활용 가능해졌기 때문이다.³⁾ KISData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의 주요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2013년과 2014년의 KISData 기업생태계 기초통계 요약

(단위: 개, 조원)

연도	항목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2013년	기업 수	189,799	2,251	192,050
	매출액	1,318.46	3,023.19	4,341.65
	영업이익	50.98	189.34	240.31
	순이익	31.77	119.98	151.75
	총자산	1,048.49	3,391.95	4,440.43
2014년	기업 수	178,565	2,481	181,046
	매출액	1,297.74	3,361.07	4,658.82
	영업이익	49.46	157.08	206.54
	순이익	31.57	105.70	137.27
	총자산	1,079.92	3,790.18	4,870.10

주: 대기업은 매출액 1천억원 초과 또는 총자산 1천억원 초과, 종사자 300명 초과인 경우임
출처: KISData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본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청의 전수조사인 「경제총조사」, 2010년 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장우현 외(2013)의 <표 1-3>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경제의 전체 매출액이 약 4,169조원 규모,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약 1,627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0년과 2013년의 3년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KISData에도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관계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연계율이므로, 수직관계 데이터를 개관하고 연계율을 확인하기로 한다.

3) 한국기업데이터의 KED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은 중소기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KISData도 2013년과 2014년 기간의 자료 연계율에서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수직관계 데이터 개관

본고에서 사용한 수직관계 데이터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13 수직관계 수집 자료」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2014년 초에 원급 사업체와 수급사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에 속한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주요 원급업체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사된 거래관계의 수는 총 8만 9,939건이었으며, 조사된 데이터 내에 포함된 수급사업체의 수는 총 6만 2,306개이다.

<표 2> 원급사업체와 수급사업체 간 거래관계

(단위: 건, 개)

원급·수급 자료 항목	2013년 12월 기준
거래관계 수	89,939
원급업체 수	750
수급업체 수	62,306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3. 데이터 결합

다음으로는 데이터 결합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먼저 원급업체 정보의 연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수급관계 자료의 원급업체 750개 중 KISData에서 기업의 재무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2013년 기준 10개, 2014년 기준 11개로, 재무자료와 수직관계 연계 시 원급업체 기준으로 기업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는 2%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총 8만 9,939개의 거래관계 중 원급업체 정보 미비에 따른 누락 계약건수는 2013년 기준 232건, 2014년 기준 841건에 불과하다.

수급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급기업 6만 2,306개 중 약 42.3%인 2만 6,381개의 수급기업이 KISData에서 확인되고 있다. 거래관계 기준으로 보면 총 8만 9,939개의 거래관계 중 4만 8,558개가 결합되어, 약 54%의 거래관계가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다.⁴⁾ 임원혁 외(2014)에서 재무데이터로 보다 적은 수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를 사용했을 경우 약 18%가 연계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유의하게 개선된 연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수직관계 데이터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13 수직관계 수집자료」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에 속한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주요 원급업체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한 데이터이다.

4) 본 장에서는 수급기업이 대기업인 경우도 포함한다. 다음 장의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수급기업이 대기업인 경우는 제외하며,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매출이나 영업이익 등)도 제외하였다.

데이터 결합결과, 재무자료와 수직관계 연계 시 원급데이터와 수급데이터 기준 모두 KIS-Value 사용 시에 비해 연계율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KISData 결합결과(원급데이터 기준)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거래관계 수	89,939	89,939
원급업체 정보 미비	10	11
원급업체 정보 미비에 따른 계약 건수	232	841
결합 거래 거래관계 수	89,707	89,098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계산

<표 4> KISData 결합결과(수급데이터 기준)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거래관계 수	89,939	89,939
수급업체 정보 미비	35,925	36,405
수급업체 정보 미비에 따른 계약 건수	41,149	41,637
결합 거래 거래관계 수	48,558	47,461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계산

III.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차이를 실증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기준으로 수직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직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나누고 성향점수짜짓기 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을 활용하여 수직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험군으로, 수직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과 2013년 특성이 유사한 중소기업을 대조군으로 나누어 2013년과 2014년 기간 동안 수직관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향점수짜짓기 추정법은 특정한 처리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가운데 비모수적 추정법 중 하나로, 관찰 가능한 특성을 기준으로 특정 수혜를 받을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수혜 대상과 비수혜 대상을 짝지어 처리의 효과를 분

석하는 방법론이다. 성향점수짜짓기 추정법은 대상의 관찰 가능한 특성만으로 정책을 수혜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부 독립 조건과, 동일한 관찰 가능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이 전부 해당 처리를 수혜하거나 전부 수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두 가지 조건만으로 정책 또는 처리 여부의 효과를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최근 기업정책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학술과 정책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하도급 참여 여부를 처리변수로 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성향점수 짜짓기 추정을 수행하였다.

- 1단계: 2013년의 수직관계 이력과 2013년 및 2014년의 기업 재무정보를 연계한다. 두 자료는 사업체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계하였다.
- 2단계: 하도급 중소기업의 성과분석과 관련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기 위해 수급기업 중 대기업을 제외한다. 본고에서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천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수급기업에서 제외하였다.
- 3단계: 성향점수를 도출하기 위한 관찰 가능한 특성을 선정하였는데, 본고에서 활용한 변수는 해당 기업의 2013년 기준 업력, 매출, 영업이익, 총자산,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산업의 평균 매출, 평균 영업이익, 평균 총자산이다. 산업 특성 변수는 산업의 이질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산업의 기업들을 짜짓기 위해 활용하였다.
- 4단계: 관찰 가능한 특성에 따라 성향점수를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짜짓기하여 수직관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⁵⁾ 성향점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로짓(logit) 모형, 짜짓기 원칙은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표본(Nearest Neighbour: NN), 측정한 정책효과로는 전체의 14% 정도가 실험군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실험군에 한정된 평균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reated: ATET)를 선택하였다. 평가한 재무성과지표는 2013년과 2014년간의 재무성과 변화분으로서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총자산, 총자산영업이익률의 변화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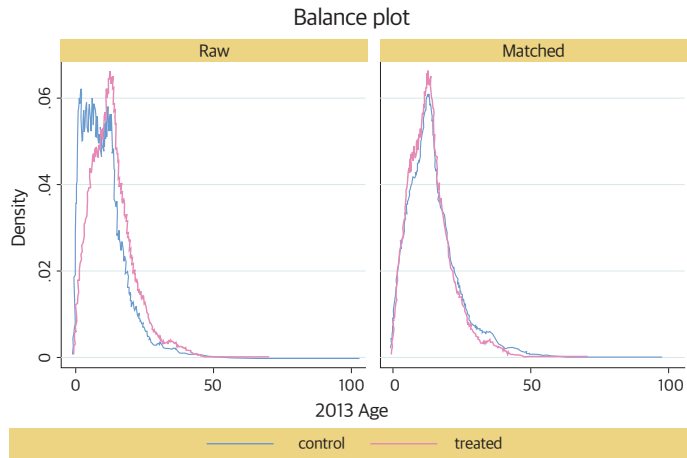
2013년을 기준으로 수직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을 나누고, 성향점수짜짓기 추정법을 활용하여 2013년과 2014년 기간 동안 수직관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 ROA 추정에서 2014년과 2013년 간 ROA 차이가 5,000% 초과, -5,000% 미만인 값들은 이상치로 제외하였다.

하도급 참여 여부를
처리변수로 하여
총 5단계에 따라
성향점수짜짓기 추정을
수행하였다.
매출액의 경우는
수직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직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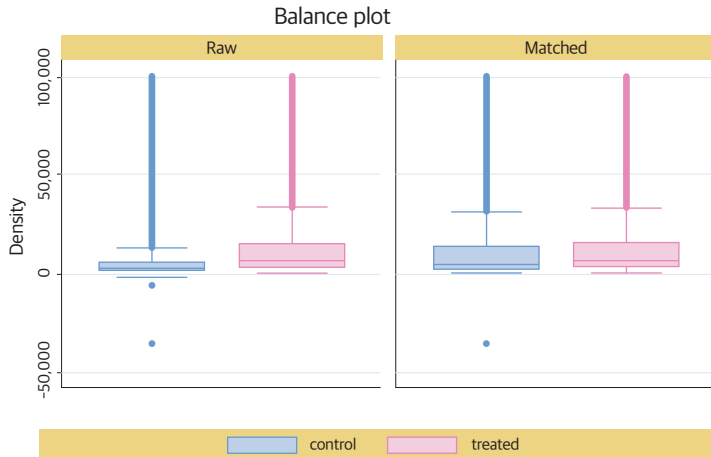
■ 5단계: 성향점수짜짓기 추정법의 가정이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정 특성에 대해 성향점수가 1 또는 0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성향점수 분포도 및 통제변수의 짜짓기 이전·이후 분포도를 하도급 기업과 비하도급 기업에 대해 그려보고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업력과 매출액 분포도 예시이다.

[그림 1] 2013년 하도급기업과 비하도급기업 업력 분포도(짜짓기 이전·이후 비교)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계산

[그림 2] 2013년 하도급기업과 비하도급기업 매출액 분포도(짜짓기 이전·이후 비교)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계산

참고로 각 단계를 거쳐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와 대기업 원급사업자를 연결하여 추정예 최종 사용한 수직관계 연계 재무자료의 수는 2013년의 경우 기업 수 기준 2만 4,146개, 관계 수 기준 4만 2,814개이다.⁶⁾

앞선 단계에 따라 수직관계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매출액의 경우 수직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직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강건성 확인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로, 수직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 특성과 산업 특성에 있어 동질적인 기업에 비해 매출의 양적인 증가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분석에서의 하도급 기업과 비하도급 기업의 매출액 증분의 평균 차이는 약 3억 2,800만원 수준이다.

<표 5>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년 대비 2014년 매출액 변화량 차이

(단위: 백만원, 개)

ATET	매출액 증분 차이	표준오차	z값	P값	신뢰구간(95%)	
수직관계 유무	328.39	64.62	5.08	0.000	201.74	455.05
관측치 수	111,647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다음으로는 총자산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총자산도 매출과 마찬가지로 수직관계가 보고된 중소기업의 경우 더 높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 차이는 약 4억 5,500만원 수준으로, 자산규모에 있어서는 하도급 기업이 유사 비하도급 기업에 비해 1년간 평균적으로 더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다양한 강건성 확인 시에도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표 6>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년 대비 2014년 총자산 변화량 차이

(단위: 백만원, 개)

ATET	총자산 증분 차이	표준오차	z값	P값	신뢰구간(95%)	
수직관계 유무	455.05	43.87	3.39	0.001	62.77	234.73
관측치 수	111,647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총자산 또한
매출과 마찬가지로
수직관계가 보고된
중소기업의 경우
더 높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제II장에서 사용한 자료와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절에서는 대기업이 수급기업인 경우를 제외하였고, 추정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일부 미비한 경우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생태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가
단기적인 양적 성장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제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영업이익의 증분을 추정한 결과, 영업이익에서는 하도급 기업이 유사한 비하도급 기업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⁷⁾

<표 7>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 변화량 차이

(단위: 백만원, 개)

ATET	영업이익 증분 차이	표준오차	z값	P값	신뢰구간(95%)	
수직관계 유무	-1.418	15.71	-0.09	0.928	-32.20	29.36
관측치 수	111,642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총자산과 영업이익을 함께 고려한 총자산영업이익률에 대한 효과 추정에서도 P값은 11%로 다른 추정치와 비교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기업이 비하도급 기업에 비해 질적인 수익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년 대비 2014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량 차이

(단위: %p, 개)

ATET	총자산 영업이익률 증분	표준오차	z값	P값	신뢰구간(95%)	
수직관계 유무 (1 vs 0)	0.17	0.11	1.59	0.11	-0.04	0.38
관측치 수	111,642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기업생태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는 매출액과 총자산 규모 등 단기적인 양적 성장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기업의 생산성과 장기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하도급 관계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원도급 대기업이 하청 물량은 늘리되 하도급 중소기업 대비 납품단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발견만으로

7) 수익성의 경우 강건성 확인에서 일부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매출액 및 총자산과 그 양상은 분명히 다르다. 예컨대 매출액이나 총자산은 강건성 확인 과정에서 통제변수 중 하나 정도의 제외와 추가에 따라 유의성이 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수익성은 업력 등 주요 개별 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유의성이 변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본고의 결과는 신뢰성이 있고 합리적인 변수는 모두 포함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대기업이 강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계의 편익을 더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시장경쟁이 심화하여 대기업의 이익규모도 줄었을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장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하도급을 선택해도 대안적인 독립기업으로서의 경영 선택에 비해 수익성 면에서 평균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⁸⁾

다음 장에서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성과를 함께 분석하여, 원하청 관계의 수익 배분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가 원청 대기업의 성과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V. 원도급 대기업의 성과 변동에 따른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해당 중소기업과 거래관계를 지닌 원청 대기업의 2013~2014년의 재무성과 변화와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제III장에서는 기업 단위의 분석을 시행하였지만, 본 장에서는 관계 단위의 분석을 실시한다. 하나의 하도급 기업이 다수의 원청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각 재무성과 지표별로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원도급 대기업의 재무성과와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Delta Y_{\text{하도급}(2013-2014)} = \alpha_1 X_{\text{하도급}(2013)} + \alpha_2 Y_{\text{하도급}(2013)} + \alpha_3 I_{\text{하도급}(2013)} + \alpha_4 \Delta Y_{\text{원도급}(2013-2014)} + \alpha_5 Y_{\text{원도급}(2013)} + \alpha_6 Y_{\text{원도급}(2013)} + \varepsilon_{\text{하도급}}$$

Y 는 재무성과 지표, X 는 기업의 특성, I 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으로서, 위의 다중회귀식은 2013년을 기준으로 원도급과 하도급 기업의 특성을 수준(level)으로 통제하고⁹⁾ 원청 대기업의 2013~2014년 해당 재무성과 지표 변화가 하도급 기업의 재무성과 지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즉, 위의 식에서는 α_4 가 원청 대기업의 재무지표 변화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하도급 기업과 원도급 기업의 재무성과 지표로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8) 다만, 본고에서 사용한 수익자료가 모든 하도급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에 의한 편익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제IV장의 분석에서는 분명히 수직관계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와 같은 편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9) 참고로 회귀식 설정에 있어 로그를 취하지 않고 수준과 차분을 이용한 이유는, 주요 변수에 영업이익 등 음(-)의 값을 갖는 변수들이 있으며 이들의 값은 분석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준을 사용할 경우에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비선형관계의 문제를 우려할 수 있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올 경우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청 대기업의 매출 증가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의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본 절에서는 하도급 기업과 원도급 기업의 재무성과 지표로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을 선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13~2014년의 원청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청 대기업의 매출 증가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계수의 크기를 보면 원청 대기업의 매출이 1조원 증가함에 따라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은 평균 약 3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수의 크기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원도급과 하도급의 기업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¹⁰⁾ 그리고 본 결과는 매출에 미치는 다른 주요 요소들을 통제하고 원도급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과 연계된 추가 효과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하도급 기업의 매출 측면에서는 원도급 기업의 매출 증가에 연계하여 충분한 증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총자산의 증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의 총자산이 증가하면 하도급 중소기업의 총자산도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원청 대기업의 총자산이 1조원 증가하면 하도급 기업의 총자산은 평균 1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이 매출과 자산 등 양적 규모를 증가시키에 따라 하도급 중소기업에 양적 하도급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함의할 수 있다.

<표 9>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매출액 증분 분석(전 산업)

(단위: 백만원, 개)

매출액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20.71	4.76	4.35	0.000	11.38	26.17
전기 매출액	-0.07	0.01	-10.48	0.000	-0.08	-0.06
전기 영업이익	0.54	0.05	9.81	0.000	0.43	0.63
전기 총자산	0.03	0.007	4.47	0.000	0.02	0.04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7	0.001	4.93	0.000	0.004	0.008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2	0.01	-1.78	0.076	-0.05	0.01
전기 산업 총자산	-0.01	0.001	-4.99	0.000	-0.008	-0.004
원급업체 매출액 증분	0.00003	0.00009	3.59	0.000	0.0001	0.0005

10) 참고로 원도급 695개 사업자는 평균 61.6개의 하도급 기업과 연계되어 있다(최솟값 1개, 최댓값 1,003개). 원도급 사업자의 총자산 평균은 1조 6천억원, 총매출 평균은 1조 5,300억원이고 영업이익 평균은 798억원이다. 반면, 하도급 사업자는 평균 1.77개의 원도급사업자와 연계되며(최솟값 1개, 최댓값 34개), 하도급 사업자의 총자산 평균은 82억원, 총매출 평균은 110억원, 영업이익 평균은 4억 3,600만원이다.

<표 9>의 계속

(단위: 백만원, 개)

매출액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3	0.00001	2.35	0.019	0.00000	0.00006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007	0.0001	0.054	0.957	-0.0002	0.0003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2	0.0001	2.14	0.032	0.00002	0.00007
상수	568.26	65.43	8.69	0.000	440.02	691.54
관측치 수	32,565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총자산 또한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의 총자산이 증가하면 하도급 중소기업의 총자산도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총자산 증분 분석(전 산업)

(단위: 백만원, 개)

총자산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9.17	2.85	-3.22	0.001	-14.75	-3.58
전기 매출액	0.02	0.003	7.66	0.000	0.02	0.03
전기 영업이익	0.42	0.04	11.55	0.000	0.34	0.49
전기 총자산	-0.02	0.01	-3.70	0.000	-0.03	-0.01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3	0.001	2.53	0.012	0.0006	0.004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2	0.01	-2.61	0.009	-0.03	-0.004
전기 산업 총자산	0.0001	0.001	0.10	0.920	-0.002	0.002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2	0.00002	-1.41	0.159	-0.00006	0.00001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007	0.00005	0.14	0.885	-0.00009	0.0001
원급업체 총자산 증분	0.0001	0.00006	2.04	0.042	0.00000	0.0002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02	0.00001	1.51	0.13	-0.00001	0.00005
상수	347.72	38.61	9.01	0.000	272.04	423.39
관측치 수	32,565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영업이익의
분석결과는
매출액, 총자산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의 분석결과는 매출액과 총자산 등 양적인 지표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증가분을 하도급 중소기업과 나누고 있지 않음은 물론, 비록 금액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오히려 대기업 영업이익의 증가에는 중소기업 영업이익의 감소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본 실증분석의 결과는 흥미롭다 하겠다. 분석에 따르면, 원급업체의 영업이익이 1조원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의 영업이익은 평균 1억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 증분 분석(전 산업)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강건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2.13	1.34	-1.59	0.11	-4.76	0.50
전기 매출액	0.01	0.002	7.17	0.000	0.01	0.02
전기 영업이익	-0.60	0.03	-18.34	0.000	-0.66	-0.53
전기 총자산	0.005	0.002	2.11	0.035	0.0004	0.01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002	0.0004	0.04	0.967	-0.0007	0.0008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03	0.003	1.13	0.258	-0.002	0.008
전기 산업 총자산	0.00004	0.0004	0.10	0.917	-0.0007	0.0008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1	0.000006	-2.41	0.016	-0.00003	0.00000
원급업체 영업이익 증분	-0.0001	0.00003	-2.74	0.006	-0.0002	-0.00003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02	0.00002	0.63	0.53	-0.00003	0.00006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01	0.000005	2.17	0.03	0.00000	0.00002
상수	135.60	17.05	7.96	0.000	102.19	169.02
관측치 수	32,561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이와 같은 현상은 흥미로울뿐더러, 원도급 대기업과 하도급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의 배분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므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먼저,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때에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났을 때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영업이익 변동에 유의한 음(-)의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영업이익에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아, 효과가 비대칭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영업이익 변동에 유의한 음(-)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표 12>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 증분 분석
(전 산업, 원도급 영업이익 증가조건)**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강건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3.60586	1.810891	-1.99	0.046	-7.15538	-0.05633
전기 매출액	0.011049	0.002384	4.63	0	0.006376	0.015722
전기 영업이익	-0.58764	0.047378	-12.4	0	-0.6805	-0.49477
전기 총자산	0.007774	0.003506	2.22	0.027	0.000902	0.014646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015	0.000433	0.35	0.729	-0.0007	0.000999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03599	0.003065	1.17	0.24	-0.00241	0.009607
전기 산업 총자산	-0.00035	0.000312	-1.12	0.263	-0.00096	0.000262
전기 원금업체 매출액	-2.9E-05	9.71E-06	-2.95	0.003	-4.8E-05	-9.60E-06
원금업체 영업이익 증분	-0.00037	0.000121	-3.02	0.003	-0.0006	-0.00013
전기 원금업체 영업이익	-0.00021	6.39E-05	-3.23	0.001	-0.00033	-8.1E-05
전기 원금업체 총자산	2.87E-05	8.50E-06	3.37	0.001	0.000012	4.53E-05
상수	177.3793	24.61248	7.21	0	129.1363	225.6222
관측치 수	17,410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영업이익
변동에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아
효과가 비대칭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 증분 분석
(전 산업, 원도급 영업이익 감소조건)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강건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0.33573	2.001715	-0.17	0.867	-4.25934	3.587868
전기 매출액	0.014114	0.002438	5.79	0	0.009336	0.018892
전기 영업이익	-0.60443	0.044425	-13.61	0	-0.69151	-0.51735
전기 총자산	0.001966	0.003488	0.56	0.573	-0.00487	0.008802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183	0.000767	-2.39	0.017	-0.00333	-0.00033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0131	0.00436	-0.3	0.764	-0.00985	0.00724
전기 산업 총자산	0.00259	0.000852	3.04	0.002	0.00092	0.004261
전기 원금업체 매출액	-1.4E-05	9.67E-06	-1.39	0.163	-3.2E-05	5.48E-06
원금업체 영업이익 증분	-6.3E-05	5.53E-05	-1.14	0.255	-0.00017	4.54E-05
전기 원금업체 영업이익	3.44E-05	3.15E-05	1.09	0.275	-2.7E-05	9.62E-05
전기 원금업체 총자산	8.12E-06	8.67E-06	0.94	0.349	-8.87E-06	2.51E-05
상수	91.9289	23.87721	3.85	0	45.12668	138.7311
관측치 수	15,151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다음으로는 하도급기업이 다수의 원도급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하도급 기업의 협상력이 높아 해당 효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변수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하도급 기업이 10곳을 초과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10곳 이하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감소현상이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

11) 참고로 강건성 확인결과 하도급 관계 수가 6곳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통계적인 유의성이 사라지지만, 본고에서는 10곳의 예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 14>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 증분 분석
(전 산업, 하도급기업 거래처 10곳 초과)**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강건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53.90	6.92	-7.79	0.000	-67.48	-40.32
전기 매출액	0.03	0.005	5.57	0.000	0.02	0.04
전기 영업이익	-0.75	0.042	-17.95	0.000	-0.84	-0.67
전기 총자산	-0.05	0.015	-3.58	0.000	-0.08	-0.02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1	0.008	-1.30	0.192	-0.03	0.006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68	0.17	4.07	0.000	0.3549	1.014
전기 산업 총자산	0.03	0.008	3.52	0.000	0.012	0.041
전기 원금업체 매출액	-0.00001	0.00004	-0.14	0.887	-0.00008	0.0007
원금업체 영업이익 증분	0.00004	0.00034	0.11	0.909	-0.0006	0.0008
전기 원금업체 영업이익	0.00036	0.00021	1.69	0.09	-0.00006	0.0008
전기 원금업체 총자산	-0.00002	0.00003	-0.56	0.575	-0.00009	0.00005
상수	1,408.79	168.84	8.34	0.000	1,077.66	1,740
관측치 수	2,004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하도급기업이 다수의 원도급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10곳을 초과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10곳 이하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이익 감소현상이 발견되었다.

업력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업력이 10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에서는
거래관계를 맺은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시 영업이익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표 15>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 증분 분석
(전 산업, 하도급기업 거래처 10곳 이하)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강건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0.10843	1.283939	-0.08	0.933	-2.625	2.408145
전기 매출액	0.009256	0.001903	4.86	0	0.005525	0.012986
전기 영업이익	-0.51355	0.036907	-13.92	0	-0.58589	-0.44122
전기 총자산	0.008558	0.002392	3.58	0	0.003869	0.013246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9.6E-05	0.000354	-0.27	0.787	-0.00079	0.000599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03083	0.002436	1.27	0.206	-0.00169	0.007858
전기 산업 총자산	-2.5E-05	0.000299	-0.08	0.932	-0.00061	0.000561
전기 원금업체 매출액	-1.4E-05	6.15E-06	-2.3	0.022	-2.6E-05	-2.08E-06
원금업체 영업이익 증분	-6.8E-05	3.36E-05	-2.04	0.041	-0.00013	-2.67E-06
전기 원금업체 영업이익	1.68E-05	2.42E-05	0.7	0.487	-3.1E-05	6.43E-05
전기 원금업체 총자산	1.01E-05	4.56E-06	2.21	0.027	1.14E-06	0.000019
상수	76.3493	17.45712	4.37	0	42.13263	110.566
관측치 수	30,557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다음으로는 업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업력이 오래된 하도급 기업일수록 거래기간이 길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력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업력이 10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에서는 거래관계를 맺은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시 영업이익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나, 10년 이하 업력의 하도급 중소기업에서는 영업이익 저하현상이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 증분 분석
(전 산업, 하도급기업 업력 10년 초과)**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강건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1.69256	2.026751	-0.84	0.404	-5.66513	2.280005
전기 매출액	0.011603	0.001858	6.24	0	0.007961	0.015245
전기 영업이익	-0.62865	0.032798	-19.17	0	-0.69294	-0.56436
전기 총자산	0.005107	0.002822	1.81	0.07	-0.00042	0.010638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049	0.000476	-1.04	0.3	-0.00143	0.00044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02868	0.003764	0.76	0.446	-0.00451	0.010246
전기 산업 총자산	0.00073	0.000493	1.48	0.138	-0.00024	0.001696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1.85E-05	7.34E-06	-2.52	0.012	-3.3E-05	-4.09E-06
원급업체 영업이익 증분	-0.00013	4.04E-05	-3.1	0.002	-0.0002	-4.6E-05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1.74E-05	2.86E-05	0.61	0.544	-3.9E-05	7.35E-05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1.15E-05	5.39E-06	2.14	0.033	9.50E-07	2.21E-05
상수	168.0225	31.72912	5.3	0	105.8312	230.2137
관측치 수	22,897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10년 이하 업력의 하도급 중소기업은 거래관계를 맺은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시 영업이익 저하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동일한 분석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 산업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7>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 증분 분석
(전 산업, 하도급기업 업력 10년 이하)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강건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14.7557	3.848405	-3.83	0	-22.2994	-7.21203
전기 매출액	0.009825	0.002503	3.92	0	0.004918	0.014732
전기 영업이익	-0.31824	0.041502	-7.67	0	-0.39959	-0.23688
전기 총자산	0.004786	0.004313	1.11	0.267	-0.00367	0.01324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0056	0.00051	0.11	0.913	-0.00094	0.001056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00698	0.002679	0.26	0.794	-0.00455	0.005949
전기 산업 총자산	-2.64E-04	2.93E-04	-0.9	0.368	-0.00084	3.11E-04
전기 원금업체 매출액	-5.03E-06	9.91E-06	-0.51	0.612	-2.5E-05	1.44E-05
원금업체 영업이익 증분	8.87E-06	6.24E-05	0.14	0.887	-0.00011	0.000131
전기 원금업체 영업이익	1.12E-05	4.24E-05	0.26	0.792	-7.19E-05	9.42E-05
전기 원금업체 총자산	6.89E-06	8.11E-06	0.85	0.396	-9.00E-06	2.28E-05
상수	115.4158	26.54583	4.35	0	63.38037	167.4512
관측치 수		9,664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다음으로는 동일한 분석을 제조업 및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 간에 이질성이 있어 산업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수직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로 본 장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은 제9차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101번부터 425번까지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전 산업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도급 대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와 각각 연결되었지만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 <표 20>은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표 18>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매출액 증분 분석(제조업과 건설업)

(단위: 백만원, 개)

매출액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24.29	5.75	4.23	0.000	13.02	35.56
전기 매출액	-0.082	0.008	-10.50	0.000	-0.10	-0.07
전기 영업이익	0.59	0.06	10.36	0.000	0.48	0.70
전기 총자산	0.034	0.008	4.43	0.000	0.02	0.05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1	0.002	4.28	0.000	0.005	0.01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1	0.02	-0.81	0.420	-0.04	0.02
전기 산업 총자산	-0.01	0.003	-3.98	0.000	-0.02	-0.01
원급업체 매출액 증분	0.0003	0.0001	3.54	0.000	0.0002	0.0005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3	0.00001	2.21	0.027	0.00000	0.00005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006	0.0001	0.04	0.967	-0.0003	0.0003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3	0.0001	2.24	0.025	0.00003	0.00051
상수	769.76	88.03	8.74	0.000	597.21	942.30
관측치 수	23,905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표 19>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총자산 증분 분석(제조업과 건설업)

(단위: 백만원, 개)

총자산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13.90	3.25	-4.28	0.000	-20.27	-7.53
전기 매출액	0.02	0.003	7.69	0.000	0.02	0.03
전기 영업이익	0.41	0.04	10.48	0.000	0.34	0.49
전기 총자산	-0.02	0.005	-3.79	0.000	-0.03	-0.01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03	0.001	0.28	0.779	-0.002	0.002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2	0.007	-3.31	0.001	-0.04	-0.01
전기 산업 총자산	0.003	0.001	2.15	0.032	0.0003	0.006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1	0.00002	-0.74	0.46	-0.00005	0.00002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003	0.00005	-0.06	0.953	-0.0001	0.0001
원급업체 총자산 증분	0.0001	0.00006	1.90	0.058	0.00000	0.0002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01	0.00002	0.871	0.384	-0.00002	0.00005
상수	417.23	49.58	8.415	0.000	320.04	514.41
관측치 수	23,905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원도급 대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와 각각 연결되었지만,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달리
매출액이나 총자산,
영업이익에 있어
원도급 대기업을
재무성과 변화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 증분 분석(제조업과 건설업)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2.22	1.63	-1.36	0.174	-5.41	0.98
전기 매출액	0.01	0.002	7.13	0.000	0.01	0.02
전기 영업이익	-0.62	0.03	-18.36	0.000	-0.68	-0.55
전기 총자산	0.002	0.003	0.833	0.405	-0.003	0.008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1	0.0005	-2.17	0.030	-0.002	-0.0001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02	0.003	-0.76	0.447	-0.008	0.004
전기 산업 총자산	0.002	0.001	3.00	0.003	0.0007	0.003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1	0.000007	-1.69	0.092	-0.00003	0.00000
원급업체 영업이익 증분	-0.0001	0.00004	-2.62	0.009	-0.0002	-0.00002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02	0.00003	0.72	0.470	-0.00003	0.00007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007	0.000005	1.24	0.214	0.00000	0.00002
상수	160.25	22.59	7.09	0.000	115.97	204.53
관측치 수	23,901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서비스업은 제9차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451번부터 759번까지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달리 매출액이나 총자산, 영업이익에 있어 원도급 대기업을 재무성과 변화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춰볼 때 서비스업에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과는 달리 영업이익의 직접적인 이해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도급 대기업을 재무성과 변화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하도급 관계를 통한 공동의 가치창출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의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1> ~ <표 22>는 서비스업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21>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매출액 증분 분석(서비스업)

(단위: 백만원, 개)

매출액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10.17	7.57	-1.34	0.179	-25.01	4.67
전기 매출액	-0.034	0.01	-2.76	0.006	-0.06	-0.01
전기 영업이익	0.10	0.08	1.28	0.201	-0.06	0.26
전기 총자산	0.033	0.016	2.16	0.031	0.003	0.06
전기 산업 매출액평균	-0.01	0.01	-0.97	0.334	-0.03	0.01
전기 산업 영업이익평균	0.25	0.09	2.69	0.007	0.07	0.43
전기 산업 총자산	0.002	0.004	0.581	0.561	-0.005	0.01
원급업체 매출액 증분	0.0000002	0.0002	0.001	0.999	-0.00038	0.00038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2	0.000021	-1.11	0.267	-0.00006	0.00002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1	0.000217	0.62	0.537	-0.0003	0.0006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05	0.0002	0.31	0.759	-0.0003	0.0004
상수	422.25	99.20	4.26	0.000	227.79	616.71
관측치 수	8,522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표 22>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총자산 증분 분석(서비스업)

(단위: 백만원, 개)

총자산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7.94	5.92	1.34	0.180	-3.67	19.55
전기 매출액	0.02	0.007	2.15	0.031	0.001	0.03
전기 영업이익	0.42	0.07	6.14	0.000	0.28	0.55
전기 총자산	-0.009	0.01	-0.82	0.414	-0.03	0.01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4	0.008	0.489	0.625	-0.01	0.02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02	0.07	-0.029	0.977	-0.14	0.14
전기 산업 총자산	-0.001	0.003	-0.39	0.699	-0.007	0.005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7	0.00003	-2.54	0.011	-0.0001	-0.00002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05	0.0001	0.43	0.665	-0.0002	0.0003
원급업체 총자산 증분	0.0003	0.0002	1.13	0.258	-0.0002	0.0007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04	0.00003	1.66	0.098	-0.00001	0.00010
상수	141.65	86.23	1.64	0.100	-27.39	310.69
관측치 수	8,522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원도급 대기업의 재무성과 변화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하도급 관계를 통한 공동의 가치창출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의할 수 있다.

원도급 대기업의 매출이나 총자산 변화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과 총자산 변화와 각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때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하도급 중소기업의 2013~2014년 영업이익의 증분 분석(서비스업)

(단위: 백만원, 개)

영업이익 증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신뢰구간(95%)	
전기 업력	-3.40	1.88	-1.81	0.070	-7.08433	0.28241
전기 매출액	0.005	0.003	1.96	0.050	-0.00001	0.01
전기 영업이익	-0.45	0.08	-5.33	0.000	-0.61	-0.28
전기 총자산	0.01	0.005	2.99	0.003	0.005	0.02
전기 산업 매출액 평균	-0.004	0.002	-2.083	0.037	-0.00794	-0.00024
전기 산업 영업이익 평균	0.03	0.02	1.44	0.149	-0.01	0.07
전기 산업 총자산	0.001	0.0007	1.59	0.112	-0.0003	0.003
전기 원급업체 매출액	-0.00002	0.000009	-1.79	0.074	-0.00003	0.00000
원급업체 영업이익 증분	-0.00002	0.000006	-0.257	0.797	-0.0001	0.0001
전기 원급업체 영업이익	0.00005	0.00005	0.848	0.397	-0.00006	0.0002
전기 원급업체 총자산	0.00001	0.000008	1.400	0.162	0.00000	0.00003
상수	99.19	25.93	3.83	0.000	48.36	150.03
관측치 수	8,522					

주: P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유의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자료와 KISData를 연계하여 저자 추정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와 원도급 대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2014년의 원도급 대기업의 매출이나 총자산 변화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과 총자산 변화와 각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때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배분은 중요하므로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 효과는 비대칭적이어서 원도급 대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경우로 한정하면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도급 대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하면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더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기업의 경우는 해당 영업이익 감소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중소기업에서는 원청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 시 영업이익의 유의한 감소 현상이 확인되고 있었다. 이는, 거래처의 수는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 다변화 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가 단가조정 등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유효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업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업기간이 오래된 고업력 기업에서는 해당 효과가 유의하게 발견되는 반면, 업력이 낮은 기업에서는 해당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대기업과의 관계가 오래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업력이 긴 기업에서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속할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도급 중소기업이 서비스업에 속할 경우에는 대기업의 재무성과 변화와 하도급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변화는 유의한 관계가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하도급 관계에서는 적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또는 하도급 관계의 성과와 연동된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관계의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관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먼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 관계에 있지 않은 유사한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 총자산 등 양적인 지표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개선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과 총자산을 함께 고려한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재무성과를 원도급 대기업의 성과 변화에 따라 분석한 결과, 원도급 대기업의 매출과 총자산 증가는 각각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과 총자산의 유의한 증가와 연결되었지만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오히려 하도급 중소기업 영업이익의 유의한 감소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수가 충분히 많거나 중소기업의 업력이 낮아 대기업과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하도급 관계에서는
적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또는
하도급 관계의 성과와
연동된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과
하도급 관계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책당국은
정책평가와 환류를 위한
하도급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시급히 구축하고
평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 거래기간이 짧을수록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경쟁당국은 물론 조세·재정 당국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설계 시 대상 선정과 환경 개선, 맞춤형 정책 도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기반해 보면,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불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더 컸던 2014년 기준으로도 원도급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하도급 관계를 통해 절대적으로 착취하고 있었다든지, 그 착취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었다고까지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국민경제적으로 하도급 관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느냐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회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도급 관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수익이 재투자로 연결되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떤 원인들에 의해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에 기반하여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우현(2019)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부정책의 혜택이 원도급 대기업에 빨대효과를 거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관계만 분석할 경우 하도급의 성과가 낮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도급 중소기업이 하도급 관계에 안주하여, 독립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도 확인된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확인한 가장 아쉬운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수직관계에 따른 중소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 수준 이상의 수직관계 자료가 패널자료로 구축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도급 문제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을 위해서는 다층적 하도급 관계 구조와 거래규모 등 주요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준비와 활용 계획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도급 관계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책당국은 정책평가와 환류를 위한 하도급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시급히 구축하고 평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의 실증분석은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자료로 하도급 관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향후 본고의 결과가 하도급 관계와 중소기업의 성과에 관한 다양한 정책연구의 수행과 정책 수립에 부족하나마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장우현, 「중소기업 재정지원 빨대효과 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협업생태계 개선 제언」, 『재정포럼』, 2019년 8월호, 통권 제27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8~31.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연구보고서 2013-08, 한국개발연구원, 2013.

장우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Ⅲ)』, 한국개발연구원, 2015.

임원혁·방세훈·양용현·이수일·이화령·장우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 및 대책 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용역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4.

Chang W., “Does Subcontracting Pay for SMEs? Case of Korea,” Working Paper, 2020.

한국개발연구원, 「2013 수직관계 수집자료」, 2014.

NICE평가정보(주), 「KISData」, 2015.

향후 본고의 결과가
하도급 관계와
중소기업의 성과에 관한
다양한 정책연구의
수행과 정책 수립에
부족하나마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ands@kipf.re.kr)

I. 서론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수자원, 에너지 개발 등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발전의 토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산업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발전 구축 분야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공공기관은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그후로 점점 해외 사업 진출방식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초기에는 원조형 사업이나 단순도급형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접투자 방식 중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PPP는 체계화된 재정투자를 포함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윈-윈 전략으로 동반 진출을 도모하는 해외진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 발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형태의 진출이 나타났는데, 특히 동반 성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협력사가 국산 기자재를 수출하며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하는 사례들이 발전사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을 독려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동반 진출로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여건이 늘 순조롭게 갖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선행연구들은 해외 사무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일부 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기는 하였지만, 2010년 초반에만 진행되었고, 최근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해외투자에 대한 현황 점검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매년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외진출 사업방식과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방식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성을 고려한 직접투자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와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공적자금을 통해 타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물자나 현금을 공여하거나,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개발협력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조 수혜국에서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그 위상이 변화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1991년부터 개발도상국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다. 그 결과 1991년 1억 1천만달러였던 원조규모는 2016년 22억 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절대 규모 면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다.¹⁾ 다만,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는 원조규모가 부족한 편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²⁾

공적개발원조는 협력형태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된다. 2018년 기준으로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여 11억달러 이상의 사업

**본고에서는
해외진출 사업방식과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7, 검색일자: 2019. 5. 20.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2013.

공적개발원조는
공적자금을 통해
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물자나 현금 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개발협력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타국의 영토에 지리적으로
주재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뜻한다.

을 시행하였으며,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여 6억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무상원조 사업의 예로는 연수생 위탁교육 등 인적 교류 성격의 사업이 많고, 유상원조 분야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앙골라 농업현대화 사업, 한국전력공사의 방글라데시 송전망 개발사업 등의 기술용역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원조사업의 목적은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적인 미래 시장인 신흥국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닦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 이외에도 각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유·무상 원조사업을 연계하거나 민간진출 연계 등 원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해외직접투자

한편, 공적개발원조와는 달리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경영에 참가하는 형태인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국외 현지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사에서 보유한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거래행위로 정의된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타국의 영토에 지리적으로 주재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뜻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 공기업의 직접투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OECD 보고서³⁾에 따르면, 육상교통, 통신, 전기, 수도 및 발전 부문과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부문에서 2010~2030년까지 71조달러(누적 기준)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어 향후에도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내에서도 대상 국가에 따라 투자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인 경우에는 국제 인수합병을,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신규개발사업 형태를 통해 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업종으로 구분하면 선진국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사업 분야(33%)와 통신(19%)에 치중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광업(37%), 통신(20%)에 치중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급성장하는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광업에 집

3) OECD, *Debate the Issues: Investment*, 2016.

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진출하는 국가에서 민간부문이 자기책임하에 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하며 성과나 수요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기간 계약 형태인 민관협력 방식(PPP)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방식으로 직접투자 방식의 진출을 시작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최근에 진행된 해외직접투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본고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2019년 기준, 129개)의 해외진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외 사업은 해외에서 추진하는 영리·비영리 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비밀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조사결과, 해외 사업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의 35.7%인 46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46개 기관 중 33개 기관은 시장성 있는 해외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3개 기관은 ODA나 컨설팅 성격의 사업만을 수행하였다. 46개 기관에서 추진한 전체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 사업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해외진출 사업 중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1> 해외 사업 수행기관 목록(ODA 수행기관 포함)

구분	기관명	구분	기관명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기술보증기금	25	한국서부발전(주)
3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6	한국석유공사
4	대한석탄공사	27	한국수력원자력(주)
5	부산항만공사	2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6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수자원공사
7	축산물품질평가원	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8	한국가스공사	31	한국시설안전공단
9	한국감정원	32	한국임업진흥원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해외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해외진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사업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의 35.7%로 확인되었다.

해외진출 사업 현황을 기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공기업은 수익 추구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준정부기관은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낮으며 기관 고유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해외 사업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의 계속

구분	기관명	구분	기관명
10	한국공항공사	33	한국전기안전공사
11	한국과학창의재단	34	한국전력공사
12	한국관광공사	3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	36	한국정보화진흥원
14	한국광해관리공단	37	한국조폐공사
15	한국국제협력단	38	한국중부발전(주)
16	한국토정정보공사	39	한국지역난방공사
17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0	한국철도공사
18	한국남동발전(주)	41	한국철도시설공단
19	한국남부발전(주)	42	한국토지주택공사
20	한국농어촌공사	4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1	한국도로공사	44	한국환경공단
22	한국동서발전(주)	45	한전KDN
23	한국마사회	46	한전KPS(주)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1.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외진출 사업 현황 조사

해외진출 사업 현황을 기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발전사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관 등 시장형 공기업은 타국에 주재하며 서비스를 생산하는 직접진출 방식의 비중이 높았으며,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은 주로 ODA 형태나 컨설팅 자문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은 수익 추구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준정부기관은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낮으며 기관 고유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해외 사업방식(ODA, 수익성 컨설팅 사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6개의 기관에서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수행해 온 사업 수는 총 406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06개 사업을 시기, 산업 유형, 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가. 해외 사업 개시 시점

2004년까지는 1~3건의 사업만이 간간히 추진되었지만, 2005년부터는 경제 환경 및 정책적 지원에 따라 사업 분야가 다양화되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해외 사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규모 역시 평균 규모가 크

게 증가하면서 다수의 대규모 사업도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15-1 생산사업’(21억 9,400만달러의 투자액)만이 유일한 대형 투자 사업이었으나, 2011년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전 개발 및 해상부유식 액화플랜트(FLNG) 건설 및 운영 사업’(17억 8,100만달러),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Dana Petroleum Ltd.의 적대적 인수합병’(49억 5,700만달러), ‘미국 Eagle Ford Corp. 광구생산 사업 착수’(19억 2,600만달러)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투자액 총액이나 사업 수 모두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로 그 추세가 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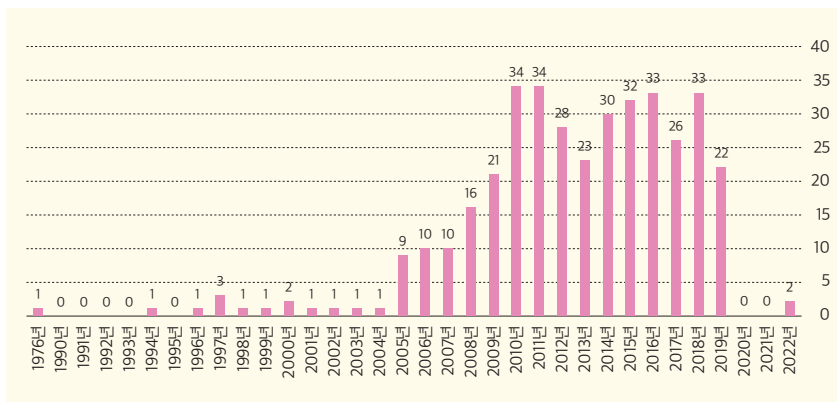
나. 산업 유형에 따른 분석

406개의 해외 사업을 에너지, SOC, 국민생활, 기타 등 산업 유형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 사업은 자원개발과 발전사업으로 세분되며, 기타 사업에는 금융, 관광, 농업, 안전 분야 등이 포함된다. SOC 분야의 해외 사업이 155개로 전체의 3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에너지(자원개발)이 73개, 에너지(발전)이 71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OC 분야는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진출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에너지 사업은 해외직접투자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사업을 산업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분야는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방식을 주로 활용한 진출형태를 보였으며, 에너지 사업은 해외직접투자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개시연도별 사업 수

(단위: 개)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자원개발 산업은 2011년에 규모 측면에서 정점을 찍었다.

<표 2> 산업 유형별 사업 수 분포

(단위: 개, %)

산업 유형	사업 수	비중
SOC	155	38.2
에너지(자원개발)	73	18.0
에너지(발전)	71	17.0
국민생활	21	5.2
기타	87	20.2
총합	406	100.0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2008년 이후 정책적으로 해외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자원개발 산업으로 2011년에 14건(한국가스공사 4건, 한국광물자원공사 4건, 한국석유공사 6건)의 신규 해외 사업이 착수되어 규모 측면에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신규 자원개발사업의 착수 건수가 급감하게 된다. 이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입장에서 해외 사업 진출에 부담이 가중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사업이 2009~2010년에 착수하여 최대 규모를 보이다가 그 뒤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전력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따라 기관은 성장동력을 해외에서 찾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분야를 넘어 해외 자원개발, 송배전 컨설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⁴⁾

SOC 분야의 해외 사업은 2005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확대 추세는 2016년에 최고점(19건)으로 나타났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73개)와 한국철도시설공단(66개)의 설계, 감리, 컨설팅 등이 주를 이루었고,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 플래닝에 참여하는 등 기술전수 형태의 사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형태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완료되며 출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으로 지역적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4) 『에너지신문』, 「대한민국 전력 산업 '해외로!해외로!'」, 2015. 9. 21.,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86> 검색일자: 2019. 5. 20.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최근 5년 사이 한국마사회의 경주실황 수출사업이나 한국환경공단 시범사업 등이 착수되었다. 기타 분야는 한국광해관리공단(47개)의 컨설팅 및 연구용역,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다국가 대상 전자정부사업 관련 협력사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기관이 기관별로 전문성을 살려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IT 분야 등의 민간 기업의 동반 진출의 토대 마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 지역별 분석

406개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진행된 사업 수가 전체 사업의 64%(26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액 합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59개의 사업을 진행한 아메리카가 116억 6,500만달러로 아시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균 투자액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사업별 투자액 규모는 오세아니아가 379억 6,500만달러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진행된 사업 수는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액 합계 기준으로는 아메리카가 더 크게 나타나 사업규모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3> 지역별 투자액 합계

(단위: 개, 백만달러)

지역	기관 수	사업 수	투자액 합계	투자액 평균
아시아	37	260	11,588	4,457
아메리카	14	59	11,665	19,771
오세아니아	7	17	6,454	37,965
아프리카	9	27	2,244	8,311
기타	21	43	NA	NA

주: 기관 수는 46개이지만, 지역별로 기관이 중복 집계되어 총 88개임. 재무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준비 중이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역별 구분이 어려운 다국적 사업을 기타로 포함함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접투자 사업

해외진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사업의 수익성 정보를 들 수 있다. 수익성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접투자 사업을 사업 진출 지역과 산업별로 분류하고, 부채나 영업이익 실현을 분석하

해외진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사업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접투자 사업을 사업 진출 지역과 산업별로 분류하고 부채나 영업이익 실현을 분석하였다.

였다. 이를 위해 2016~2018년에 진행된 16개 기관의 111개 직접투자 방식의 해외 사업이 대상이 되었다.

가. 산업 유형 및 지역 분포

해외직접투자 사업을 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으로는 에너지(자원 개발) 산업이 5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에너지(발전) 산업이 47개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SOC 분야는 2개 사업만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에 비해 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시아 국가(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정부에서 에너지 공급역량 확충 및 에너지원의 다각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규모는 사업 특성상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의 사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중 65%의 사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 진행 중인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투자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SOC	에너지 (발전)	에너지 (자원개발)	기타	합계
총투자액	97	4,537	29,019	98	33,751
사업별 평균	97	99	527	16	312
사업 수	2	47	56	6	111
기관 수	2	9	7	2	16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SOC와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에너지 분야의 사업만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에너지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53개(5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던 서남아시아로의 진출 비중도 증가하였다. 그 밖에도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순으로 지역적 분포를 나타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사업 수가 24개인데, 이는 에너지 공급 역량 확충 및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해 2025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다수의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서남아시아는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심각한 전력 및 에너지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어, 이들 정부는 해결

5) ASEAN은 에너지 공급 역량 확충 및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해 2025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9. 9. 11, p. 4).

<표 5> 지역별 진출 사업 수

(단위: 개, %)

대륙 구분 1	대륙 구분 2	사업 수	비중 (전체 사업 수 대비)	사업 수(비중)
아시아	남아시아	5	4.50	60 (54.05)
	동남아시아	24	21.62	
	동북아시아	6	5.41	
	서남아시아	18	16.22	
	중앙아시아	7	6.31	
유럽	남유럽	2	1.80	4 (3.60)
	서유럽	2	1.80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카리브해 지역	3	2.70	31 (26.13)
	라틴아메리카	11	9.91	
	앵글로아메리카	15	13.51	
아프리카	아프리카	6	5.41	6 (5.41)
오세아니아	호주	12	10.81	12 (10.81)
합계		111	100.00	-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며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⁶⁾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진출이 확대된 상태이다.

나. 산업별 재무 현황 추이 분석

직접진출 사업 111개 중에서 재무제표 수치 작성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101개 사업에 대한 재무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진행 중인 직접진출 사업의 2018년 총매출액은 14.0조원, 영업이익은 3.0조원, 이자비용은 1.1조원, 당기순이익은 0.5조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2.8조원, 영업이익은 1.0조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1.1조원 증가하였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3.6%p 증가한 21.4%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구분하면 에너지(자원개발) 산업과 에너지(발전)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가 큰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더 크게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은 에너지(발전) 산업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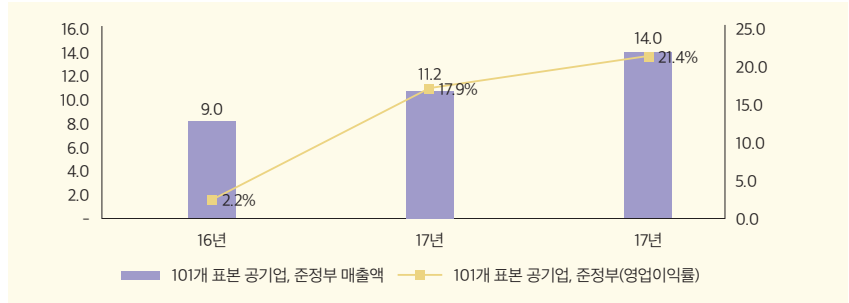
재무 현황을 산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업 규모가 큰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더 크게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은 에너지(발전) 산업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2010, p. 1.

해외 사업의 부채비율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에는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 국가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면서 운영비만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상승한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진행 중인 직접진출사업의 매출구조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조원, %)



주: 그래프의 좌측은 자산 및 부채금액, 우측은 부채비율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1)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의 재무 현황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은 사업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 2018년 기준 자산은 36.5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0.8%) 증가한 상황이다. 진출 기관은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순으로 사업 비중을 구성하고 있다. 부채는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1.5조원(6.9%) 증가한 23.2조원이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24.8%p 증가한 1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비중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최근 영업이익도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의 경우 전년 대비 3.8%p 증가한 21.1%를 나타냈다. 해외 사업의 부채비율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에는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 국가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면서 운영비만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상승한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표 6>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의 재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에너지 (자원개발)	자산	42.0	36.2	36.5
	부채	25.3	21.7	23.2
	(부채비율)	151.5	149.7	174.4
	매출액	6.4	8.1	10.9
	영업이익	- 0.3	1.4	2.3
	(영업이익률)	- 4.7	17.3	21.1
	이자비용	0.8	0.7	0.7
	당기순이익	- 2.3	- 1.0	0.2

출처: 공공기관 현황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에너지(발전) 산업의 재무 현황

에너지(발전) 산업의 사업은 2018년 기준으로 자산은 전년 대비 1.4조원 (10.2%) 증가한 15.1조원이며, 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발전) 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1.0조원 (10.8%) 증가한 10.3조원이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2%p 증가한 214.6%로 나타났다.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에 비해서는 부채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은 20%대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에너지(발전) 산업의 재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에너지 (발전)	자산	13.0	13.7	15.1
	부채	8.8	9.3	10.3
	(부채비율)	209.5	211.4	214.6
	매출액	2.6	3.0	3.1
	영업이익	0.6	0.6	0.7
	(영업이익률)	23.1	20.0	22.6
	이자비용	0.3	0.4	0.4
당기순이익	0.4	- 1.0	0.2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해외직접진출 사업의 자산과 부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 지역이며, 절대적인 자산이나 부채규모는 적지만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 지역별 재무 현황 추이 분석

해외직접진출 사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과 부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 지역(자산 22.2조원, 부채 12.1조원)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자산이나 부채규모는 적지만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425.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최근 부채비율 증감 추세를 살펴보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100.2%p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부채비율이 82.1%p, 오세아니아 지역의 부채비율이 35.1%p 증가하였다. 각국에서 소수 자본잠식 사업이 나타남에 따라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매출액 8.3조원, 영업이익 2.8조원)이었으며, 해당 지역의 영업이익률은 33.7%이다. 당기순이익 또한 아시아 지역(1.9조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아시아 지역의 구체적인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사업은 영업이익이
3년간 5천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의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아시아 지역 사업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4조원 증가하였다.**

1)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사업의 재무 현황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6개 사업의 2018년 자산은 전년 대비 0.3조원(2.3%) 증가한 13.4조원이며, 이는 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2.3조원), 앵글로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한국석유공사(5.5조원)의 자원개발 생산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는 전년 대비 1.6조원(19.8%) 증가한 9.7조원이며, 이는 주로 앵글로아메리카 지역에서 셰일가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5.5조원)와 멕시코 및 파나마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사업(2.3조원)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2018년도 해외 사업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00.2%p 증가한 262.2%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3년간 5천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2) 아시아 지역 사업의 재무 현황

아시아 지역 53개 사업의 2018년 자산은 전년 대비 2.0조원(9.9%) 증가한 22.2조원이며,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3.6조원), 한국가스공사(3.5조원), 동북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3.1조원), 서남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2.8조원), 한국전력공사(2.3조원) 등에 기인하였다. 아시아 지역 53개 사업의 2018년 부채는 전년 대비 1.2조원(11.0%) 증가한 12.1조원이며,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2.3조원), 동북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1.9조원), 서남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1.7조원) 사업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지역의 2018년 해외 사업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2.6%p 증가한 119.8%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 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조원(25.8%) 증가한 8.3조원이며,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2.3조원), 한국서부발전(1.9조원), 한국가스공사(1.5조원)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8조원(40.0%) 증가한 2.8조원이며,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0.9조원), 한국서부발전(0.8조원)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의 경우 전년 대비 3.4%p 증가한 33.7%를 나타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4조원(480.0%) 증가하였

으며,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0.7조 원), 한국서부발전(0.6조원) 사업에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아시아 사업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익률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 외의 지역 사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최근 유가 변동이나 해외 국가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

해외직접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아시아 사업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익률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 외의 지역 사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최근 유가 변동이나 해외 국가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표 8> 지역별 해외진출 산업의 재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산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14.2	13.1	13.4
	아시아	21.2	20.2	22.2
	아프리카	7.3	6.2	6.3
	오세아니아	8.3	6.7	6.6
	유럽	4.0	3.7	3.2
부채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8.7	8.1	9.7
	아시아	11.9	10.9	12.1
	아프리카	5.8	4.8	5.1
	오세아니아	5.2	4.8	4.9
	유럽	2.7	2.4	1.7
부채비율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158.2	162.0	262.2
	아시아	128.0	117.2	119.8
	아프리카	386.7	342.9	425.0
	오세아니아	167.7	252.6	288.2
	유럽	207.7	184.6	113.3
매출액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2.4	2.7	2.8
	아시아	4.9	6.6	8.3
	아프리카	0.6	0.6	0.7
	오세아니아	0.4	0.6	0.7
	유럽	0.7	0.7	1.5
영업이익률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 20.8	3.7	- 3.6
	아시아	22.4	30.3	33.7
	아프리카	- 66.7	- 50.0	- 28.6
	오세아니아	- 20.9	- 2.3	1.9
	유럽	14.3	28.6	26.7

출처: 공공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이 단순한
사업영역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타 산업부문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시되고, 지역 전문가, 개별 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등의 인적역량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이러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IV. 해외진출 사업 지원정책의 경과와 정책 수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그간에는 특히 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 관련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보다는 아시아 지역과 자원개발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에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이 단순한 사업영역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타 산업부문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되어 왔던 정부정책에 대해 점검해보고, 실무 현장의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해외진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해외진출 정책의 경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2008년에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축했던 EDCF 규모가 2005년부터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글로벌 플랜트·스마트시티 펀드를 통해 7천억원 수준으로 정부출연금도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 자원개발 세액공제제도 및 각종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

도 활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했으며, 2012년부터는 해외진출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비하고, 해외진출 사업의 금융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해외진출 사업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간, 민간과의 동반 진출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지원하고,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2019년에는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역량 제고방안과 해외 시장에서의 전략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정부 지원체계인 ‘Team Korea’를 구축하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해외 사업 활동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 CEO 및 기관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원들에게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감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해외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였다.

2. 공공기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여건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해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 정책적 결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개선을 위한 진출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제시했지만, 해외진출의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가 브랜드 향상과 기관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통해 해외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해외진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내용은 해외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연구조사, 타당성조사 등으로 인한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제기한 것이었다. 또한, 해외진출 사업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적 역량이 부족하여 타 국가의 공기업에 비해 수주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개선을 위한 진출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으로
해외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연구조사, 타당성조사
등으로 인하여 매몰비용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과
정보 및 인적자원의
역량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개선되지 못한 문제로 볼 수 있다.⁷⁾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어려움인 매몰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뿐 아니라 진행 단계에서도 리스크 관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해외 사업규모가 증가하고 참여자가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다수의 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모델을 보유하고 체계화한 현황에 대해서도 모델을 수립하여 확보한 경우는 약 30%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KOICA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기획/관리 부문에 대한 논리모형체계(Project Design Matrix)를 리스크 관리 모델로 하여 기획-집행 전 부문에 적용하거나 UN 등에서 권고하는 리스크 관리모형을 채택하여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해외진출을 진행 중인 기관에서도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두 번째 한계로는 정보 및 인적자원의 역량 문제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인력 및 정보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 양질의 정보 취득과 인적자원 확보에 한계점을 토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획득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활용성을 높인다면, 공공기관이 정보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2012년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해외 공기업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해외 공기업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정기 교류를 독려하고 있으나, 기관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의 기관은 네트워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해외진출 네트워크에 참석하는 공공기관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⁸⁾ 공기업 해외진출 협의회가 확대되어 공공기관 글로벌협의회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 계획을 밝힌 데 비하여 기관의 활용도는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상시적인 컨설팅, 정보 공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정비와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8) 공공기관연구센터 기관 설문자료

V. 결론

공공기관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분야, 지역, 진출방식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수익구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 경쟁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적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 다만, 십 여년에 걸쳐 수립된 정책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정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첫 번째, 정부 지원체계의 주축이 되는 협의회가 보다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이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갖추는 데 일조하였으나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는 물론, 민간과 공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홍보와 상시화가 필요하다. 민간과의 컨소시엄 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방식을 강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소개하고 정보와 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DB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DB와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 초기 해외 사업 승인 및 지원 의사결정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효율화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신속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을 조직화하여, 일부 산업 분야로 한정되었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민간부문과 동반 진출이 용이한 업종까지 확대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 내부뿐 아니라 민간과 협력한 인적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현지 기관 및 현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별·지역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가풀(pool)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전문가 및 해외진출을 위한 계약·조달·지역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역량을 보완하도록 유능한 재원에 대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 선진국의 해외진출에는 인적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점을 반영하여 인사정책뿐 아니라 기존 직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기관별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및 사업에 대한 정보의 취득은 자체적인 인력 및 정보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제한된 정보뿐 아니라 정부 및 타 조직으로부터 해외진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력을 활용할 필


십 여년에 걸쳐
수립된 정책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정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시장 활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민간과의 동반
진출이라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익을
개선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정책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요가 있다. 기존에 해외 공기업 네트워크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 간의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외교적으로 정부 간 또는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유치를 원하는 국가와 합동 투자 설명회 개최 등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 재정지원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해외 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와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금융지원에도 산업별, 주체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중동 플랜트 펀드(글로벌 플랜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지원 증진방안으로 투자 유형(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등)에 따른 대규모 금융지원, 투자 개발형 사업의 민간과 공공기관의 동반 진출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 사례 중 싱가포르에서 지역화 전략을 위한 벤처사업을 선두로 하거나, 중소기업의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와 같이 재정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겠다. 특히, 사업에 따라 기관 간의 기업 집단화를 통한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 추진 등을 강화하여 위험관리의 강점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역량이 공공부문보다 높으므로, PPP 사업의 형태는 지분투자자, 대출 은행, 정부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리스크 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⁹⁾ 현재 건설 분야에서 활용하는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DB화하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방식을 타 분야에도 정착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시장 활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민간과의 동반 진출이라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익을 개선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정책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9) 정의중, 「PPP Guide (4): MDB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PPP라 하는가?」, 『K-BUILD저널』, 2018년 5월호, 2018, pp. 12~20.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20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2008.
- _____,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유무상 ODA 연계강화 방안 연구』, 201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2010.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9. 9. 11.
- 정의중, 「PPP Guide (4): MDB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PPP라 하는가?」, 『K-BUILD 저널』, 2018년 5월호, 2018., pp. 12~20.
- 최봉현·박정수·서환주, 『서비스 수출 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8.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방안 연구: 아시아 PPP 시장 중심』, 201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2013.
- OECD, *Debate the Issues: Investment*, 2016.
- 『에너지신문』, 「대한민국 전력산업 ‘해외로!해외로!’」, 2015. 9. 21.,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86> 검색일자: 2019. 5. 20.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7, 검색일자: 2019. 5. 20.



선행연구와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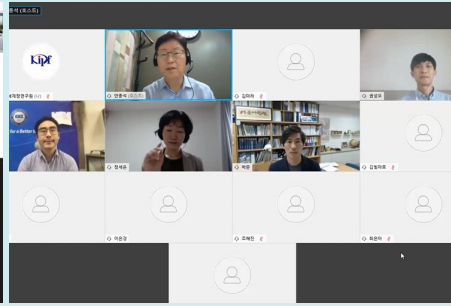
자영업자 소득감소를 완화해 대한 선행연구 결과의 비교
김, 강연자(2014)는 2010년 소득감소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된 25.2%, 2009년 22.4%, 2010년 20.5%, 2011년 20.8%, 2012년 20.8%
률(2015)?
3-2015년 16.8-19.9%

5 분석방법의 차이?

패널데이터 vs. 가계동향조사
국선(소비물가) vs. 소득물가(핵소비물가) 추정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면 본 연구의 기여점이 부각될 수
으로 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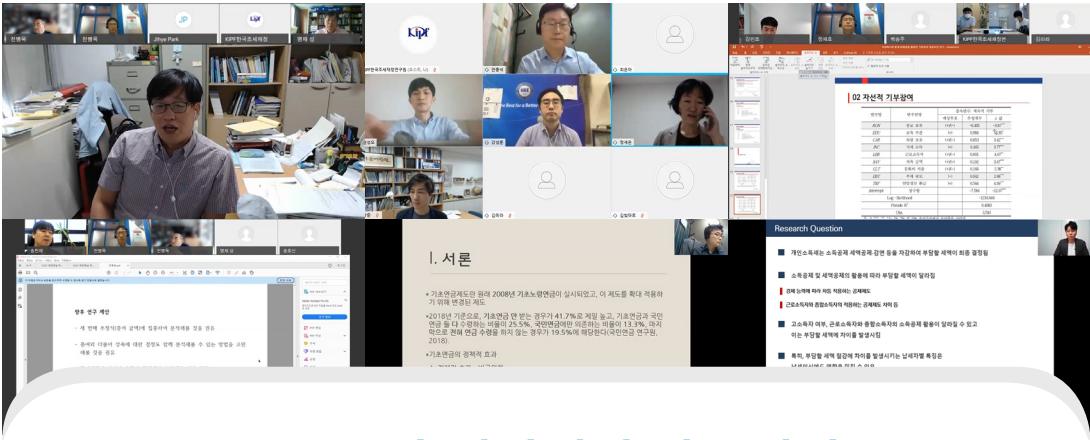
연도	소득감소율 (%)
2010	25.2
2009	22.4
2010	20.5
2011	20.8
2012	20.8
2015	16.8-19.9



정책토론투리포트 |



■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요

- 일 시 2020년 9월 11일(금) 14:00 ~ 17:15
- 장 소 온라인 회의
- 문 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DB팀
-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5:30 (90분)	1세션
	사 회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1 가계의 부동산자산 분배 상태와 보유세 개편의 효과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박종선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권성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2 보유세 정책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강성훈 한양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 본 원고는 9월 11일(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시간	내용
14:00~15:30 (90분)	2세션
	사 회 전병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II-1 연령구조와 소득분포
	발표자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토론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II-2 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발표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자 송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II-3 주관적 기대수명의 결정 요인
	발표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3세션
	사 회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5:30~15:45 (15분)	III-1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조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처치효과 분석의 이중강건성(Doubly Robust) 방법을 통하여
	발표자 손용진 부산노인건강센터 박사 토론자 정규언 고려대학교 교수
	III-2 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신영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토론자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III-3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와 조세정책의 역할: 신용카드소득공제 개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홍우형 한성대학교 교수 박주혜 한성대학교 석사과정 토론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15:30~15:45 (15분)	휴식
15:45~17:15 (90분)	4세션
	사 회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V-1 문화 관련 지출항목들의 소득탄력성 추정
발표자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시간	내용	
15:45~17:15 (90분)	IV-2	Estimation of Nested Logit and Threshold Regression Model for Household Motorcycle Selection
	발표자	김병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토론자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IV-3	차종별 유종별 자가 차량 연료 수요탄력성 조세정책상의 시사점
	발표자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5세션	
	사회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V-1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차이 분석
	발표자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V-2	차원축소형 통계 방법론을 활용한 기부참여 결정요인 연구: LASSO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발표자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6세션 (대학원생 세션)		
사회 및 토론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DB팀장	
VI-1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항목별 누진도 분해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임연빈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VI-2	Politics, Religion, and the Tax Incentive for Charitable Giving	
발표자	김영록 고베대학교 박사과정	
VI-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발표자	김영서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정성원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주제발표 요약

I-1 주제 가계의 부동산 자산 분배 상태와 보유세 개편의 효과

정세은 / 충남대학교 교수

박종선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금융거품, 거시경제 불안정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신진욱(2013)¹⁾이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불평등이 다른 한쪽의 상대적 평등에 의해 상쇄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불평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로 인해 자산이 없는, 혹은 가격이 정체된 자산을 가진 계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적 자산규모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소득과 자산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계층, 즉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경우 소득은 적는데 임대료가 높은 상황, 즉 이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가격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출규제, 세부담 강화, 거래규제,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구사해야 한다.

물론 정책의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화 그 자체라기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시장 조성일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의 이유 없는 급등과 그로 인한 과도한 불로소득의 창출은 정책적으로 차단해 주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부동산 세제는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줄임으로써 과도한 투기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12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계의 부동산 자산, 특히 주택자산의 분배 상태를 살펴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개편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부동산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주거형태 그리고 연령, 소득, 자산 수준에 따른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현행 재산세, 종부세 세제하에서의 보유세 세부담을 추정하고 이후 예정되어 있는 공시가격 비율 100% 실시, 종부세율 인상 시의 전체 세수 변화 및 가계 세부담 변화, 더 나아가 시가표준액 현실화 시의 전체 세수 변화 및 가계 세부담 변화를 모의실험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볼 것이다.

1) 신진욱,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2013, pp. 41-70.



토론 요약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분배 현황과 최근의 보유세 개편의 효과를 분석한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과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만큼, 시의성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특히 추후 예정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 인상 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저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도의 세수 및 세부담 변화를 파악하는데 그쳐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서론 혹은 선행연구 등에서 보유세 강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면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Property tax capitalization에 대해서는 Yinger et al.(1988),²⁾ Palmon and Smith(1998),³⁾ Elinder and Persson (2017)⁴⁾ 등이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제3장에서 부동산 분배 현황을 보유주택 수, 연령,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존재한다면 그 결과와 어느 정도 일관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재정패널조사는 조세 관련 정보가 풍부하지만, 가계 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자료에 비하여 표본 수가 작다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에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세대는 88가구에 불과하다. 제3장의 결과가 다른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면, 제4장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보유세 세수 및 세부담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소득계층별 영향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올해 종부세 개편의 핵심이 주택자 중과 및 누진성 강화인 점을 고려하여 보유주택 수, 자산 수준별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 요약

I-2
주제

보유세 정책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강성훈 / 한양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입법부 신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보유세 부담이 불형평하게 높을 경우 입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입법부 신뢰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정부 신뢰 감소와

2) Yinger et al, *Poverty and Proficiency*, World Scientific, 1988.

3) Palmon, Oded and Smith, Baron A, "New Evidence on Property Tax Capitaliz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5), 1998, pp. 1099-1128.

4) Elinder, Mikael and Persson, Lovisa, "House Price Responses to a National Property Tax Refor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44, 2017, pp. 18~39.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정치 성향이 보수 성향일수록, 소득 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클수록 입법부 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 증가는 입법부 및 행정부 신뢰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사회적 신뢰 영향은 행정부 신뢰에서 더 크게 관측되었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요약

박준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부동산보유세 정책이 정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2015~2018년 재정패널조사(이하 재정패널)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재정패널 각 가구별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을, 정부 신뢰도의 대리변수로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Random Effects Ordered Probit Model을 적용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정책이 세부담 형평성, 특히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① 공시가 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 과표 적용률)이 주택에 대해 특히 가격대별로 차이가 나는 점, ②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명의 전환으로 동일 가격일 경우 개인명의 소유자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③ 역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 전환 시 기존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주택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명의 소유자에 비해 세부담이 높아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④ 세부담 인상 속도가 빠를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정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점, ⑤ 은퇴 고령자일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 급격히 높아져 정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보동산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정부 신뢰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모형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있었던 부동산보유세 정책의 구체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고리를 살펴보는 작업,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적절한 대리변수를 적용한 모형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부동산보유세 정책의 구체적 변화 검토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활용한 재정패널 자료의 시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해당 기간에 부동산보유세 체계 내에 주목할 만한 실질적 변화가 적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교체시기는 공식적으로 2017년 5월 10일이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부동산보유세와 관련하여 도드라지는 실질적 부동산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보다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기대 및 우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침에 대한 실망 등이 이른바 종속변수인 정치인 신뢰도와 공무원 신뢰도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인 변화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추



가 세부담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과 공시가 격 현실화 천명 등으로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2018년도의 재정패널 조사기간은 5-8월이므로 이 대책으로 인한 영향이 해당 연도의 패널자료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둘째, 고가주택 소유자 중심의 부동산보유세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도 변화와 더불어 무자산계층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적은 계층의 부동산보유세 정책 관련 정부 신뢰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이 적은 계층은 부동산보유세가 기대만큼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산 기준으로 상위 분위와 하위 분위기를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셋째,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를 부동산보유세 정책으로 직접 치환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토지보상, 기초연금, 공직자 재산 공개, 건강보험료 부과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하는 부동산 기준가격에 관한 정책으로 엄밀한 의미로 부동산보유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은 모형과 분석과 관련된 추가적 고려사항이다.

첫째,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입법부 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로 바로 치환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엄밀한 의미로 정치인 신뢰도보다는 공무원 신뢰도가 보다 가까워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응답자는 큰 차이 없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집권 여당만을 향한 것이 아

닐 가능성이 큰데 이는 야당에 대한 신뢰도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기간 동안 국회 내 분쟁이나 국회 파행 등의 영향이 더욱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패널 조사 당시가 정치 지형의 격변기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새로운 정부 출범이 겹친 시기에 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부동산보유세와 상관없이 크게 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소속 정당의 여야 구도가 조사기간 중 바뀌었던 점도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실증연구의 첫 번째 분석에서의 부동산 자산 구간 기준 금액에 대한 고려사항이다. 재정패널에서 응답한 가격은 시장가액 수준이므로, 부동산보유세 계산 시 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②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주택가격 구간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 약 70%를 감안할 경우 중부세의 기준가액이 다주택의 경우 6억원이므로 약 8.5억이 되어 하나의 구간 기준이 될 수 있고, 과세표준 3억원부터 세율이 0.6%에서 0.9%로 상향되므로 역시 역산하면 다음 구간 기준은 약 13.3억원이 될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0.6억, 1.5억, 3억원이 기준이므로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약 70%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감안하면 각각 1.4억원, 3.6억원, 7.1억원이다. 이를 종합하면 구간은 1.5억원, 3.5억원, 7억원, 9억원, 13억원 정도로 나누는 것이 보다 세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세부담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고려할 때 재산세율의 첫 번째 변동 구간인 1.5억원 수준과 중부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9억원 수준을 구간으로 넣는 것도 합리적인 구간 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자료조사 해당 기간의 부동산보유세 정책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부동산보유세 정책의 변화와 재정패널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 응답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여 서술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한다면 본 연구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발표 요약

II-1 주제

연령구조와 소득분포

송호신 /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편제하고 있는 제1~12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과 소득의 관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변함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가구주의 소득의 종류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정효과 선형 패널 회귀분석(fixed effect linear panel regression)을 고려한다. 아울러, 소득분포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분포에 따른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병행한다. 추정결과, 회귀분석의 경우 연령과 노령더미의 교차항 계수에 대한 추정값이 근로소득의 경우에 양수(+)로 추정된 반면,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음수(-)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분위별 회귀분석에서는 해당 계수가 전반적으로 음수(-)로 추정되어 회귀분석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보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위별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노령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토론 요약

성명재 / 홍익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이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각종 연령변수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회귀분석 방법은 패널고정회귀모형 분석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s)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연령변수가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다만 현재 연구내용과 연구 제목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으므로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거나 연구주제 및 제목 수정을 통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분석모형과 분석방법을 보완하여 실증분석 결과가 담고 있는 연구결과를 정치화하면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에 소득분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득분포를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분포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소득분포 분석에 대한 연구를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더라도 분포 분석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결정식 추정” 연구에 방점을 두고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모형과 분석방법에 대해 다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있어 근로소득이나 비근로소득을 별개로 회귀분석하였다. 가구 내에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병존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각각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즉 타 가구원 소득이나 이전소득 등과 같은 소득은 노동소득(근로소득이라고 범위를 조정해도 마찬가지임)을 결정하는 여러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역으로 이전소득이나 기타 가구원의 소득들도 근로소득이나 노동소득의 크기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노동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나 이전소득(또는 기타 경상소득 또는 비경상소득 포함) 사이에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득함수를 설정함에 있어 여타 소득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필요하다면 연립방정식 형태의 소득구조식 체계(structural equations) 설정을 위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요인을 반영하여 소득 결정식을 새롭게 설정하면 내생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생성 해결을 위한 도구변수법(또는 이를 포함한 GMM 등의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다른 분석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구분하여 별개의 형태로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그 이유나 의의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의 회귀방정식에서 종사상 지위에 대한 더미(수준 더미 또는 기울기 더미 등)로 포함시켜 한꺼번에 회귀하는 것이 계량분석의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소득이 대부분 양(+)의 값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구주 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소득에 대해 소득결정식을 구상한다면 소득이 0으로 관찰되는 기타 가구원도 분석자료에 포함시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소득 값이 양수(+)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회

귀분석을 하는 경우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inverse Mill's ratio를 감안하여 회귀하거나 2단계 최소제곱법, 또는 최우추정법 등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s)에 대한 의미 해석 상 주의가 필요하다. 분위회귀에서 분위(quantiles)라는 것은 오차항(error term)의 분위(quantiles)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소득계층이나 소득분위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이 종속변수가 아닌 경우, 특히 설명변수에 소득변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분위회귀 결과를 소득 분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위회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분위회귀는 오차항의 특정 분위(quantile)에서 오차항의 적률조건이 성립하고 그때의 회귀방정식이 우연히도 선형 모형 또는 특정한 함수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분위에서 회귀방정식이 선형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위에서는 비선형이거나 다른 함수형태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위(사실상 모든 분위)에서 회귀방정식의 형태가 동일한 선형함수 형태를 상정하고 있다. 이런 가정은 오차항이 독립이라는 가정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상황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상당수 실증연구에서는 모든 조건부 분위 회귀방정식(conditional quantile equations)이 모두 동일한 모양의 함수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부분 동일한 선형모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위의 조건부 분위방정식이 동일한 함수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분위에 대한 분위회귀를 동일한 함수형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실증분석하기보다는, 각 분위별로 적률조건이 성립하는지, 만약 적률조건이 성립한다면 조건부 회귀방정식의 형태가 모든 분위에 대해 동일한 함수형태(예: 선형모형)를 지닐 것인지 등을 검증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본 연구는 초기 연구단계에서 작성된 연구논문의 초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과 연구주제(research questions)를 담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 수정·보완을 통해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완성도 높은 학술논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발표 요약

II-2 주제

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부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인 증여에 대하여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 5~12차 연도(2011~2018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적 요인 및 비조세적 요인들이 세대·가족 간의 증여 유형과 그 대상 자산 및 규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먼저 증여인·수증인 관계별 증여 사실과 관련하여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상당 부분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반면,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부분적으로 비유적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적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별 특성과 관련하여 증여재산이 부동산 또는 현금 등에 해당할수록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과 함께 비교적 최근인 2014년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할 경우 가구순소득 또는 가구순자산이 커질수록 각각 배우자 간 증여 및 기타 친인척 간 증여의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이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조세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4년 이후의 기간에 배우자 간 증여 가능성이 증가하여 일반적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및 기타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6년 이후의 기간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가능성이 증가하여 일반적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분석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개별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인·수증인 관계별 증여 사실에 당초의 예상에 부합하는 유의적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않은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는 조세 유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큰 규모의 증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2014년 이후로 분석기간을 한정할 경우 일부 유의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증여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거나 기타 자산의 시가 총액 증가분이 커질수록 현금증여의 가능성이 커지고, 가구순소득이 커질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개별 연도의 특성으로 측정된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구체적 세법내용이 증여재산의 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적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거나 증여인·수증인 관계별 증여 사실의 경우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증여 의사결정에서 조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일부 가구별 특성이 증여금액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일반적인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동일인으로부터의 10년 이내의 재차 증여의 경우 증여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과도한 증여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조세회피 유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가구순소득이 감소할수록 증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보유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고연령 계층이 주된 증여자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8년의 신고세액공제율 인하로 (7%→5%)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는 증여금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반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및 기타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6년의 증여금액 증가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증가와 함께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증여인·수증인 관계 및 증여재산 선택의 의사결정에서 조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된 반면, 증여금액 수준을 결

정하는 보다 직접적 의사결정에서는 조세적 요인이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차이점을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토론 요약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증여는 조세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미지의 영역과도 같다. 조세제도 측면에서 증여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어렵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증여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테지만 아마도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시도하지 않는 탓도 클 것이다.

이처럼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증여의사 결정에 조세제도와 그밖에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증여세제가 가구의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타난 점 또한 매우 흥미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향후 이에 대해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여러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공헌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아파트 증여가 급격하게 증가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연구의 시의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도 갖는다. 이밖에도 재정패널조사(이하 재정패널)의 증여 관련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재정패널 자료의 유용성을 높인 것 또한 재정패널 학

술대회의 취지에 알맞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갖고 있다. 첫째,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은 과연 상속세제 및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가구의 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일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를 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증여 의사결정이 조세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증여 대상자가 있는 가구들 중에서 과연 증여 확률이 변화했는지, 증여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패널 자료는 따로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어쩔 수 없이 증여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증여 대상자, 증여자산, 증여금액 등의 결정에 조세제도 및 다른 요인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조세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혹은 가구의 일반적인 증여 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저자도 인지하다시피 본 연구의 추정식은 전형적인 연립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이므로 일반적인 OLS 방식의 추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인과관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SLS 혹은 3SLS 방식의 추정을 적용해야 한다. 물론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회귀식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인과적 해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

하면 OLS 추정결과만으로 조세제도의 변화가 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셋째, <표 19>의 3열에서 보여주는 일부 추정식의 경우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점근이론(Asymptotics)이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증여를 경험한 가구에 한정하여 추정을 시도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표본수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과연 연구자가 원하는 가설 검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많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저자가 향후에 본 연구 주제를 확장하여 연구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싶다. 먼저 본 연구의 세 번째 추정식인 증여금액에 집중하여 분석해볼 것을 권유한다. 증여 대상이 누구인지, 증여 재산이 무엇인지도 궁금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우리나라 가구에서 증여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증여금액을 결정하는 데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다. 그리고 증여와 더불어 상속에 대한 결정도 함께 분석해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것을 권유한다. 재정패널은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 관점에서 분석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과연 증여를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여러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저자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한다.



주제발표 요약

II-3 주제

주관적 기대수명의 결정요인

김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개인이 주관적으로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은퇴시점 결정, 연금상품 가입, 자산 축적 등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이하 재정패널)의 2015~2018년 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기대수명이 저축 성향, 사적연금 가입, 순자산 축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했다. 특히, 국내 주요 선행연구에서 관찰되는 남녀 간 기대수명 형성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구 구성 등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하고자 했다. 재정패널 표본의 주관적 기대 여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통계청의 생명표 대비 뚜렷하게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맞벌이·홀벌이, 여성 가구주 여부 등 가구 구성의 정보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주관적 기대여명은 근로층의 사적 연금 가입 및 고령층의 순자산 축적 수준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특히 여성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관적 기대여명의 예측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해당 계층의 안정적 노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토론 요약

이경희 / 상명대학교 교수

개인은 자신의 생존가능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은퇴 시기, 노후저축, 연금적립금의 수령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대여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가계조사에 개인의 생존기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재정패널조사에서 예상수명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2018년 재정패널조사(이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기대수명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기대수명이 저축성향, 사적연금 가입, 순자산 축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남성과 여성 간 기대수명 형성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구 구성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문제가 매우 광범위하고, 재정과도 연관되므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관적 기대여명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 및 이론적 측면과 부합된다. 고령층 홀벌이 가구의 경우 주관적 기대여명을 높게 평가할수록 축적된 순자산의 수준이 높고, 30~59세 홀벌이 가구의 경우 기대여명과 사적 연금 가입 간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기대여명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역시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선

행연구(김대환 외, 2019⁵); 이경희·전병욱, 2020⁶); 이창선, 2020⁷)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과대평가를, 여성은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패널 자료의 주관적 기대여명은 남녀 간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예측오차가 남성은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데 비해 여성은 증대되는 특성을 보인다.

남성은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정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층에 비해 고령층 예측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고연령일수록 예측오차가 확대되는 데 이는 합리적 추론이 어렵다. 저자는 그 원인을 상이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성별 기대형성의 차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가구 구성 정보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여성의 기대여명 과소인식은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지만, 응답의 기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0세 시점의 기대수명을 기준점으로 두고 응답하였다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오차가 확대될 수 있다. 만약 2017년 0세 시점의 기대수명은 85.7세인데, 75세 응답자가 이를 기준점으로 응답하였다면, 주관적 기대여명(85.7-75.0=10.7년)은 객관적 기대여명(14.0년)보다 낮게 인식된다. 즉, 기대여명은 응답 시점까지 생존한 것을 조건으로 장래 더 생존할 수

있는 조건부 개념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응답하였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측오차도 커질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여성이 조부모, 부모, 친척 등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전세대 집단의 사망연령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대여명을 응답하였다면, 기대여명 개선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기대여명은 과소평가된다.

재정패널의 여성 응답자가 자신의 기대여명을 국민생명표의 기대여명보다 낮게 응답한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가 ‘예상수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응답하였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기대여명에 대한 인식이 은퇴 관련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han et al., 2014⁸); Teppa and Lafourcade, 2013⁹). 이에 기대여명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여성의 기대여명 과소인식은 불충분한 노후 준비로 연계될 수 있고, 이는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원인 규명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5) 김대환·정현우·이동현·성미연, 「사망연령에 대한 계층별 인지 오류와 시사점」 『리스크관리연구』 제30권, 제2호, 2019, pp. 1~32.

6) 이경희·전병욱, 「기대여명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사적연금 수요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31권, 제2호, 2019, pp. 91~131.

7) 이창선, 「주관적 기대수명에 따른 성별 개인연금 수요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2호, 2020, pp. 95~123.

8) Khan, Mashfiqur R., Rutledge, Matthew S. and Wu, April Yanyuan, *How Do Subjective Longevity Expectations Influence Retirement Plans?*, Boston college -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2014.

9) Teppa, Federica and Netspar, Pierre Lafourcade, "Can Longevity Risk Alleviate the Annuitization Puzzle?," De Nederlandsche Bank Working Paper, 2013.



주제발표 요약

III-1 주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조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처치효과 분석의 이중강건성(Doubly Robust) 방법을 통하여

손용진 / 부산노인건강센터 박사

본 연구는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가 수급자의 조세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정책처치변수는 공적연금 수혜 여부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태도가 다를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 노령층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소득보장정책의 한 축으로서 경제적 생활 안정뿐 아니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12차 재정패널조사(이하 재정패널)에서 2,3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세태도변수는 재정패널 의식조사표에 있는 ‘조세 및 복지제도’ 영역 중 3개 문항에서 ‘세금납부 적절성’ ‘세금혜택 적절성’ 그리고 ‘세금부담 적절성’을 포함하였다. 평균 처치효과 산출방법은 IPW와 RA추정치를 결합한 이중 강건성(Doubly Robust) 방법을 도입하여 IPWRA와 AIPW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4개 그룹의 공적연금집단은 ① 기초연금집단, ② 국민연금집단, ③ 둘 다 받는 집단, ④ 둘 다 받지 않는 집단이다. ‘처치변수 → 조세태도’의 조세정책 인과효과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는 사회인구변수와 경제활동상태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추정방

법(IPWRA과 AIPW)에서 기초연금집단이 국민연금집단보다 유의미한 조세태도의 적절성이 나타났고, 기초연금집단이 둘 다 받지 않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조세태도의 적절성을 보였다. 즉, 기초연금집단이 조세태도에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평균 처치효과 분석에서 일관성 있게 도출되었다. RA과 IPWRA 간에 평균 처치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고, IPW와 AIPW 간에도 평균 처치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서로 다른 공적연금수혜집단 간에 조세태도 갭(gap)을 줄여 긍정적인 조세태도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토론 요약

정규언 / 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수령 여부에 따라 4개의 집단(①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 ② 국민연금만 받는 집단, ③ 둘 다 받는 집단, ④ 둘 다 받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조세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복지정책과 증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연금수령과 조세태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유용한 주제라고 판단되며, 논문은 설계나 분석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대한 몇가지 생각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 등 주요 조세가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소득이 조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연구도 대체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수령 여부에 따른 조세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의 수령 여부는 소득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

정액이 70% 이하인 자에게 기초연금이 주어지므로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은 소득에 따른 집단 구분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소득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의 수령 여부가 소득의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므로 <표 4>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수령 여부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소득의 영향일 수도 있다. <표 6>의 OLS 결과에서도 “월평균경상소득”이 조세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소득(월평균경상소득)을 통제 변수에 포함하거나 이중강건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보완적으로 1, 3집단 중 소득이 높은 표본과 2, 4집단 중 소득이 낮은 표본을 추출하여 소득을 일치시킨 후에 기초연금 수령이 조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해 보기를 권고한다.

둘째, <표 3>을 보면 소득, 기부금 여부, 타가구이전 지출 여부, 민간보험료 여부 등 여러 항목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집단인 1, 3집단과 수령하지 않는 2, 4집단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및 <표 7>의 분석결과에서도 1과 2, 1과 4집단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고, 1과 3 집단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1, 3집단과 2, 4집단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해 보면 더 많은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조세가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소득이 조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3>을 보면 “월평균경상소득”의 평균은 1, 3집단이 유사하고 4, 2집단 순으로 나타나는데, “가구원별 연간소득”의 평균은 1, 3, 4, 2 순으로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에서 “월평균경상소득”만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함께 또는 대체

하여 “가구원별연간소득”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하기를 권고한다.

넷째,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은 자료형태의 이해, 설명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사전적 검토, 다중공선성 가능성의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 추가 분석을 권유한다.



주제발표 요약

III-2 주제

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신영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본 연구는 납세자별로 공제제도 활용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공제제도를 통한 조세절감과 납세의식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납세자별 특성, 고소득자 여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자 등 소득 종류별 적용되는 공제제도가 다르므로 세액절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며, 납세의식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제금액과 공제비율은 세액절감(비율)과 각각 음(-)과 양(+)의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 공제금액의 크기보다는 본인 소득금액 대비 공제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세액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세액절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별 소득공제 활용에 차이가 나며, 종합소득신고자는 자진 신고·납부하므로 공제나 기타 조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된다.



납세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소득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조세 공평성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조세 공평성이나 정부혜택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을 확률이 높았다. 추가 세부담 의향의 경우 현재 본인 소득 수준 대비 세금 부담이 적은 납세자일수록 추가 세금 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고소득자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차이, 소득공제 비율이 실제 세액절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세액절감 정도나 고소득자, 근로소득자 여부 등 납세자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토론 요약

박기백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납세자별로 다른 세금공제가 조세절감 및 납세의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소득공제와 납세의식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지만, 다음에 지적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조정을 하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먼저, ‘활용률’과 ‘절감률’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거나, 차이가 있다면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활용률의 일반적인 의미는 ‘있는 것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의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절감률이 높아도 활용률이 낮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절감률이 낮아도 활용률이 100%일 수 있다.

또한 수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금액 = (소득 - 소득공제액) * 세율 - 세액공제’ 형태일 때, 만약 소득공제만 생각한다면 절감액은 ‘소득공제액 * 세율’이며, ‘소득공제액 = 감면액 * 감면비율’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감면비율 = f(소득)’ 형태이기 때문에 절감비율 등을 공제액이나 공제비율로 회귀분석하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면액이나 감면비율은 항목별로 다르므로 소득공제액의 크기는 결국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절감액은 개인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지 개인이 의도적으로 덜 활용하거나 더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제가 공제별로 감면비율이 소득에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냥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은 납세의식과 소득공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개인소득세 절감과 소득공제 수준은 소득 등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해외 논문을 통하여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언급되고 있는 해외 논문이 납세의식과 소득공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어도 소득수준 등이 주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 분석은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설정한 가설을 판별하거나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제발표 요약

III-3 주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와 조세정책의 역할:
신용카드소득공제 개편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우형 / 한성대학교 교수

박주혜 / 한성대학교 석사과정

정부는 신용카드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여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최근에는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축소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 변화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약 6.7%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과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구가 제도 변화 이후 소득탈루율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제도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본 연구는 2008~2014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고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전체적인 소득탈루율이 약

6.7%p 증가하였으며, 세부 집단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소비수준이 낮은 계층의 소득탈루율이 더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기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추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효과 분석에 대한 두 분야의 연구를 연결하는 최초의 연구로 판단된다. 본 토론자의 지식 내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지만 이 분야의 선행연구 중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목적이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통해 추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추가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축소하더라도 과세표준 양성화에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대비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향후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점차 축소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론에 무리가 없고, 다양한 민감도 분석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도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소득탈루율을 추정할 때 항상소득에 근거하여 추정하는데, 개념적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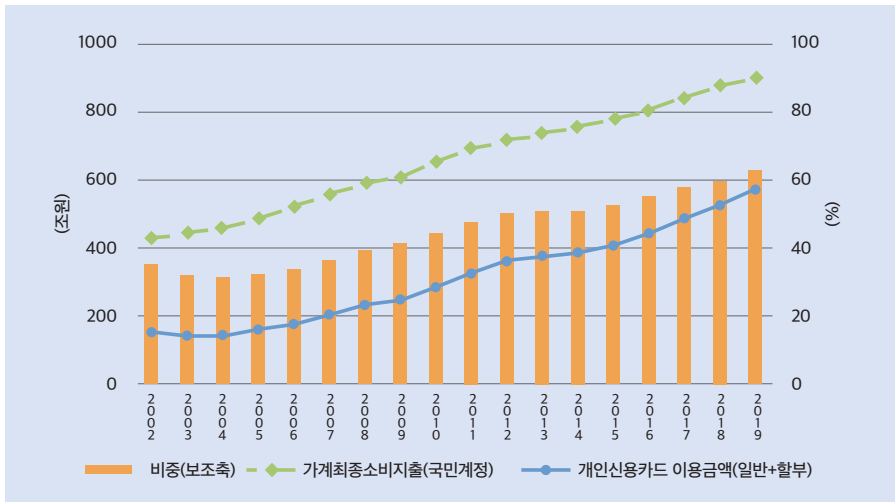
합된 당기 총소득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본 연구가 향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이유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기 위해 Hurst et al.(2014)¹⁰⁾의 방법론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Hurst et al.(2014)과 본 연구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 Hurst et al.(2014)는 설문조사 자료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과소보고 되는 평균적인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로 특정 시점별 비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반면, 본 연구는 과세신고 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과 함께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특정 시점별로 추정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연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본 연구는 Hurst et al.(2014)과 달리 특정 시점에서의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중요한데, 특정 시점의 소비가 향상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에도 영향을 받

는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다르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6.7%p 가량 증가하였다면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규모에도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시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0년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와 비교해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에서 자영업자를 통한 소비지출의 비중이 작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본 연구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와 거시자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면 본 연구결과에 대한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가계소비지출 대비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중

(단위: 조원,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최종 검색일자: 2020. 9. 10.

10) Hurst, E., Li, G., and Pugsley, B. "Are household surveys like tax forms: evidence from income underreporting of the self-employed",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96(1), 2014, pp. 19~33.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서술한다면 본 연구의 기여점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신영임·강민지(2014)¹¹⁾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2010년을 포함하여 연도별로 추정하였는데, 추정된 소득탈루율의 수준과 추세에 차이가 있다. 특히, 신영임·강민지(2014)에서는 2010년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이용한 자료와 추정방법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반면, 신영임·강민지(2014)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는데,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여 재정패널조사는 소득 파악에 우위에 있으나 소비 파악에는 열위에 있다. 본 연구는 소득과 소비가 모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소비함수를 추정하였지만 신영임·강민지(2014)는 역소비함수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였으며, 추정식을 도출하는 회귀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추정 방법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기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이전 기간으로 2008~2009년만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2008~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으로 이러한 경제 위기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결과가 아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자영업자의 소득 충격이 커서 과세소득 신고 시 소득탈루의 유인이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더 과거의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재정패널조사는 2007년 귀속소득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에 분석기간 확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본문에서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추가될 필요성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비함수를 엔겔곡선으로 표현하는데, 용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엔겔곡선은 소득과 식료품 지출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는 지출변수로 식료품 지출이 아닌 총지출을 활용하였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엔겔곡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비함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발표 요약

IV-1 주제

문화 관련 지출항목들의 소득탄력성 추정

임병인 / 충북대학교 교수

정지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제1~12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Anker (2011)¹²⁾의 소득탄력성 추정방식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비 지출과 3개 세부지출 항목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서적·음반과 박물관·공연·

11) 신영임·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12) Anker, R. "Engel's Law Around the World 150 Years Later," Working Papers wp247,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2011.



영화 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계속 감소, 신문·잡지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5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0.5% 수준에서 유지, 체육·음악·문화활동비는 증가 후 급감하고 있다.

둘째, 문화·체육비 총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낮아 필수재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서적·음반과 박물관·공연·영화의 소득탄력성 값이 1보다 커서 사치재 성격을 보이며,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서적·음반에 대한 지출이 더 탄력적인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도서관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신문·잡지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일부 연도에서는 열등재 성격을 보여주어 최근의 신문과 잡지시장의 현실을 잘 반영해준다.



토론 요약

배진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제1~12차 재정패널조사(이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비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Anker(2011)의 논문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모형으로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서적·음반과 박물관·공연·영화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고 신문·잡지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Almost Ideal Demand system(AIDS)과 같은 수요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이 문화서비스 수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득이 문화 서비스의 지출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을 기존 연구의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치재, 필수재, 정상재와 같은 개념들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의 값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으로 특정 재화가 사치재인지 필수재인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Anker(2011)의 논문에 사용된 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통해 소득이 문화서비스의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Anker(2011)의 모형은 공통된 설명변수가 매우 제한적인 여러 나라의 자료를 한꺼번에 분석하기 위해 매우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명변수가 풍부한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Anker(2011)가 사용한 단순한 모형보다는 좀 더 설명변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택하는 것이 더 정확한 추정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을 분석하면서도 가격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변수의 누락은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에 심각한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수요의 크기에 변화가 없다면) 그 정의상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소득변화로 인한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비 지출액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가격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또는 지출액을 가격으로 나누어 수요의 크기를 얻어낸 후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주제발표 요약

IV-2 주제

Estimation of Nested Logit and Threshold Regression Model for Household Motorcycle Selection

김병우 / 한국고통대학교 교수

We develop the model of binary choice model that find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s for choosing the brands of motorcycle: DaeLim, Hyosung, and Suzuki, etc. We performed the estimation of several types of qualitative dependent variable models. Estimation of binary probit results shows, as a transportation instrument of family, the choice for motorcycle shows that it is not an inferior good considering the systematic selection of sample.

Discrete threshold regression shows that the domestically produced motorcycle(e.g. DaeLim brand) become an inferior good as the consumer(household) have relatively high income.

In the case multiple choice estimated by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lead to the guess that higher family income decrease the choice of motorcycle, and then increase the preference for cars.



토론 요약

우경봉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미국의 산업화 역사에서 알 수 있듯 기차 및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 보급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차는 화물 및 여객 수송에서 혁신을 일으켰으며, 자동차는 레저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거주 및 이동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기차와 자동차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륜차 역시 모빌리티(mobility)라는 경제의 핵심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엄연한 운송수단이며 특히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물류 유통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륜차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된 모터라이제이션의 과정에서 이륜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현저하게 낮았고, 현재도 그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한 외국인 이륜차 유저가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다가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사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 사건을 외국인이 한국의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이륜차 관련 제도와 문화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듯 이륜차산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낮았으며 KCI 등재지 수준에서 이륜차산업 관련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의 관심이 낮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



서 본 연구는 이륜차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한국 이륜차 시장에서의 소비행태를 분석한 보기 드문 연구라고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0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이륜차 시장에서의 가구소비 행위를 네스티드 로짓(nested logit) 및 문턱회귀(threshold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이 특정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나 오토바이 소유 여부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이륜차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데이터 축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브랜드별 선택 분석에서 효성, 스즈키 등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문턱점이 존재하지 않고, 대립에만 존재하는 점 등의 결과도 흥미롭다.

다만 논문 제목에 제시된 논점과 관련해, 네스티드 로짓 분석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논의가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며, 도표번호가 전혀 맞지 않고 참고 문헌 일부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이 개선된다면 더욱 가독성 높은 논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완료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음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추가로 제시한다면 연구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제시가 필요하다.
- 소득수준 이외에 이륜차 선택행위 분석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이 있었는가? 특히, 분석 대상이 이륜차라는 특성상 연령대별 비교는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 네스티드 로짓 분석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선택행위 분석모형 중 IIA 가정

을 완화한 분석모형으로는 네스티드 로짓, 혼합(mixed) 로짓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한국계 브랜드와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가구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네스티드 로짓 모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네스티드 로짓 모형 분석결과가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면 연구 전반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시장에서 이륜차는 열등재인가?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이륜차의 배기량을 구분하여 접근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시장 상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한국 이륜차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던 효성 기계공업은 2003년 효성에서 분리되었으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4년에 KR모터스에 인수되었다. 재정패널 이륜차 설문문항에 공식명칭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 요약

IV-3 주제

차종별 유종별 자가 차량 연료 수요탄력성 조세정책상의 시사점

이동규 /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자가 차량의 연료 수요탄력성을 추정한다. 특히, 최적 유류세 도출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료별, 그리고 연식에 따른 차종별 가격탄력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휘발유 자가 차량의 연료 수요 가격탄력성은 $-0.640 \sim -0.665$ 로, 경유 자가 차량의 연료 수요 가격탄력성은 $-0.700 \sim -0.791$ 로 각각 추정되었다. 유종별 소득탄력성의 경우, 매우 낮게 추정되어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0.035, 0.027$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경유 자가 차량을 연식에 따라 1~3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가격탄력성을 도출한 결과, 1집단(2011년 이후 연식)과 2집단(2006~2010년식), 3집단(2005년 이전 연식)에서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0.677 \sim -0.687, -0.730 \sim -0.966, -0.688 \sim -0.780$ 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류세를 사회후생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화할 때, 현행 유류세 및 관련 세제하에서는 평균 외부비용으로 세율을 정하기 보다 좀 더 세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반면, 만약 현행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제도가 화물차 운전자들이 세율에 반응하도록 개편된다면, 그때는 유류세 세율을 오히려 평균 외부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사회후생의 손실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 요약

정재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적 유류세 도출에 활용하기 위한 연료별, 연식별 차종별 가격탄력성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기존 외부비용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최적 세율을 구하려던 접근에서 소비량과 그 수요의 탄력성을 함께 가중평균한 세율을 단일세

율로 할 때 사중손실이 최소가 된다는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질적인 외부비용을 고려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연구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환경세 논의에서, 특히 경유세 인상 논의와 관련하여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의 환경비용을 발생시키고 최신 경유차들은 휘발유 차량에 준하는 정도의 오염물질 배출시키는데, 단순히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킨다고 하여 경유세 인상의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이전 연구와 비교해 어느 정도 상세한 미시자료를 가지고 신빙성 있게 추정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연구 기간 동안 충분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변동이 존재했다는 점, 차종과 연식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세 데이터가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존재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샘플을 가구당 1대의 차량을 가진 가구로만 제한을 했는데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sample selection이고 가구 fixed effect를 통제함으로써 가구별 특성을 통제하긴 했지만 이를 통해 도출된 탄력성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선정된 샘플, 즉 1가구당 한 대의 차를 보유한 가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과를 제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 경유차종의 연식별 구분에서 배출계수 값이 크게 변동하는 해를 가지고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하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저감장치의 필수 장



착이 의무화가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 결과에서 다른 연구와 다르게 소득탄력성이 가격 탄력성보다 적게 나온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게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고정효과 모델 때문인지, 그래서 내생성이 통제되어 더 로버스트한 결과가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분석에 활용된 가구별 특성 때문인지, 또 해외 연구에는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연식별로 다른 탄력성의 결과를 가구별 특성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이를 백업할 수 있는 기초통계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의 2008~2018년 가구자료 중 교육비 지출액 정보를 활용하여 19세 미만 가구원에 전체에 대한 사교육비 패널을 재구성하였으며, 성장곡선모형(growth curve model)을 통해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궤적과 가구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궤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둘째, 맞벌이 여부로 구분한 부모(가구)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의 지출액의 변화는 학교급(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성장 곡선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통해 추정(estimated)한 연령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액에 차이가 없었으나, 영유아 단계나 중학교 이후 단계에서는 외벌이 가구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40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배우자(모)의 근로시간 정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성장곡선모형을 활용해 추정(estimated)한 결과 초등학교 시기에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우자(모)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모)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에서 가구 경제활동 유형이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발표 요약

V-1
주제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 분석

백승주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혜자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혜진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08~2018년 기간 동안의 학령기 자녀(19세 미만)의 성장(연령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 수준을 분석하고, 가구의 경제활동 유형(맞벌이 가구 및 근로 시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비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구의 경제활동 유형은 소비지출의 중요 요인으로 간주될 뿐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체



토론 요약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사교육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영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를 맞벌이가구 여부와 모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성장곡선모형(growth curve model)을 활용하여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궤적을 추정하였다. 저자들은 분석을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화함을 밝혔고, 영유아기와 중·고등학령기에 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자들은 모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초등학령기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수준이고 중·고등학령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저자들은 초등학령기의 사교육이 보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을 분석결과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하였고, 중·고등학령기의 사교육은 학업(입시) 중심의 사교육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분석결과가 반증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 여부뿐 아니라 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하고, 연령에 따른 변화 또한 고려하여 차별성 있는 분석을 하였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독자들의 이해 향상, 구체적인 시사점 도출, 분석의 엄밀함 등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분석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장곡선모형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다층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성장곡선모형에 활용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층선형모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곡선모형에 활용하였는지 등 다양한 배경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수식 등을 활용하여 모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중요한 모형 내 계수들의 의미들도 설명해 주면 분석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맞벌이가구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연령별 변화를 비교할 때, 추정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한다면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핵심은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 간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모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두 그룹 간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인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별로 검정결과를 표로 제시하거나 그림에서 95% 신뢰구간도 함께 보여준다면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가 의미있는 차이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분석결과의 신뢰도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적인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Ⅲ장 제2절에서는 전체 표본 가구의 가구 및 부모 특성의 기초통계만 보여주고 있는데,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별, 모의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가구와 40시간 미만인 가구별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어떠한 특성이 사교육비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표본(subsample)을 구성하여 연별별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별로 부표본을 구성하여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의 사교육비 차이를 비교하면, 영유아기와 중·고등학교기의 사교육비 차이의 양상이 저소득 혹은 고소득가구에 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사항들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기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통제변수로 자녀의 출생 순서, 조부모 거주 여부, 고정효과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직관과는 다르게 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액 수준이 높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외벌이가구 더미변수의 계수에 대한 해석은 자녀의 연령이 0세일 때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를 의미한다.
- 모의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더미변수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다.
- 외벌이가구와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더미변수와 연령의 교차항을 2차까지만 포함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추이를 추정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어떻게 추정하여 그림을 나타내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즉, 연령별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인지 아니면 모형을 토대로 예측된 추정(prediction)인지).
- 모의 종사상 지위, 다른 근로시간 구간 등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면 좋겠다.
- <표 6>에 연령(1차항)에 대한 추정결과가 누락되었다.



주제발표 요약

V-2 주제

차원축소형 통계방법론을 활용한 기부참여 결정요인 연구: LASSO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강민조 /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패널조사(이하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기부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재정패널 데이터는 가구 및 가구원 수준에서 광범위한 설문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변수의 선택과 조합을 통하여 개인의 기부 동기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가 많아지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져 예측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연구모형의 간결함을 위하여 설명변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주관에 따른 체계적인 선택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차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모형의 과다설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차원축소형 통계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별점화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회귀계수를 완전 축소하는 LASSO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변수 선택의 중립성을 유지한 간소한 기부참여 의사결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구 및 가구원 수준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32개의 잠재적 설명변수에 LASSO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기부의 유형에 따라 기부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종교적 기부참여는 종교, 거주지역, 외식비 지출규모, 부채 규모, 복지 확대 시의 세부담 의향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자선적 기부참여의 경우에는 종교와 음(-)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에 거주지역, 교육수준, 차량 보유 여부, 소득수준, 근로소득, 저축규모, 문화비 지출규모, 부채규모, 연말정산 환급 여부가 유의적인 양(+)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기부에는 적극적이거나 자선적 기부에는 소극적이라는 점,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가구의 종교적 기부참여 및 자선적 기부참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별히 주목을 이끄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토론 요약

조희평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가구의 기부참여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을 차원축소형 통계방법론(LASSO)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고 있다. 먼저 방


법론적 측면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머신 러닝 기법 중 하나인 LASSO를 실제적으로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LASSO 기법을 통한 설명변수 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른 편의를 배제하면서 모형의 예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부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가 대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다만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다. LASSO 기법은 모형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이 중 한 변수가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자는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종교적 기부참여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종교적 기부에 대한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종교적 기부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로 선택된 변수들(외식비 지출, 부채규모 등)이 가계소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외식비 지출이 높고 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회귀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LASSO를 통해 선택된 변수(외식비 지출) 혹은 추정된 변수의 계수(부채규모)가 이론적인 예상과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교 보유 여부가 종교적 기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자선적 기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종교의 보유가 자선적 기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본문에 서술할 경우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본 연구의 독창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종교적 기부에 현금과 보시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자선적 기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부금이 종교적 기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부참여 여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총기부금액이나 기부율(총소득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결정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개인의 기부행위 결정과정에서 기부여부뿐만 아니라 기부금액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부 금액이나 기부율을 결정하는 주요 설명변수들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LASSO를 통해 선택한 후, 최소제곱법(OLS)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OLS Post-Lasso). 이를 통해 개인의 기부 행위 결정 요인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기준 해외 사례]

-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표 1> 참조)
 - 대주주 범위의 확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양도소득과세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됨
 - 대주주 금액 기준의 지속적인 확대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인하하는 것은 이미 2018년에 결정·예고된 사항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음
 - 2023년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결정·예고된 개정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세원 확보 문제, 정책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이 판단할 문제로 생각됨

- 단,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을 합산하는 것은 대주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2023년 이전까지 적용될 한국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제도에서 과세 여부는 지분율 및 지분의 시가 총액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지적이 있음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일부 국가들에서 과세상의 차별을 두기 위하여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표 2> 참조)
 - 예를 들어, 일본은 지분율 3%를 기준으로 하여 3% 이상의 지분에 대하여는 종합과세, 그 이하에 대하여는 20.3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 독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그 이하에 대하여는 26.375%의 단일세율로 과세
- 다른 한편 일부 해외 국가들은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표 1>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변화

구분	2000년~	2005년 8월~	2013년 7월~	2016년 4월~	2018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¹⁾
유가증권	지분율 3% 또는 시총 100억원 이상	지분율 3%/ 시총 100억 이상	지분율 2%/ 시총 50억원 이상	지분율 1%/ 시총 25억원 이상	지분율 1%/ 시총 15억원 이상	지분율 1%/ 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1%/ 시총 3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5%/ 시총 50억원 이상	지분율 4%/ 시총 40억원 이상	지분율 4%/ 시총 20억원 이상	지분율 2%/ 시총 15억원	지분율 2%/ 시총 10억원	지분율 2%/ 시총 3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 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 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 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 시총 3억원 이상

주: 1) 2021년 4월 대주주 요건의 변화는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개정을 통하여 예정된 사항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 소득세』, 2017, p. 124

- 영국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10% 및 20%의 세율을, 그리고 호주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0%, 19%, 32.5%, 37%, 45%의 세율을 적용
 - 앞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하면서 종합과세 여부나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지분율을 고려
 - 혹은 지분율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뒤에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 한국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적용됨
 - 지분율과 지분의 가치총액을 공히 적용하여 지분율 기준 혹은 지분의 가치 총액기준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분율을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의 작은 지분을 가진 지분소유자와 규모가 작은 기업의 큰 지분을 가진 지분소유자 사이에 커다란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지분의 가치 총액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보완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외국들의 제도와 현 시점의 우리나라의 제도는 기본 전제가 상이함
- <문의: 송경호 성과확산팀장>

<표2> 양도소득세제 과세 대상

구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개괄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자산	상장주식, 채권, 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양도가능자산 (채권의 경우 적격 회사채, 영국정부채 등 비과세)	주식, 채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주식과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양도소득 ¹⁾	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
펀드	• 분배금 : 소득원천별 • 과세, 매매이익 : 자본이득 과세	• 분배금 : 이자 · 배당소득 과세 • 매매 · 환매이익 : 양도소득 과세	• 분배금 : 이자 · 배당소득 과세 • 매매 · 환매이익 : 자본이득 과세	직접투자자와 동일하게 과세	• 공모펀드 : 자본투자 소득으로 과세 • 특수투자펀드 : 소득원천별 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기본 공제	없음	없음	£12,000 (매년 인상됨)	없음	연 €801 이하의 금융소득	종합소득 18,200 AUD 이하
세율	단기자본소득 일반소득세율 적용 (10%, 12%, 22%, 24%, 32%, 35%, 37%), 장기자본소득 세율(0%, 15%, 20%)	20.315% (단일세율), 대주주(지분율 3% 이상)는 종합소득과세 적용	기본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 부과 (10%, 20%)	양도소득세 (12.8%), 사회보장세 (17.2%) (총 30%의 단일세율)	26.375% (단일세율), 지분율 1%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적용 (0%, 19%, 32.5%, 37%, 45%)
기타	적격기업주식은 일정 부분 면세 후 28%의 세율 적용			사업용 자산의 단기 소득은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 장기는 30% 세율 적용	사업용 자산은 표준소득세율 적용	동일 펀드 10년 이상 보유 시 취득비용을 10년째 되는 날 시장가로 재산정

주: 1) 독일은 이자·배당 및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을 '자본투자소득' 등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 과세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



[미국 - CFC 관련 특정 배당금 공제 제한 규정 발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8월 27일 특정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공제와 관련하여 최종 규정인 T.D.9909를 발표함¹⁾
- 내국세법 Section 245A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온 특정 배당금의 공제를 제한함
 - 2017년 12월 Tax Cuts and Jobs Act이 제정과 함께 내국세법에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100% 공제를 허용하는 지분소득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Section 245A 조항이 신설된 바 있음
 - 본 규정을 통해 배당금 중 특별처분액의 50%와 특별감자액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게 됨²⁾

- CFC 계열사 간에 지급한 배당금을 외국 개인지주 회사 소득(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이하 FPHCI)에서 제외하는 내국세법 Section 954(c)(6) 조항을 폐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내국세법 Section 954(c)(6)은, CFC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이자, 임대료 및 로열티는 FPHCI로 간주하지 않고, 수령한 CFC의 미국 내 사업 관련 소득이나 지급한 CFC의 subpart F 소득³⁾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으로 할당하는 것을 허용함
 - 해당 조항은 2019년 6월 발표한 임시 규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만료됨⁴⁾
- 본 최종 규정은 과세연도가 2019년 6월 14일 이후 종료되는 건에 대해 적용되며, 임시 규정과 최종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최종 규정만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1) News IBFD, "United States - Final Regulations Issued on Participation Exemption for Dividends Received from Foreign Corporations and Look-Through Exception for FPHCI". August 2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8_us_1, 검색일자: 2020. 9. 14.

2) KPMG 홈페이지, "Temporary regulations under section 245A; denial of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for certain dividends from CFCs",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06/tnf-temporary-regulations-section-245A-drd-cfc.html>, 검색일자: 2020. 9. 29.

3)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이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2년 내국세법에 규정하였으며, Subpart F 소득에는 ① 보험 소득(insurance income), ② 외국기지회사(foreign base company: FBC) 소득, ③ 국제적 보이콧(International boycott) 소득, ④ CFC를 대신하여 납부한 불법적 뇌물(bribes)과 사례금(kickbacks) 등, ⑤ 미국 내국세입법 §901(j)가 외국세액공제를 부인하는 해당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다(최정화·양인준,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CFC) 세제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35집, 제4호, 2019. 12., p. 71; p. 82).

4) KPMG, "Temporary regulations under section 245A; denial of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for certain dividends from CFCs",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06/tnf-temporary-regulations-section-245A-drd-cfc.html>, 검색일자: 2020. 9. 29.

[미국 - BEAT 관련 최종 규정 발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9월 1일 세원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이하 BEAT)를 보완하는 최종 규정 T.D.9910을 발표함⁵⁾
 - BEAT는 국외로의 세원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으며, 미국에서 창출한 연매출이 5억달러⁶⁾를 초과하고 세원잠식률⁷⁾이 3% 이상인 기업에 적용됨
 - 공제 처리된 국외 관계사 지급금액을 다시 합산한 조정과세소득에 최소 세율 10%⁸⁾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며, 이 금액이 납세자의 정규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세액이 발생함⁹⁾
 - 이때 BEAT는 이론적으로 세원 이전으로 발생하는 1달러의 소득세 혜택이 100만달러¹⁰⁾의 BEAT 납세 의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절벽효과(cliff effect)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BEAT의 절벽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외 관련사에 지급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제를 전액 포기하거나 공제액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이미 확정된 선택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공제 여부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새롭게 선택할 수 있음

-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본 최종 규정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음
 - 단, 적용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후의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전체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포르투갈 - 부가가치세 신속시정조치 도입]

- 포르투갈 의회는 2020년 8월 24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49/2020을 승인함¹¹⁾
 - 본 법률을 통해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업계 및 회원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한 지침 2018/1910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신속시정조치(quick fixes)를 도입함

5) "IRS Releases Final BEAT Waiver Regs", Tax Notes International, September 7, 2020, p. 1394
 6)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23억 5천만원임
 7) 해당 납세자가 소득세 산출 시 적용받은 총공제액 대비 국외 관계사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아 얻은 세금 혜택 금액
 8) 2026년부터는 12.5%의 세율이 적용됨
 9) Shearman & Sterling, Final Beat Deduction Waiver Regulations Provide Some Relief, <https://www.shearman.com/perspectives/2020/09/final-beat-deduction-waiver-regulations-provide-some-relief>
 10)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6,550만원임
 11) News IBFD, "Portugal - Portugal Implements VAT Quick Fixes Provisions", 26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6_pt_2 (accessed 14 Sep. 2020)



■ 본 법률에 반영된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신속시정조치(quick fixes)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¹²⁾

- EU 내 타 국가에 판매 물품을 보관하고 해당 국가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콜오프 재고(call-off stock)에 대해서는 물품이 도착한 때가 아닌 판매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중간거래자가 존재하나 판매 물품은 공급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연쇄거래(chain transaction)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단순화함
- EU 역내 물품배송 여부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단일 규정을 마련함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EU 부가가치세 정보교환 시스템(VIES)에 등록된 거래 대상의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함

■ 법률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그리스 - 코로나19 관련 추가 조치 발표]

■ 그리스 세무당국은 2020년 8월,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인하 및 증여세 감면 조치를 발표함

■ 2020년 4월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인하 조치의 영향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¹³⁾

● 코로나19 조치로 인한 법률 4690/2020의 조항에 따라 임대료를 40% 감면하여 받은 개인 및 법인 임대인은, 할인한 임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혜택은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특별연대기여금, ④ 특별소비세, ⑤ 부동산세(ENFIA), ⑥ 부가가치세, ⑦ 조세절차법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태료의 순서로 적용됨¹⁴⁾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임대인은 혜택 적용을 위해 전자 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그리스 국민의 코로나19 관련 기부 및 부모의 자녀 거주지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규정하는 E.2133호 시행령을 발표함^{15), 16)}

12) Council Directive (EU) 2018/1910 (4 December 2018) (5),(6),(7),(8)

13) News IBFD, "Greece - COVID-19 Pandemic: Greece Reduces the Tax Burden of Lessors that Receive Reduced Rents due to COVID-19 Measures", 07 Septem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07_gr_3, 검색일자: 2020. 9. 14.

14) 그리스 정부 관보 B3505/2020 (Προβολή ΦΕΚ Β 3505/2020), <http://www.et.gr/ids-nph/search/pdfViewerForm.html?args=5C7QrtC22wHUDWr4xouZu> ndtvSoCrlL8kjrMFdNWp0kIYHTRwL0-OJlnJ48_97uHrMts-zFzeyCIBSQOpYnTy36MacmUFCx2ppFvBej56Mmc8ZfRjQZnsIAdk8Lv_e6czmhEembNmZCMxLMtrB4iMiKGONi0ROA40RYEF1pNZUPiZH5TmwBLS8amsGW, 검색일자: 2020. 9. 29.

15) Bloomberg Law: Tax, "Greece Tax Agency Issues Circular Clarifying Taxation of Donations Due to Coronavirus", 17 August, 202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1B22FFG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search=BNA%252000000173ee37d977a9fffe7710500000#cite, 검색일자: 2020. 9. 16.

16) News IBFD, "Greece - Tax Authorities Clarify Provisions Regarding Gift Taxes and Taxes on Monetary Donations". 18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18_gr_2 (accessed 23 Sep. 2020)

- 해외에 10년 연속 거주하는 그리스 국민이 적격한 동산 기부를 하고 지난 12년간 부동산 취득이력이 없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됨
- 자녀의 첫 거주지 마련을 위한 부모의 금전적 지원액에 대해 과거 부과되던 부모혜택세(parental benefit tax)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며, 15만유로까지 공제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프랑스 -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9월 3일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France Relance)을 발표하여 조세정책을 수정함¹⁷⁾
- 약 3,200개 기업이 보유하는 약 8만 6천개의 산업시설에 대하여 사업자산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의 과세표준을 50% 감면하고,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의 세율을 1.5%에서 0.75%로 인하함
- 지역경제분담세(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CET)액의 한도를 기업이 생산한 부

가가치의 3%에서 2%로 인하하여 기업부가가치분담세 및 사업자산세가 기업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고자 함

- 지역경제분담세액(사업자산세액과 기업부가가치분담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과세관청에 경감을 신청할 수 있음¹⁸⁾
- 조세경감으로 인한 지방정부 및 특정 징수단체의 손실은 부가가치세의 일부 및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이러한 정책은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시행될 것임

- 프랑스 내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역경제분담세를 부담하고, 이는 사업자산세와 기업부가가치분담세로 구성됨¹⁹⁾
- 사업자산세는 사업체가 보유·이용하는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영업활동에 사용한 부동산의 임대가치임²⁰⁾
- 기업부가가치분담세는 사업자산세를 부담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매출액(상품판매 및 용역제공)과 추가소득(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에서 생산비용 등 기타비용을 공제한 것임²¹⁾

17)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fiscalite-entreprises>, 검색일자: 2020. 9. 16.; KPMG, "France: Tax measures in stimulus plan; reduction to 'local production' taxes proposed", September 9, 20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9/tnf-france-tax-measures-stimulus-plan-reduction-local-production-taxes-proposed.html>, 검색일자: 2020. 9. 16.

18)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plafonnement-contribution-economique-territoriale-cet-cvae-degrevement>, 검색일자: 2020. 10. 5.

19)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N13443>, 검색일자: 2020. 9. 28.

20)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3547>, 검색일자: 2020. 9. 28.

21)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3546>, 검색일자: 2020. 9. 28.



-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5만 2,500유로²²⁾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영업활동을 하고 매출이 50만유로²³⁾ 이상인 경우에 부과됨²⁴⁾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 과세관청은 추가적으로 8개의 센터를 설립하고, 1천명의 직원을 고용함
- 독립적인 IT 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과세관청의 노후된 시스템을 대체하고 현대화를 감독하도록 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과세관청의 건설적인 장기 계획을 위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덴마크 - 2021년도 예산안 발표]

■ 덴마크 재무부는 2020년 8월 3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경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함²⁵⁾

- 금융활동과 관련한 급여세(payroll tax)를 15.2%에서 15.3%로 인상하고, 1천만크로네²⁶⁾ 이상의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도입함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함
- 초콜릿, 커피, 수도, 형광등,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세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에너지세 인상을 2023년까지 연기함
-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규모를 확대하고 IT 감독기구 및 특별위원회를 설립함

[스웨덴 - 2021년도 예산안 발표]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9월 2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함²⁷⁾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세 혜택을 그 내용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및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도 포함함
- 기업과 관련하여 이자공제 제한 규정 수정, 금융영역의 조세 인상, 기계와 장비 투자비용에 대한 일

22) 2020. 10.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829만원임

23) 2020. 10.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8,292만원임

24) DGFiP, <https://www.impots.gouv.fr/portail/professionnel/cet-cfe-et-cvae>, 검색일자: 2020. 9. 28.

25) 덴마크 재무부, <https://fm.dk/media/18181/ff121a.pdf>, 검색일자: 2020. 9. 14.;

News IBFD, "Government Presents its Budget for 2021", September 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01_dk.1.html, 검색일자: 2020. 9. 23.

26)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억 2천만원임

27) 스웨덴 정부, "Budgetpropositionen för 2021",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0/09/prop.-2020211/>, 검색일자: 2020. 9. 22.;

News IBFD, "Government Provides Targeted Stimulus in Budget for 2021", September 2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22_se_1.html, (accessed September 23, 2020)

시적 소득공제 허용, 사회보장분담금 인하를 그 내용으로 함²⁸⁾

- 이자공제 제한 규정을 그룹기여제도(group contribution regime)와 관련하여 수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9년 이자공제 제한 규정과 그룹기여제도를 동시에 변경하여 기업이 특정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를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할 것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기계와 장비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투자비용의 3.9%를 소득공제하고, 이는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기업 및 개인에게 모두 적용됨
- R&D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9세에서 23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인하함
 - 근로자가 월 근로시간의 75% 이상을 R&D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인하하는데, 이를 2021년 7월 1일부터 월 근로시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
 - 19세에서 23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31.42%에서 19.76%로

인하하고, 이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근로자 1인당 월 2만 5천크로나²⁹⁾를 한도로 함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납세자의 기본 소득공제액 인상, 소득공제되는 특정 가사서비스(rutavdrag)의 범위 확대, 환경친화적 기술 설치 시 경감 혜택 및 적격 거주기간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함
 -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하여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사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특정 소득 구간의 경우에는 기본 소득공제액을 인상함
 -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특정 가사서비스에 세탁 등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가구 및 인테리어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 환경친화적인 기술(자가 태양에너지 설치 사용, 전기자동차 사용 등)을 설치하는 개인납세자에게 태양에너지설비 비용의 15%, 자가생산전기 및 전기자동차 비용의 50%를 소득공제하고, 이는 5만크로나³⁰⁾를 한도로 함
 - 거주외국인조세제도의 적격 거주기간의 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2020년 5월 31일부터 스웨덴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기간 한도가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음

28) News IBFD, "Government Proposes Employment Incentives, Risk Tax on Banks, Changes to Interest Deduction Rules", September 1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18_se.1.html, (accessed September 23, 2020)

29)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5만원임

30)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48만원임



- 기타 조세와 관련하여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 자동차세 수정,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그 내용으로 함
 - 2021년 4월 1일부터 휴대전화, 집적회로, 게임 콘솔, 태블릿 PC, 노트북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상품가격이 10만크로나³¹⁾를 초과하는 경우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무료 사용(기업 소유 자동차 사용 등)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수정할 예정임
 -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법안은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핀란드 -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마스크 비용 소득공제 허용]

- 핀란드 과세관청은 2020년 8월 19일 근로자에 대하여 마스크 비용 소득공제를 허용하였고, 이는 핀란드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 것에 따른 것임³²⁾

- 모든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1년에 750유로³³⁾의 근로 관련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직접 구매한 마스크 비용도 근로 관련 비용에 포함됨
 - 마스크 비용을 포함한 근로 관련 비용이 7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별도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마스크 비용은 근로자가 마스크를 근로시간 및 통근시에 착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면세됨
- 근로자가 직접 구매한 마스크를 대중교통 통근시 사용한 경우에는 2020년 8월 13일부터 근로자는 통근비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매일 2유로³⁴⁾씩 공제 가능함
 - 통근비용은 1년에 750유로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과세관청은, 2020년 8월 11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마스크와 보호 장비 비용은 근로자가 마스크를 통근 시(근로시간 외에 해당)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음³⁵⁾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31)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03만원임

32)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tietoa-verohallinnosta/uutishuone/uutiset/uutiset/2020/ty%C3%B6ntekij%C3%A4-voiv%C3%A4hent%C3%A4%C3%A4-kasvomaskista-aiheutuneita-kuluja-verotuksessa/](https://www.vero.fi/tietoa-verohallinnosta/ uutishuone/uutiset/uutiset/2020/ty%C3%B6ntekij%C3%A4-voiv%C3%A4hent%C3%A4%C3%A4-kasvomaskista-aiheutuneita-kuluja-verotuksessa/), 검색일자: 2020. 9. 14. ; News IBFD, "COVID-19 Pandemic: Facemask Expenses Tax Deductible for Employees", August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21.fi_1.html, (accessed September 11, 2020)

33) 2020. 9. 2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2만원임

34) 2020. 9. 2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천원임

35) News IBFD, "COVID-19 Pandemic: Tax Authorities Opine On Facemasks Provided by Employers", August 1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8-13.fi_2#tns_2020-08-13.fi_2, (accessed September 11, 2020)

[영국 - 시설퇴소아동에 제공하는 장학금의 소득세 면제 도입]

- 영국 정부는 2020년 9월 4일 시설퇴소아동(Care-leaver)³⁶⁾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도입함³⁷⁾
 - 관련 법안은 소득세법 254A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면제 대상 장학금을 수령하는 시설퇴소아동은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장학금에 대한 소득 신고의무가 없음
- 소득세법 254A조 따른 면제 대상 장학금은 다음과 같음³⁸⁾
 - 법령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고 장학금을 수여한 자가 25세 미만일 것
 - 아동법(Children Act 1989)에 따라 시설퇴소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일 것
 - 장학금의 지급이 2020년 9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질 것

- 장학금 지급금액이 1회당 1천파운드³⁹⁾를 넘지 않을 것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을 시작한 시설퇴소아동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을 것
 - 교육기술지원금단체(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에서 지급된 장학금일 것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네덜란드 - 2021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0년 9월 15일 2021년도 세법개정안(Tax Plan 2021)을 발표하고 의결을 위해 하원에 제출함⁴⁰⁾
 - 본 세법 개정안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기타 간접세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2021년도 법인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⁴¹⁾
 - 최하위 법인세율을 16.5%에서 15%로 인하하며, 최하위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20만 유로⁴²⁾에서 24만 5천유로⁴³⁾로 인상함

36) 시설퇴소아동이란 시설을 퇴소한 만 18세 이상 아동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13주 이상 또는 만 16세까지의 기간 동안 돌봄을 받은 아동을 의미하며, 시설퇴소아동법(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에 의해 정부는 퇴소한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과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

37)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expenses-and-benefits-for-apprenticeship-bursaries-for-care-leavers>, 검색일자: 2020. 9. 23.

38) 영국 법령정보센터, <https://www.legislation.gov.uk/uk/sj/2020/922/regulation/4/made>, 검색일자: 2020. 9. 23.

39)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9만원임

40) News IBFD, "Netherlands - Minister of Finance Presents Tax Plan 2021", 15 Sep.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15_n1_1 (accessed 16 Sep. 2020).

41) 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1 - Corporate Income Tax measures, 16 Sep.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16_n1_2, (accessed 23 Sep. 2020).

42)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203만원임

43)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3,323만원임



- 최상위 법인세율은 2021년도에 21.1%로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5%로 유지함
- 특허박스제도의 세율을 7%에서 9%로 인상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도의 손실을 사전에 상계하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도입함
- 이자비용공제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외화환산차익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해 해당 이익은 불공제되는 비용까지를 한도로 상계함
- 자회사의 청산 또는 사업부문의 중단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최대 500만유로⁴⁴⁾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함
- 결손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결손금이 100만유로⁴⁵⁾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50%까지로 제한됨(단, 결손금 이월공제 적용기간은 6년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됨)

■ 2021년도 개인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⁴⁶⁾

- 최하위 소득세율을 37.1%로 기존 세율 대비 0.25%p 인하하며, 최상위 소득세율은 49.5%로 유지함
- 일반 세액공제 금액의 최대치를 2,711유로⁴⁷⁾에서 2,837유로⁴⁸⁾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세액공제

는 3,819유로에서 4,205유로로, 노령 세액공제는 1,622유로에서 1,703유로로 확대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정비용 보상에 대한 과세면제 등 소득세 지원정책을 개정 법안에 도입함
- 종업원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급여세 과세가 면제되며, 2021년부터 퇴사한 종업원의 교육비 지출액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됨
- 종업원에게 업무 관련 비용을 일정 비율로 보상하며 이는 과세되지 않음
 - 보상 비율은 첫 40만유로⁴⁹⁾에 대해서 1.7%(단,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로 확대됨),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1.2%가 적용되며, 2021년도부터 1.18%로 감소할 예정임

■ 2021년도 기타 간접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부터 탄소세가 도입됨
 -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30유로⁵⁰⁾가 적용되며, 해당 세율은 매년 10.56유로⁵¹⁾씩 증가할 예정임
- 단기채무상품에 대해서 0.044%, 장기채무상품에 대해서 0.022%가 적용되던 기존 은행세율(Bank tax rate)을 각각 0.066%, 0.033%로 인상함

44)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억 415만원임

45)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원임

46) 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1 - Personal Income & Wage Tax Measures, 16 Sep.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ment/tns_2020-09-16_nl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16_nl_1), 검색일자: 2020. 9. 23.

47)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9만원임

48)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6만원임

49)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4,433만원임

50)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만원임

51)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만원임

- 2021년부터 18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세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함
- 부동산 거래세는 2021년부터 기존 6%에서 8%로 인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싱가포르 - 중소기업의 세금신고 절차 디지털화 지원]

- 싱가포르 회계·기업 관리청(ACRA)과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세금신고를 자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함⁵²⁾
- 싱가포르 기업은 매년 ACRA에 연간보고서 제출 및 IRAS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두 기관에 직접 신고 및 제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ACRA와 IRAS는 회계 소프트웨어에 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자동적으로 각 기관의 신고 서류가 생성되고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ACRA와 IRAS에 신고 서류를 자동 제

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Netiquette O2O Business Suite, SMECEN 두 개이나,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세무 당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서류 신고 및 제출 시간이 9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현재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 승인된 IT 솔루션 구매 시 구매비용의 80%까지 지원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호주 - 다국적기업 무이자 금전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 호주 국세청(ATO)은 2020년 8월 12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규제와 관련하여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이자 금전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인 PCG 2017/4DC Schedule 3 초안을 발표함⁵³⁾
- Schedule 3에서는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이자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자체 위험평가 지침 및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⁵⁴⁾

52) Bloomberg Tax, "Singapore Digitizes Small and Mid-Size Company Tax Returns", Aug 19, 2020, 검색일자: 2020. 9. 16.; IRAS, "New Seamless Filing Initiative Enables SMEs to Go Digital", Aug 20, 2020,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Newsroom/Media-Releases-and-Speeches/Media-Releases/2020/New-Seamless-Filing-Initiative-Enables-SMEs-to-Go-Digital/>, 검색일자: 2020. 9. 16.

53) Bloomberg Tax, "Australia Seeks Feedback on Draft Related-Party Loan Guidance", Aug 20, 2020, 검색일자: 2020. 9. 15.; ATO, "Draft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2017/4DC2",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bulletins-newsroom/General/Draft-Practical-Compliance-Guideline-2017/4DC2/>, 검색일자: 2020. 9. 15.

54) ATO, "Draft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2017/4DC2",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bulletins-newsroom/General/Draft-Practical-Compliance-Guideline-2017/4DC2/>, 검색일자: 2020. 9. 15.



- 이전가격 관련 자체 위험평가 시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이자 금전 대여 계약의 경우 다른 이전가격 관련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고위험 등급(amber zone)에서부터 시작함을 명시함
- 그러나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 등급을 낮게 평가할 수 있음
 - 무이자율이 정상 이자율인 경우
 - 금전 대여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분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 금전 대여가 아닌 지분 조달 약정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호주 국세청은 해당 초안과 관련하여 무이자 금전 대여 관련 계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피드백을 받을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호주 - MEC 기업 집단의 양도소득세 회피 관련 주의 발표]

■ 호주 국세청(ATO)은 2020년 8월 24일 MEC (multi-entry consolidated) 기업 집단에 대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그룹 내 자산 매각방식에 관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Taxpayer Alert(TA) 2020/4를 발행함⁵⁵⁾

- TA 2020/4에서는 MEC 기업 집단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한 방식으로 그룹 내 자회사(ET-1)를 이용해 기초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함
 - MEC(multi-entry consolidate) 기업 집단은 단일 외국 기업(Top company)이 지배하는 호주 거주 기업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ET-1(eligible tier-1) 회사는 해당 외국 기업이 100% 소유하는 호주 내 거주 기업을 의미함⁵⁶⁾
- TA 2020/4에서 지적하는 자산 매각방식을 살펴보면, ① 특정 회사가 MEC 그룹 내의 ET-1 회사로 신규 편입되고, ② 신규 편입된 ET-1 회사로 기초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이전되며, ③ 이후 해당 ET-1 회사가 MEC 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기초 자산이 MEC 그룹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자산 매각방식임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방식은 기초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있어 특정 회사를 그룹 내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자산 이전 후 다시 제외시키는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55) Tax Notes, "Australia Warns Multinational Groups About CGT Avoidance", Aug 31, 2020, 검색일자: 2020. 9. 15.;Deloitte, "ATO highlights concerns over multiple entry consolidated groups avoiding CGT", Aug 27, 2020, <https://www.taxathand.com/article/15206/Australia/2020/ATO-highlights-concerns-over-multiple-entry-consolidated-groups-avoiding-CGT>, 검색일자: 2020. 9. 16.

56) Australian Government, "Multiple entry consolidated groups",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C2015-015_MEC_grouptri_review.pdf, 검색일자: 2020. 9. 16.

[뉴질랜드 -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 뉴질랜드 국세청은 암호화폐 자산이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 및 개인에게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전달하고자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⁵⁷⁾
 -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개인 및 기업 간에 판매, 거래 및 교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며, 따라서 소득세 신고 시 암호화폐 소득도 포함해야 함
-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소득 및 공제 대상, 암호화폐 기록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음⁵⁸⁾
 - 암호화폐 소득에는 다음의 수입이 포함됨
 - 채굴한 암호화폐(블록 보상, 거래 수수료 등 포함)
 - 지분 증명(proof of stake) 방식으로 얻은 암호화폐
 - 암호화폐 대어를 통해 얻은 암호화폐 이자수익
 - 암호화폐의 판매 또는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
 - 암호화폐 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암호화폐 취득 시 지불한 비용(예: 거래 수수료)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

- 암호 화폐와 관련된 기타 비용(예: 전기료, 임대료 등)
- 소득세 신고 시 암호 화폐소득은 뉴질랜드달러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환율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납세자는 아래 정보에 대하여 최소 7년 동안 기록 및 보관해야 함
 - 암호화폐 유형, 거래 날짜, 거래 유형(예: 취득 또는 처분), 거래단위 수, 거래금액(뉴질랜드 달러), 연초 및 연말에 보유한 각 암호화폐의 총단위 수, 화폐 교환 기록 및 은행 명세서, 암호화폐지갑 주소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EU - VAT Gap 조사 보고서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10일, 2018년도 실제 측정치를 반영한 VAT Gap 조사 보고서⁵⁹⁾를 발표함⁶⁰⁾
 - VAT Gap이란 국가별 부가가치세 예상 수입과 실제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의미함
 - 해당 조사 보고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된 EU 28개 회원국의 VAT Gap을 조사하는 연구 보고서의 일환으로 발간됨

57) IRD, "New Inland Revenue guidance on cryptoassets", Sep 7, 2020., <https://www.media.ird.govt.nz/articles/new-inland-revenue-guidance-on-cryptoassets/>, 검색일자: 2020. 9. 15.; Bloomberg Tax, "New Zealand Cryptocurrency Traders Must Pay Tax on Foreign Sales", Sep 7, 2020, 검색일자: 2020. 9. 15.

58) IRD, "Taxing cryptoasset income", <https://www.ird.govt.nz/cryptoassets/taxing>, 검색일자: 2020. 9. 23.

59) European Commission,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Septemeber 2020.

60) EU,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tax-cooperation-control/vat-gap_en, 검색일자: 2020. 9. 16.



-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VAT Gap은 140조유로로 예상되어 2017년도보다 약간의 감소세를 보임
 - 2019년도 역시 VAT Gap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VAT Gap이 164조유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절대 수치로 계산한 VAT Gap은 2014년 162조유로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도 141조유로, 2018년도 140조유로로 측정되었으며 2019년은 125조유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부가가치세 징수금액 대비 비율로 계산한 VAT Gap은 2014년도 14.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도 11.5%, 2018년도 11%, 2019년도는 9.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VAT Gap 예측치의 국가별 차이는 세무행정 이행, 조세사기, 조세회피, 파산, 채무 불이행 등의 EU 회원국 간 차이 상태를 반영함
 - 2019년도 기준 VAT Gap을 부가가치세 징수금액 대비 비율로 계산하였을 때 수치가 높은 회원국은 로마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수치가 낮은 회원국은 스웨덴, 크로아티아, 핀란드가 해당됨
 - VAT Gap을 절대 수치로 계산하였을 때 가장 높은 회원국은 이탈리아이며, 영국과 독일이 뒤를 이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통계청,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0. 9. 8.)¹⁾
 - (전체) 2020년 2분기의 직전 분기 대비 EU 27 개국의 경제성장률은 -11.4%, 유로지역의 경우 -11.8%를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EU 27개국 -13.9%, 유로지역 -14.7%를 기록
 - (국가별)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스페인 (-18.5%), 크로아티아(-14.9%), 헝가리(-14.5%), 그리스(-14.0%), 포르투갈(-13.9%), 프랑스 (-13.8%), 이탈리아(-12.8%) 순으로 낮음
 - (지출항목별) 직전 분기와 비교한 2020년 2분기 유로지역의 가계 최종소비지출 변화율은 -12.4%,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2.6%, 총고정자본형성은 -17.0%, 수출은 -18.8%, 수입은 -18.0%를 기록
 - EU는 가계 최종소비지출 -12.0%, 정부 최종소비지출 -2.4%, 총고정자본형성 -15.4%, 수출 -18.8%, 수입 -17.8%

<표 1> 2020년 2분기 GDP 지출항목별 변화율

(단위: %)

구분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	EU	유로지역	EU
가계 최종소비지출	-12.4	-12.0	-15.9	-15.1
정부 최종소비지출	-2.6	-2.4	-2.5	-2.0
총고정자본형성 ¹⁾	-17.0	-15.4	-21.1	-19.0
수출	-18.8	-18.8	-21.5	-21.0
수입	-18.0	-17.8	-20.7	-20.1
GDP	-11.8	-11.4	-14.7	-13.9

주: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출처: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0, 2020. 9. 8.

- EU 집행위원장, 203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자는 새로운 기후 목표를 제안(2020. 9. 17.)²⁾
 - (개요) EU 집행위원장이 의회 국정연설에서 2050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안을 발표
 -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광범위한 영향평가'³⁾를 통해 새로운 목표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새 목표를 설정

1)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0, 2020. 9. 8.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0545471/2-08092020-AP-EN.pdf/43764613-3547-2e40-7a24-d20c30a20f64>

2) EU 집행위, State of the Union: Commission raises climate ambition and proposes 55% cut in emissions by 2030, 2020. 9. 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599, 검색일자: 2020. 9. 18.

3)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하여 50~55% 감축할 경우 EU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EU 집행위가 면밀하게 분석.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균형 있고 현실적이며 신중한 경로로 2030년까지 최소 55%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음



<표 2> EU 27개국의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국가	직전 분기 대비 변화율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19		2020		2019		2020	
	Q3	Q4	Q1	Q2	Q3	Q4	Q1	Q2
유로지역 19개국(EA19) ³⁾	0.3	0.1	-3.7	-11.8	1.4	1.0	-3.2	-14.7
EU 회원국 27개국(EU27) ⁴⁾	0.4	0.1	-3.3	-11.4	1.6	1.2	-2.7	-13.9
벨기에	0.4	0.5	-3.5	-12.1	1.6	1.3	-2.4	-14.4
불가리아	0.7	0.8	0.3	-10.0	3.2	3.1	2.4	-8.5
체코	0.5	0.4	-3.3	-8.7	2.3	2.0	-1.9	-11.0
덴마크	0.2	0.5	-2.0	-6.9	2.4	2.1	-0.1	-8.2
독일	0.3	0.0	-2.0	-9.7	0.8	0.4	-2.2	-11.3
에스토니아	1.4	-0.1	-2.2	-5.6	5.5	4.1	-0.1	-6.5
아일랜드	3.3	1.3	-2.1	-6.1	6.8	7.7	4.4	-3.7
그리스	0.2	-0.9	-0.7	-14.0	2.2	0.8	-0.5	-15.2
스페인	0.4	0.4	-5.2	-18.5	1.9	1.8	-4.1	-22.1
프랑스	0.2	-0.2	-5.9	-13.8	1.6	0.8	-5.7	-18.9
크로아티아	0.6	0.4	-1.3	-14.9	2.8	2.7	0.3	-15.1
이탈리아	0.0	-0.2	-5.5	-12.8	0.5	0.1	-5.6	-17.7
키프로스	0.6	1.2	-2.1	-11.6	3.2	3.2	0.8	-11.9
라트비아	0.6	0.1	-2.9	-6.5	1.8	1.0	-1.5	-8.6
리투아니아	0.8	1.1	-0.3	-5.5	3.8	3.9	2.4	-4.0
룩셈부르크	0.4	0.4	-2.9	:	3.0	3.0	-0.2	:
헝가리	0.9	0.7	-0.4	-14.5	4.7	4.4	2.0	-13.5
몰타	-2.0	0.5	-2.6	-11.6	3.5	4.3	0.7	-15.2
네덜란드 ¹⁾	0.3	0.5	-1.5	-8.5	1.6	1.6	-0.3	-9.0
오스트리아	-0.2	-0.2	-2.4	-10.4	1.4	0.4	-2.8	-12.9
폴란드	1.2	0.2	-0.4	-8.9	4.1	3.5	1.7	-7.9
포르투갈	0.3	0.7	-3.8	-13.9	1.9	2.2	-2.3	-16.3
루마니아	0.5	1.2	0.3	-12.3	3.3	3.9	2.7	-10.5
슬로베니아	0.8	0.4	-4.8	-9.6	2.1	1.7	-3.7	-12.9
슬로바키아 ²⁾	0.4	0.6	-5.2	-8.3	1.9	2.0	-3.8	-12.2
핀란드	0.3	-0.3	-1.9	-4.5	1.6	0.9	-1.2	-6.3
스웨덴	0.3	0.1	0.2	-8.3	1.7	0.7	0.7	-7.7
영국	0.5	0.0	-2.2	-20.4	1.3	1.1	-1.7	-21.7
아이슬란드 ²⁾	-0.5	4.7	-5.7	-9.1	1.3	2.9	-1.3	-10.7
노르웨이	0.0	1.5	-1.7	-5.1	0.5	1.8	0.0	-5.3
스위스	0.4	0.8	-2.5	-8.2	1.3	2.2	-0.8	-9.4
미국	0.6	0.6	-1.3	-9.1	2.1	2.3	0.3	-9.1

주: 1) 캘린더 효과 조정자료로 계산된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

2) 슬로바키아와 아이슬란드는 계절조정에 캘린더 효과 조정을 포함하지 않음

3) 유로지역 19개국(EA19):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4) EU 회원국 27개국(EU27):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출처: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0, 2020. 9. 8.

- (기존 목표) 현재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는 최소 40% 감축이나, EU 재생에너지 개발 등 진행 중인 정책과 회원국들의 계획으로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필요 노력) 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함
- (기대 효과) 새로운 2030년 기후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자원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경쟁력을 기르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단계) EU 집행위는 새로운 2030년 기후 목표를 기후법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IMF

■ Fiscal Monitor, October 2020 발표(2020. 10. 6.)^{4), 5), 6)}

- (배경) 전 세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 기업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러나 더 나아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친환경적인 경제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목적) 이번 Fiscal Monitor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투자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함
- (공공투자의 효과) 국가 간 데이터(cross-country data set) 및 약 40만개의 기업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공공투자는 GDP 성장률과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1% 규모의 공공투자가 실행되는 경우, 첫 해 생산량은 0.25-0.5% 증가에 그치지만, 그 효과는 점차 확대될 수 있음
 - 총 약 22억명의 노동자가 있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에서 GDP 대비 1% 규모로 공공투자를 늘리면 직접적으로는 700만개, 간접적으로는 2천만에서 3,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
- (유의사항) 그러나 공공투자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사업의 지연, 비용 초과, 부실 운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정부의 긴밀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가 매우 중요함
 - 공공투자가 장·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필수적임
 - 또한 사업의 품질(qua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의 규모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함

4) IMF의 Fiscal Monitor 보고서는 재정과 관련된 이슈를 선정하여 매년 두 차례(4월과 10월) 발표함

5) 본 재정동향에 실린 내용은 Fiscal Monitor보고서의 Executive summary 파트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의 원문 혹은 향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Fiscal Monitor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참고

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0/09/30/october-2020-fiscal-monitor>



- 공공투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투입되는 자원의 3분의 1 이상이 손실될 수 있음

● (권고사항) 따라서 공공투자가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① (유지 보수 사업) 유지 보수(maintenances) 사업은 자산의 마모를 완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낭비를 제한하여 환경에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② (진행 중인 사업 검토 및 재개) 위기 시 신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품질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재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음
- ③ (파이프라인 구축) 위기 시 준비기간이 짧은 사업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사업은 품질과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이행 전 사업의 파이프라인을 면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④ (위기 이후 프로젝트) 위기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개발 우선순위와 경기회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사업(예: 바이러스, 기후변화, 디지털화)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결론) 코로나19 여파가 경제 다방면에 미치고 있어 앞서 언급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회복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우선되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배소민 선임연구원>



OECD

■ 조세 개혁 보고서 Tax Policy Reforms 2020 발표 (2020. 9. 3.)⁷⁾

※ 동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재정동향에서는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룸

-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채택된 주요 조세정책 및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조세·재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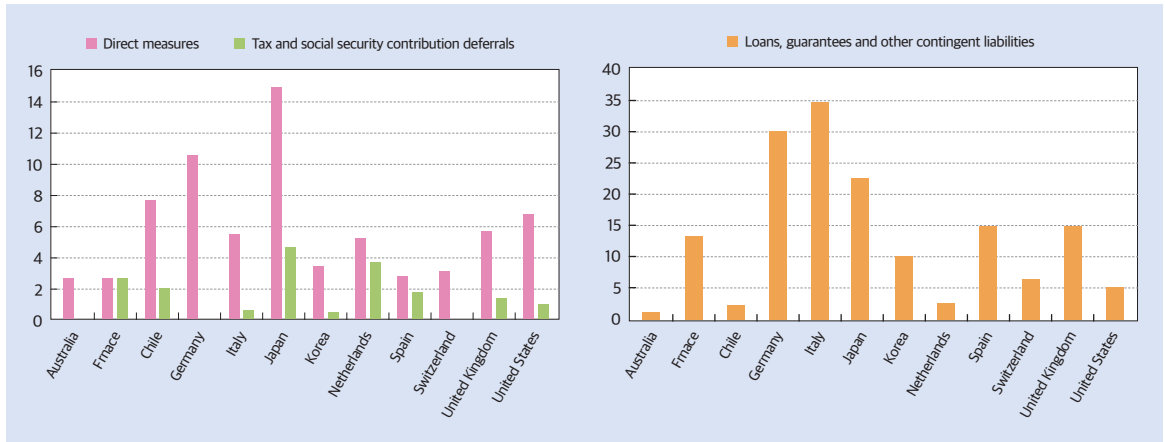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초기, 여러 국가는 위기에 따른 비상 대응에 초점을 둬
 - 여러 국가는 우선적으로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수립된 재정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목표*를 갖게 되었음
 -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부터 가구와 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최악의 보건위기가 지나면 이후 가구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
 -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구에 대해 소득을 지원
-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각 국가들은 지원 패키지를 강화함
 - 기존의 위기 대응 조치를 연장하고 초기 조치

7) OECD, Tax Policy Reforms 2020, 2020.

OECD Newsroom, "Countries have responded decisively to the COVID-19 crisis, but face significant fiscal challenges ahead," 2020. 9. 3. <https://www.oecd.org/newsroom/countries-have-responded-decisively-to-the-covid-19-crisis-but-face-significant-fiscal-challenges-ahead.htm>

[그림 1]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패키지 규모

(단위: GDP 대비 %)



주: 2020년 6월 중순 기준 추정치

출처: OECD, Tax Policy Reforms 2020, 2020, p. 114

- 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비상 조치에 대한 적격성을 명확히 하고, 세무 감사 활동을 중단하며, 세제개혁을 연기
- 몇몇 국가는 각국이 처한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여 특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제공
- 최근에는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포용과 지속가능성이 그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팬데믹 이후 시대에는 재건 및 공공재정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조세정책 이슈가 등장할 것임
- 재정 패키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국가마다 그 유형과 규모는 달랐지만 대부분 포괄적이고 의미가 있는 조치였음
- 기업지원 정책은 세금납부 유예 및 현금흐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별로 유사하게 시행되었고, 고용유지지원제도나

-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도입 및 확대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짐
- 반면 가구지원 정책에는 국가 간 차이가 존재
 -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는 유급병가 및 실업수당에 대한 적격성과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고 소득 지원을 확대
 - 신흥국에서는 저소득 가구,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장 수급자에게 현금이전과 같은 사회복지 조치가 사회보험이나 고용유지지원제도보다 더 일반적으로 이루어짐
- 국가 간 대응정책의 차이는 재정여력, 자동안정화 장치의 유무, 복지 시스템의 특성 및 행정 능력 등에 기인
- 국가마다 재정 패키지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함([그림 1] 참조)



■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 Interim Economic Assessment 발표(2020. 9. 16.)⁸⁾

- (현황) 봉쇄 조치 완화 및 사업 재개 초기에 생산량은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여름 동안 모멘텀을 다소 잃음
 - 내구재에 대한 가계 지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했지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
 - * 특히 해외 여행이나 근로자와 소비자 간의 근접성이 필요한 서비스
 -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감소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가구 소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기업 투자와 국제 무역은 여전히 둔화된 상태로,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제조업 부문의 생산 증가를 둔화시킴
- (전망) 경제전망은 상당히 불확실하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책에 대한 가정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전망
 - 금번 경제전망은 지역적으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발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즉, 백신은 2021년 말까지 폭넓게 보급되지 않는 것이라는 가정)
 - 글로벌 GDP는 2020년 4.5% 감소한 후 2021년 5%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의 위협이 예상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면, 신용 개선으로 2021년 글로벌 활동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 그러나 바이러스의 더욱 강력한 재발 또는 엄격한 봉쇄 조치는 2021년 글로벌 성장률을 2~3%p 더 낮추게 할 수도 있음
- (평가 및 권고) 재정·통화 정책 및 구조정책 지원은 신뢰를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하나 경제 상황에 따라 전개되어야 함
 - 여러 중앙은행이 지난 3개월 동안 완화정책을 적절하게 발표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정책금리가 장기간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정책 프레임워크 또한 적절히 변경
 - 최근 많은 국가에서 발표한 추가적인 재정 조치는 적절하며, 2021년에도 재정정책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 강력한 재정지원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요 비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져야 함
 - 국경 개방을 유지하고 무역, 투자 및 의료장비의 자유로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선임연구원>

8) OECD, "Coronavirus: Living with uncertainty," Interim Economic Assessment, 2020. OECD Newsroom, "Building confidence crucial amid an uncertain economic recovery," 2020. 9. 16., <https://www.oecd.org/newsroom/building-confidence-crucial-amid-an-uncertain-economic-recovery.htm>

<표 3>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19년 실적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중간 전망치	2020년 6월 전망치 ¹⁾ 대비 차이	중간 전망치	2020년 6월 전망치 ¹⁾ 대비 차이
세계	2.6	-4.5	1.5	5.0	-0.2
G20	2.9	-4.1	1.6	5.7	0.2
호주	1.8	-4.1	0.9	2.5	-1.6
캐나다	1.7	-5.8	2.2	4.0	0.1
유로지역	1.3	-7.9	1.2	5.1	-1.4
독일	0.6	-5.4	1.2	4.6	-1.2
프랑스	1.5	-9.5	1.9	5.8	-1.9
이탈리아	0.3	-10.5	0.8	5.4	-2.3
일본	0.7	-5.8	0.2	1.5	-0.6
한국	2.0	-1.0	0.2	3.1	0.0
멕시코	-0.3	-10.2	-2.7	3.0	0.0
터키	0.9	-2.9	1.9	3.9	-0.4
영국	1.5	-10.1	1.4	7.6	-1.4
미국	2.2	-3.8	3.5	4.0	-0.1
아르헨티나	-2.1	-11.2	-2.9	3.2	-0.9
브라질	1.1	-6.5	0.9	3.6	-0.6
중국	6.1	1.8	4.4	8.0	1.2
인도	4.2	-10.2	-6.5	10.7	2.8
인도네시아	25.0	-3.3	-0.5	5.3	0.1
러시아	1.4	-7.3	0.7	5.0	-1.0
사우디아라비아	0.4	-6.8	-0.2	3.2	-0.6
남아프리카	0.1	-11.5	-4.0	1.4	-1.1

주: 1) single hit scenario(역제 조치를 통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극복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준
출처: OECD, "Coronavirus: Living with uncertainty," Interim Economic Assessment, 2020, p. 2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예산처(CBO), 2020~2030 예산기준선 수정 전망(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20~2030) 발표(2020. 9. 2.)⁹⁾

- 2020년 재정적자 전망치는 2019년 규모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조 3천억달러(GDP 대비 16.0%)이며, 194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는 2020년 이후 감소하면서, 2023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 전망

- (수입) 2020년 연방세입은 전년 대비 5%(1,670억달러) 감소한 3조 3천억달러 전망(GDP 대비 16.0%)

-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2019. 10.~2020. 3.)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였으나, 하반기(2020. 4.~2020. 9.) 수치는 13% 하락 전망

* 수입 감소의 대부분은 2020년 하반기의 개인소득세(전년 대비 11% 감소)와 법인세(전년 대비 34% 감소) 징수 감소에 기인함

- (지출) 2020년 연방지출은 전년 대비 50%(2조 2천억달러) 증가한 6조 6천억달러 전망(GDP 대비 32.0%)

*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에 기인

- (재량지출) 재량지출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38%(5억 2천만달러) 증가한 1조 9천억달러 전망(GDP 대비 8.0%)

- 총 재량지출 규모(1조 9천억달러)에서 긴급 비상지출이 약 31%(5,930억달러)를 차지
- (의무지출) 2020년 의무지출은 이자지출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70%(1조 9천억달러) 증가한 4조 6천억달러 전망(GDP 대비 24.0%)

* 의무지출 증가분의 주요 항목은 중소기업급여보호프로그램(5,410억달러), 실업급여수당(280억달러(2019) → 5,570억달러(2020), 재난지원금(신규 2,720억달러) 등으로 구성

- (국가채무) 연방정부 채무¹⁰⁾는 2020년 올해 GDP 대비 약 98% → 2021년에는 GDP 대비 100% → 2029년에는 109% 전망

■ 미 의회예산처(CBO), 2020 장기재정전망(The 2020 Long-Term Budget Outlook) 보고서 발표(2020. 9. 21.)¹¹⁾

- (국가채무) FY2020 GDP 대비 연방채무¹²⁾는 전년(실적) 대비 18.8%p 상승한 98% 전망
- 연방채무는 2021년 GDP 대비 104% → 2023년에는 미 역사상 최고기록(106%)을 경신한 107% 전망(2050년 GDP 대비 채무규모는 195% 전망)

- (재정) FY2020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전년(GDP 대비 4.6%)보다 약 3.5배 증가한 16.0%로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 (2030) 5.3% → (2040) 9.0% → (2050) 12.6%

- (지출전망) FY2020 GDP 대비 재정지출은 전년(21.0%) 대비 11%p 증가한 32.0% 전망(2050년 GDP 대비 지출규모는 31.2% 전망)¹³⁾

9)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517>

10)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11)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516>

12) debt held by the public(정부내부거래 제외)

13)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0. 9. 21., Figure 9

<표 4> 미국 예산기준선 전망 비교(3월 vs 9월)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예산 총량(십억달러)													
수입	3월	3,330	3,462	3,632	3,815	4,000	4,205	4,381	4,562	4,851	· · ·	5,444	5,743
	9월			3,296	3,256	3,739	3,980	4,146	4,334	4,656	· · ·	5,296	5,457
지출	3월	4,109	4,447	4,706	4,817	5,118	5,319	5,523	5,868	6,176	· · ·	7,016	7,503
	9월			6,606	5,066	5,075	5,104	5,226	5,507	5,772	· · ·	6,602	7,084
재정 적자	3월	779	984	1,073	1,002	1,118	1,114	1,141	1,306	1,325	· · ·	1,472	1,760
	9월			3,311	1,810	1,336	1,124	1,081	1,174	1,116	· · ·	1,306	1,627
국가 채무 ¹⁾	3월	15,750	16,801	17,835	18,816	19,996	21,144	22,338	23,694	25,053	· · ·	29,479	31,292
	9월			20,270	21,931	23,320	24,520	25,657	26,818	27,888	· · ·	31,773	33,457
예산 총량(GDP 대비 %)													
수입	3월	16.5	16.3	16.4	16.6	16.7	16.9	17.0	17.1	17.6	· · ·	18.0	17.9
	9월			16.0	15.5	16.9	17.3	17.3	17.3	17.8	· · ·	17.9	17.8
지출	3월	20.3	21.0	21.3	20.9	21.4	21.4	21.5	22.0	22.4	· · ·	22.7	23.4
	9월			32.0	24.1	23.0	22.2	21.8	22.0	22.1	· · ·	22.3	23.0
재정 적자	3월	3.9	4.6	4.9	4.3	4.7	4.5	4.4	4.9	4.8	· · ·	4.8	5.5
	9월			16.0	8.6	6.1	4.9	4.5	4.7	4.3	· · ·	4.4	5.3
국가 채무 ¹⁾	3월	77.8	79.2	80.7	81.7	83.6	85.2	86.8	88.9	90.7	· · ·	95.6	97.8
	9월			98.2	104.4	105.6	106.7	107.1	107.2	106.7	· · ·	107.4	108.9

주: 1) 국가채무는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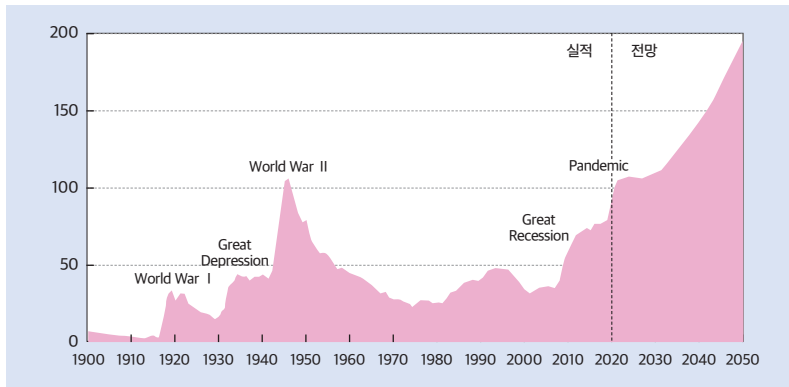
출처: CBO, 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20 to 2030, 2020. 9.

CBO, Baseline Budget Projections as of March 6, 2020. 3.



[그림 2] 연방채무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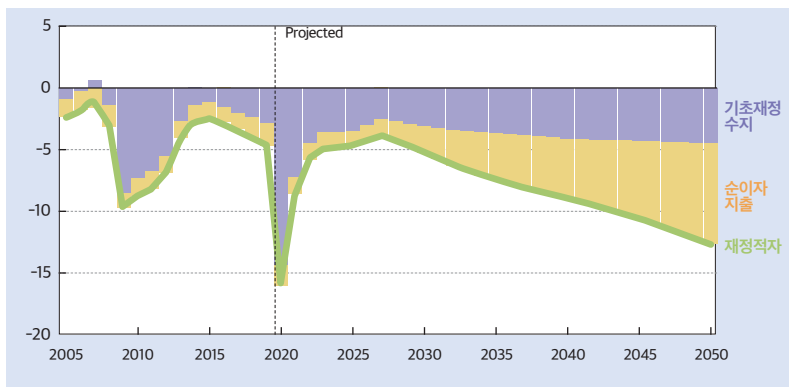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0 Long-Term Budget Outlook, 2020. 9. 21.

[그림 3] 미국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0 Long-Term Budget Outlook, 2020. 9. 21.

- GDP 대비 재량지출은 8.0%(2020) → 5.8%(2030)로 감소하며, 이후 전망기간(2030~2050년) 동안 GDP 대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할 전망
- GDP 대비 의무지출은 2024년까지 감소(2020: 22.4% → 2024: 14.2%)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지출의 감소에 주로 기인

- * GDP 대비 의무지출 전망: (2030) 15.1% → (2040) 16.6% → (2050) 17.5%
- 연방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2020년 올해 GDP 대비 5.3% → 6.3%(2050)로 증가할 전망
 - (수입전망) FY2020 GDP 대비 재정수입은 전년(16.3%) 대비 0.3%p 감소한 16.0% 전망

<표 5> 장기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추정	연평균 전망		
	2019	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재정수입					
개인 소득세	8.1	7.4	8.8	9.7	10.1
사회보험급여세(payload tax)	5.9	6.4	6.0	5.8	5.7
법인세	1.1	0.7	1.2	1.2	1.3
기타	1.3	1.4	1.4	1.2	1.3
총수입	16.3	16.0	17.5	17.9	18.4
재정지출					
의무지출	12.9	22.4	14.8	16.1	17.2
사회보장	n/a	5.3	5.7	6.2	6.3
주요 의료보험	n/a	6.1	6.4	7.7	8.8
기타	n/a	11.0	2.6	2.2	2.0
재량지출	6.3	8.0	6.3	5.6	5.6
이자	1.8	1.6	1.5	3.8	6.5
총지출	21.0	32.0	22.5	25.4	29.3
재정적자	4.6	16.0	5.0	7.5	10.9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79.2	98	109	142	195

출처: CBO, 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19. 6. 25.
CBO, The 2020 Long-Term Budget Outlook, 2020. 9. 21.

- 2025년에 만료되는 세금감면정책(2017 Tax cut and Jobs Act¹⁴⁾)의 만료로 인해 재정수입은 17.3%(2025) → 17.8%(2030)로 증가하며, 2050년에는 18.6% 전망

■ 미 의회, FY2021 임시 예산안(Continuing Appropriations Act¹⁵⁾; H.R. 8337; P.L. 116-159) 통과 의결(2020. 9. 30.)¹⁶⁾

* (9.22) 하원 통과 → 상원 통과(9.30.) → 트럼프 대통령 법안 서명(10.1)

● 미 의회는 2021 회계연도 정규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20 회계연도(2019. 10. 1.~2020. 9. 30.) 마지막 날에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

* FY2021 첫 임시 예산안인 HR 8337의 만료시한은 2020년 12월 11일로 규정

● 동 임시 예산안은 주요 보건 프로그램과 인프라 관련 조항 및 폐쇄된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 팬데믹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프로그램 등 만료되는 기존 정책들의 연장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14) 2017 세금감면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7-11호, 2017 참조

15) 법의 공식 원문 명칭: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21 and Other Extensions Act

1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bill-announcement-100120/>



[기타]

■ 의회예산처(CBO), 주요 연방기금(trust funds) 전망 보고서(The Outlook for Major Federal Trust Funds: 2020 to 2030) 발표(2020. 9. 2.)¹⁷⁾

- 2020년 연방기금 잔고(balances)는 전년 대비 감소, 기금 수지(deficits or surpluses)는 적자 전망
 - 2020년 연방기금 잔고는 전년(5조 2,460억 달러) 대비 약 0.8%(430억달러) 감소한 5조 2,030억달러 전망
 - 전년도(2019년) 연방기금 수지 실적치는 흑자(1,13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수지는 적자(-760억달러) 전망 → 2030년에는 5,020억달러 적자 전망
- 연방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53% 비중)의 경우, 2019년 잔고규모가 약 2조 8천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31년(역년 기준)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 CBO는 의회기금 적자 상황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 안에 3개¹⁸⁾의 연방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0. 9. 2.)¹⁹⁾

- 경제활동이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

- 자동차 판매업 강세와 관광업, 소매업의 일부 개선에 따라 소비자 지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많은 지역에서 회복 속도가 느리고 전체적인 지출은 대유행 이전 수준에 못 미침
-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고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0년 8월 고용 통계 발표(2020. 9. 4.)²⁰⁾

- (가계조사) 2020년 8월 실업률은 8.4%로 전월 대비 1.8%p 하락
 - 올해 6월(-2.2%p)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하나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로 오분류된 사람들을 고려하면 실업률이 최대 0.7%p 더 상승

■ 미 의회예산처(CBO), 코로나19 대응법이 산출에 미친 영향(The Effects of Pandemic-Related Legislation on Output)에 대한 보고서 발표(2020. 9. 18.)²¹⁾

- 2020년 3~4월에 제정된 4개의 주요 코로나19 대응법²²⁾이 단기(2020~2023년, 이하 회계연도)에는

17)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523>

18) ① Highway Trust Fund(2021년 소진) ② Medicare's Hospital Insurance(HI) Trust Fund(2024년 소진) ③ Social Security's Disability Insurance(DI) Trust Fund(2026년 소진)

19) Fed, Beige Book - September 2, 2020, 2020. 9. 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009.htm>

20)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2020. 9. 4.,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nr0.htm>

21) CBO, The Effects of Pandemic-Related Legislation on Output, 2020. 9. 18.(10월 1일 수치 수정본 기준) <https://www.cbo.gov/publication/56537>

22) 코로나 대응 추경,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 CARES Act, 급여보호 및 보건증대법.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을 참고

2조 6,428억달러 재정적자, 장기(2024~2030년)에는 370억달러 재정흑자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집중되어 재정적자가 각각 2조 3천억달러(GDP 대비 11.2%), 6천억달러(2.7%) 증가할 전망

- 동 법들은 단기에는 적자 1달러당 GDP를 약 58

센트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장기에는 동 법들이 GDP를 소폭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 본 추정은 정책 변화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반응,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상황, 백신과 치료법 보급시기 등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

<표 6> 미국 연방기금 잔고 (기준선) 전망

(단위: 십억달러)

주요 기금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0
사회보장(Social Security)	2,901	2,907	2,787	2,636	2,477	2,285	2,059	1,817	...	533
노령·유족연금(OASI ¹⁾)	2,804	2,811	2,707	2,572	2,430	2,256	2,049	1,817	...	533
장애연금(DI ²⁾)	97	95	80	63	48	29	10	0	...	0
메디케어(Medicare)	303	268	283	197	142	152	173	194	...	240
연방건강보험(HI ³⁾)	199	153	155	88	28	0	0	0	...	0
연방보충의료보험(SMI ⁴⁾)	105	115	128	109	114	152	173	194	...	240
군인연금(Military Retirement)	827	905	1,005	1,106	1,212	1,323	1,436	1,553	...	1,567
연방공무원 퇴직연금(Civilian Retirement)	960	976	996	1,015	1,034	1,054	1,073	1,093	...	1,179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84	0	0	70	69	67	53	49	...	71
고속도로/대중교통(Highway and Mass Transit)	28	11	0	0	0	0	0	0	...	0
공항 및 항로(Airport and airway)	15	9	*	*	1	2	3	5	...	12
철도직원 퇴직연금(Railroad Retirement)	3	2	2	2	2	2	2	1	...	1
기타(Other)	124	124	126	128	130	132	134	137	...	149
총계(Total Balance)	5,246	5,203	5,200	5,153	5,068	5,017	4,933	4,849	...	3,752

주: 1. *는 0~5억달러 미만

1) Old-Age and Survivors and Insurance

2) Disability Insurance

3) Hospital Insurance(Part A)

4)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Parts B & D)

출처: CBO, The Outlook for Major Federal Trust Funds: 2020 to 2030, 2020. 9. 2.



■ 미 감사원(GAO), 국가 재정 건전성 보고서 발표 (2020. 9. 23.)²³⁾

- (배경) 감사원은 상원 예산위원회의 마이크 엔지 위원장과 하원 예산위원회 스티브 위맥 부대표의 요청을 받아 재정준칙 및 재정 목표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음
- (재정준칙 현황) 동 보고서는 현재 운용 중인(in effect) 재정준칙으로 ① 페이고(PAYGO²⁴⁾) 준칙과 ② 예산통제법(BCA²⁵⁾)을 꼽고 있음
 - (문제점) 페이고 준칙과 예산통제법이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했으며, 두 법이 동시에 존재한 2012~2019년 사이에 경기 확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채무가 GDP 대비 70% → 79%로 증가함
- (정책 제언) 동 보고서는 현재 의회는 장기 재정 계획 및 채무 증가를 통제할 효과적인 재정준칙이 부족하기에 GDP 대비 채무 목표 등을 활용한 장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음 일곱 가지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
 - ① 분명한 목표 설정, ② 경직성/유연성/이행 가능성²⁶⁾ 등의 적절한 결합, ③ 구속력 있는 법적 체계 등을 통한 영속성(permanence) 고려, ④ 재정준칙과 예산 절차와의 연계를 통한 점검 체계 구축, ⑤ 국가비상사태 등과 같은 명확하고 절제된 면제조항 포함, ⑥ 재정준칙 및 목

표 관련 기관 등에 명확한 역할 부여, ⑦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성 확립

■ 미 상무부 경제개발청(BEA), 2020년 2분기 GDP(확정치) 발표(2020. 9. 30.)²⁷⁾

- 미국의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31.4%(연율, 확정치)로 집계되어 2020년 1분기 -5.0%에서 급락
 - 1분기 대비 개인소비지출, 수출, 비주거고정투자, 민간재고투자, 주거고정투자, 주·지방정부지출 감소
 - 연방정부지출 증가, 수입 감소가 일부 상쇄
 - 잠정치(-31.7%)와 비교해 개인소비지출이 상향 조정되고 수출, 비주거고정투자가 하향 조정됨
-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장준희선임연구원>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20 1분기 예산 사용 상황²⁸⁾ 발표 (2020. 9. 4.)²⁹⁾

- FY2020 1분기 일반회계의 국가 수납금액은 13조 752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49조 702억엔으로, 지출 세출액이 납입 세입액을 35조 9,949억엔 초과함

23) GAO, <https://www.gao.gov/products/GAO-20-561>

24) PAYGO = Pay-As-You-Go

25) BCA = Budget Control Act of 2011

26) 경직성(simplicity) / 유연성(flexibility) / 이행 가능성(enforceability)

27) 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Corporate Profits (Revised), and GDP by Industry, Second Quarter 2020, 2020. 9. 30., <https://www.bea.gov/news/2020/gross-domestic-product-third-estimate-corporate-profits-revised-and-gdp-industry-annual>

28) 예산 사용 상황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 수납 상황 및 소관·조직·항(項)별 지출 상황과 특별회계의 수지(収支) 상황에 대한 각 부처의 월별 보고를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임

29) 재무성, 「令和2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財務省調査)」, https://www.mof.go.jp/budget/report/budget_use/fy2020/02_1a.pdf

- FY2020 1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은 8.1%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6,591억엔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채금 감소에 기인함
-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지출 비율은 29.4%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p 증가함
- FY2020 1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은 33.2%,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8.6%를 기록함

[기타]

- 내각부, 2020년 2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0. 9. 8.)³⁰⁾
 - 2020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7.9%(연율 ▲28.1%)이며, 명목GDP 성장률은 ▲7.6%(연율 ▲27.2%)로 나타남³¹⁾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4.9%(1차 속보치

<표 7> FY2020 1분기 예산 사용 상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602,606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¹⁾ (D)	1,668,387	세입예산액(A)	4,401,689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D)	4,415,635
1분기 국가 수납금액(B)	130,752	1분기 국가 지출금액(E)	490,701	1분기 국가 수납금액(B)	1,462,459	1분기 국가 지출금액(E)	1,264,921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B/A)	8.1 (14.5)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비율(E/D)	29.4 (26.4)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B/A)	33.2 (38.2)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비율(E/D)	28.6 (31.5)
1분기 누계(C)	130,752	1분기까지 누계(F)	490,701	1분기 누계(C)	1,462,459	1분기 누계(F)	1,264,921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8.1 (14.5)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29.4 (26.4)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33.2 (38.2)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28.6 (31.5)

주: 1. () 안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 등을 증감시킨 금액을 의미. FY2020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

출처: 재무성, 「令和2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0. 9. 4., https://www.mof.go.jp/budget/report/budget_use/fy2020/02_1gai.html

30) 내각부,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gaiyou_top.html

31) 1차 속보치는 실질 GDP 성장률 ▲7.8%(연율 ▲27.8%), 명목 GDP 성장률 ▲7.4%(연율 ▲26.4%)



<표 8> 실질 GDP 성장률(계절조정치)

(단위: %)

구분	전기비	
	1차 속보치 (8월 17일 발표)	2차 속보치 (9월 8일 발표)
국내총생산(GDP) [연율]	-7.8 [-27.8]	-7.9 [-28.1]
국내수요	-4.8	-4.9
민간수요	-6.5	-6.5
민간최종소비지출	-8.2	-7.9
민간주택	-0.2	-0.5
민간기업설비	-1.5	-4.7
공적수요	-0.0	-0.3
정부최종소비지출	-0.3	-0.6
공적고정자본형성	1.2	1.1
공적재고변동	-	-
재화 서비스 순 수출	-	-
수출	-18.5	-18.5
수입	-0.5	-0.5

출처: 내각부, 「2020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0. 9. 8, p. 1 <표1-1> 재구성,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4.8%), 명목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는 ▲5.8%(1차 속보치 ▲5.5%)로 나타남
- 이번 하향 조정은 민간설비투자자와 주택투자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1차 속보치는 공급 측 기초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추계하였고, 2차 속보치는 「사분기별 법인기업 통계(재무성)」 등에 의해 추계되는 수요 측 추계치와 공급 측 추계치를 통합하여 추계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독일

[예산·결산 등]

- 연방내각, FY 2021 예산안 및 2020~2024년 중기 재정계획안 발표(2020. 9. 23.)³²⁾
 - (재정지출) 연방정부의 지출은 2020년 5,085억 유로에서 2024년 3,933억유로까지 하락할 전망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및 혁신, 사회통합에 우선순위 설정
 - (미래를 위한 투자) 금년 2차 추경에 포함된 1,050억유로 규모의 경제·미래 패키지에 340억유로 추가 지원 계획
 -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지원을 위해 2021~2024년까지 매년 4억유로 지원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2024년까지 20억 유로 지원
 - 병원미래기금(Krankenhaus-Zukunftsfonds)에 30억유로 배정
 - 차량 제조 및 공급업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024년까지 추가로 15억유로 배정
 -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21년 5억유로 추가 지원
 - 기후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로 국가 수소전략에 2024년까지 68억유로 투자

32)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 9. 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9/2020-09-23-PM-Bundshaushalt-2021-Finanzplan-bis-2024-beschlossen.html>

- (사회통합)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사회적 지출비율은 2020년 50.2%에서 2021년 51%로 상승
 - 사회보장기여금 안정을 위해 2021년 보건의금에 50억유로 추가 교부금 지원
- (국제개발협력) 2021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전년 중기재정계획 대비 38억유로 증가한 19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 (국가채무) 2020년 독일의 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GDP 대비 15%p 이상 상승한 75%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신규차입은 2020년 2,178억유로, 2021년 962억유로로 전망

<표 9> FY2021 예산안 및 FY2020-24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구분	2020	2021	중기재정계획안 기본 수치		
			2022	2023	2024
재정지출	5,085	4,134	3,870	3,871	3,933
전년 대비 증가율	+42.6	-18.7	-6.4	-	+1.6
재정수입	5,085	4,134	3,870	3,871	3,933
조세수입	2,644	2,920	3,084	3,252	3,385
신규차입	2,178	962	105	67	52
투자	713	552	480	480	480

출처: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 9. 23.

[기타]

- 연방재무부, 제158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2020. 9. 10.)³³⁾
 - (세입) 금번 추계치에서 2020년 총세입은 지난 5월 추계 대비 11억유로 감소한 7,177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총임금 및 급여가 지난 5월 추계 대비 0.3%p 낮은 수치에 기인
 - 2021년 총세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200억유로 규모의 VAT 한시적 인하 및 40억유로의 자녀보너스가 포함되어 5월 추계 대비 196억유로 감소한 7,729억유로를 전망
 - 지난 5월 추계에서는 2022~2024년 총세입을 각각 8,160억유로 8,511억유로, 8,833억유로로 전망한 바 있음
 - (주요 수치) 연방정부의 2020년 중간전망의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추계했으며, 금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5.8%, 2021년 4.4%로 전망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선임연구원>

33) 연방통계청, Presse, Pressemitteilung 2020. 9.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9/2020-09-10-PM-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표 10> 2020년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방정부	9월 추계	3,291 (2.1)	2,753 (-16.3)	2,952 (7.2)	3,139 (6.3)	3,310 (5.4)	3,442 (4.0)
	5월 추계	3,291 (2.1)	2,845 (-13.5)	3,058 (7.5)	3,150 (3.0)	3,322 (5.4)	3,413 (2.7)
주정부	9월 추계	3,245 (3.3)	3,065 (-5.5)	3,218 (5.0)	3,380 (5.0)	3,518 (4.1)	3,674 (4.4)
	5월 추계	3,245 (3.3)	2,972 (-8.4)	3,301 (11.1)	3,402 (3.0)	3,535 (3.9)	3,675 (3.9)
기초자치단체	9월 추계	1,148 (3.2)	1,035 (-9.8)	1,130 (9.1)	1,163 (3.0)	1,214 (4.4)	1,276 (5.1)
	5월 추계	1,148 (3.2)	1,021 (-11.1)	1,154 (13.0)	1,179 (2.2)	1,225 (4.0)	1,273 (3.9)
EU ²⁾	9월 추계	309 (8.2)	323 (4.5)	428 (32.5)	422 (-1.3)	425 (0.5)	440 (3.6)
	5월 추계	309 (8.2)	339 (9.7)	411 (21.2)	429 (4.3)	428 (-0.2)	473 (10.4)
총 세입	9월 추계	7,993 (3.0)	7,177 (-10.2)	7,729 (7.7)	8,105 (4.9)	8,467 (4.5)	8,832 (4.3)
	5월 추계	7,993 (3.0)	7,178 (-10.2)	7,925 (10.4)	8,160 (3.0)	8,511 (4.3)	8,833 (3.8)

주: 1)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20~2024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분 등

출처: 연방재무부, Press Aktuelles, 2020. 5. 14.; 2020. 9. 10.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FY2021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PLF) 발표(2020. 9. 28.)³⁴⁾

- 보건위기로 인해 프랑스는 2020년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음
- 재정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해서,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10.2%로 전망됨
- 프랑스 정부는 4,700억유로 이상의 비상 조치를 통해 경제회복을 지원함

34)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 9. 28.,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1>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 9. 28.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our-2021>

- 강력한 재정지출을 통해 2022년까지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GDP 회복을 목표로 함

- (경제전망)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10%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기록한 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조치로 2021년에는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거시경제 악화와 대규모 지원 조치로 인해 재정전망은 크게 악화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0년 -10.2%를 기록하고, 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6.7%를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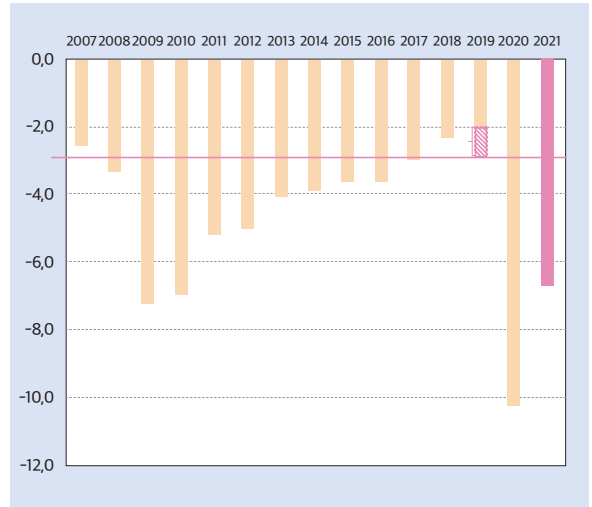
- (재정지출) 보건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조치와 관련한 지출이 2020년 급격히 증가(6.3%)하고, 2021년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0.4%로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입) 2020년 재정수입은 2,631억유로로 본예산 전망과 비교해 443억유로 감소하고, 2021년에는 2,961억유로로 2020년보다 33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2020년 117.5%로 전년 대비 19.4%p 증가하고, 2021년엔 다소 감소한 116.2%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2021년 프랑스 예산법안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활성화(France Relance) 계획을 담고 있음

[그림 4] 프랑스의 재정적자



주: 2019년의 빚금 영역은 경쟁력·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관련 비용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재정적자는 3.1%, 제외할 경우 2.3%
출처: 프랑스 재무부, 2021년 예산법안(PLF 2021: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 p. 9

- 녹색성장 지원

-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혁신
-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Ma Prime Rénov” 강화³⁵⁾
-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
- 저탄소 및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개발 지원

35) 주택의 단열 개선, 보일러 교체, 효율적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참고



<표 11> 2021년 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0 본예산	2020 수정예산	2020 전망	2021 예산법안	2020~2021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00.4	460.4	450.2	448.8	-1.4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37.7	394.7	384.6	378.7	-6.0
부처별 지출(Crédits des ministères)	253.2	259.8	259.8	270.6	10.8
미래를 위한 투자 미션 (Mission "Investissements d'avenir")	2.1	2.1	2.1	4.0	1.9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 (Mission "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0.0	52.4	42.7	0.0	-42.7
프랑스 활성화 계획(Mission "Plan de relance")	0.0	0.0	0.0	22.0	22.0
프랑스 개발청 자금 지원(Renforcement des fonds propres de 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0.0	0.0	0.0	1.0	1.0
부채비용(Charge de la dette (yc SNCF))	38.6	36.6	36.2	37.1	0.9
연금기여금액(Contributions au CAS "Pensions")	43.8	43.8	43.8	44.0	0.2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2.7	65.7	65.5	70.1	4.6
지방정부보조금 (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1.2	42.3	42.2	43.2	1.1
EU 보조금 (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1.5	23.4	23.4	26.9	3.5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07.4	242.6	263.1	296.1	33.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93.0	227.2	246.8	271.2	24.4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5.5	69.5	72.7	74.9	2.3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8.2	15.7	29.9	37.8	7.9
에너지제품소비세 (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2.5	10.6	7.8	18.3	10.5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126.0	106.2	111.3	89.0	-22.4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30.8	25.1	25.1	51.2	26.1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4	15.4	16.3	24.9	8.7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1	-7.1	-7.9	-0.1	7.9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2	-0.2	0.0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93.1	-225.1	-195.2	-152.8	42.4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 2021

- 기업 경쟁력 강화
 - 연간 총 100억유로 규모의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 인하
 - * 기업부가가치 부담금(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납부 대상 기업에 대해 납부 세액 감액
 - * 약 3만 2천개 기업의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TFPB)와 기업토지세(composée de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감면
 - * 지역경제기여금(Contribution Economique Territoriale: CET) 납부 대상 기업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 및 수출 지원 강화
- 고용 지원 및 사회통합(cohesion)
 - 부분실업에 대한 임금 지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기 회복을 도움
 - 청년의 고용 지원 및 고용훈련 과정 확대
 -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장학기 수당³⁶⁾ 100유로 인상
-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
 - 2022년까지 2019년 수준의 GDP 회복을 목표로 함
 -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300억유로를 지원해 2050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여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을 촉진함
 - 건물의 에너지 혁신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Ma Prime Rénov"³⁸⁾의 예산을 20억유로 증액
 - 도시의 개발 및 재생 지원
 -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등 활용되지 않는 도시 주변 공간 재건
 -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
 - 에너지순환에 대한 투자
 -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지원
 - 분리수거 및 재활용 센터의 현대화
 - 농업부문의 생태학적 전환
 - 농업부문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자전거와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철도부문 지원
 -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기타]

- 프랑스 정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1천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프랑스 활성화(France Relance)' 발표(2020. 9. 3.)³⁷⁾
 -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1천억 유로 규모의 복구계획(recovery plan)으로, 프랑스의 경쟁력과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조치들을 담고 있음

36)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저소득층의 학비 충당을 위한 지원 제도

37)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lan de relance, <https://www.economie.gouv.fr/presentation-plan-relance>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lancement-plan-relance-3-septembre-2020>

38) 주택의 단열 개선, 보일러 교체, 효율적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참고



-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 구매에 대해 생태학적 보너스 지급(le bonus écologique)
-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한 전환 보조금³⁹⁾ 지급
- 녹색성장을 위한 수소산업 지원에 20억유로 지원
- 국가 경쟁력과 프랑스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340억유로 지원
- 연간 총 100억유로 규모의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 인하
 - 기업부가가치 부담금(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납부 대상 기업에 대해 납부 세액 감액
 - 약 3만 2천개 기업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동산세(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TFPB)와 기업토지세(composée de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감면
 - 지역경제기여금(Contribution Economique Territoriale: CET) 납부 대상 기업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 기술적 주권 강화
 - 프랑스 기업의 기술, 일자리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의 R&D 투자를 유지하고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통합(cohesion)을 강조해 복구계획이 전 영토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360억유로 지원
 - 총 60억유로 규모의 대규모 보건 투자 계획
 - 의료시설의 혁신을 위해 5년간 21억유로 지원
 - 지방 의료부문에 5년간 25억유로 투자
 - 디지털 의료도구의 현대화에 3년간 14억유로 지원
 - 청년 고용훈련 과정 확대
 -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감소 등 일시적 부분실업에 대한 임금 지급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6~18세의 자녀가 있는 300만 이상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신학기 수당⁴⁰⁾ 100유로 인상
 -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식량 공급 등의 조치 강화
 - 해당 경기부양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일부 조치는 2020년 3차 수정예산법에 포함되었고, 다른 조치는 2021년 예산법안에 포함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39) 디젤 자동차 또는 오래된 휘발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40)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저소득층의 학비 충당을 위한 지원 제도



영국

[기타]

■ 지역별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신규 보조금 지원(2020. 9. 9.)⁴¹⁾

- (목적)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사업장 폐쇄 조치에 따라 사업장을 닫는 기업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회 안전망 제공
- (지원 내용) 지역별 코로나19 봉쇄 조치기간 동안 사업장을 폐쇄하는 잉글랜드의 사업체는 매 3주마다 각 소유지에 대해 최대 1,500파운드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대형 사업체⁴²⁾는 1,500파운드, 소형 사업체는 1천파운드를 수급
 -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사업장을 봉쇄한 경우(예: 나이트 클럽)는 수급 불가

■ 킥스타트 제도(Kickstart Scheme) 신청 개시(2020. 9. 2.)⁴³⁾

- (개요) 지난 7월 발표된 일자리 지원 계획의 일환

으로 정부가 20억파운드 규모의 신규 킥스타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

- (주요 내용) 장기 실업 위험에 처해 있고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를 받는 16~24세 청년들을 위해 고용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6개월 기간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
 - 최소 3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가 신청 가능(30개 미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중개 기관을 통해 다른 기관과 통합 신청)
 - 제공되는 일자리는 6개월 간 주당 최소 25시간 이상 근무, 국가 최저 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신규 일자리를 의미
 - 신청서에는 참여 직원의 역량 및 경험 개발을 위한 고용주의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 범위) 정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고용주에게 주당 25시간에 해당하는 국가 최저 임금의 100%와 국가보험 및 연금 부담금을 지급하고, 준비 비용, 지원,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일자리 당 1,500파운드)도 지원
- (시행 일정) 동 제도는 우선 2021년 12월까지 운영(추후 연장 가능성도 있음)되며 1차 일자리는 11월부터 제공될 예정임

41) HM Treasury, Ministers announce new grants for businesses affected by local lockdowns, 2020.9.9.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nisters-announce-new-grants-for-businesses-affected-by-local-lockdowns>

42) 대형 사업체는 부동산 과세 표준가액이 5만 1천파운드 이상 또는 연간 임대료나 모기지 지불 규모가 5만 1천파운드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임(소형 사업체는 5만 1천파운드 미만)

43) HM Treasury, Landmark Kickstart scheme opens, 2020. 9.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ndmark-kickstart-scheme-open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Kickstart Scheme opens for employer applications, 2020. 9.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kickstart-scheme-opens-for-employer-application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Check if you can apply for a grant through the Kickstart Scheme, 2020. 9. 2.,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an-apply-for-a-grant-through-the-kickstart-scheme>



■ 코로나19 관련 차세대 코로나 검사 기술과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발표(2020. 9. 3.)⁴⁴⁾

-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최신 기술 시범 운영과 겨울철 검사 증가에 대비한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5억파운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
 - Salford 지역에서 커뮤니티 차원의 정기 검사(반복 모집단 검사)를 시범 시행하여 무증상, 경증 환자 등의 코로나19 조기 판별에 기여
 - Southampton과 Hampshire 지역의 기존 파일럿 검사(정기 타액 검사, 20분 신속 진단) 확대
 - 기존의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⁴⁵⁾ 검사 여력을 추가로 확대

■ 영국 정부, 일자리 보호와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 계획(겨울 경제 계획(Winter Economy Plan)) 발표(2020. 9. 24.)⁴⁶⁾

- (배경) 영국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후 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향후 수개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자리 보호 및 기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함
- (일자리 보호 추가 지원) 신규 일자리지원제도(Job Support Scheme) 도입 및 기존 자영업자 소득 지원(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연장

- (일자리 지원 제도(Job Support Scheme))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새로운 일자리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수요 감소로 정규 근무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기존의 코로나19 고용 유지 보조금 제도는 10월 말 종료 예정임

- (신청 자격) 근로자는 정규 근무시간의 최소 33%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모든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한 대기업 고용주⁴⁷⁾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고용주와 정부가 평소 급여의 각각 3분의 1씩 부담(정부 기여금 한도는 월 최대 697.92파운드임)
- (자영업자 소득 지원 보조금(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SEISS) Grant) 연장
 - (신청 자격) 현재 자영업자 소득 지원 보조금 수급 자격이 있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수요 감소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지원기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개월간 보조금 지급
 - (지원규모) 1차 보조금은 2020년 11월~2021년 1월(3개월) 기간에 대해 월 수익 평균의 20%를 일시불로 지급(총 한도 1,875파운드)

44)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500 million funding for quick result COVID-19 test trials, 2020. 9.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500-million-funding-for-quick-result-covid-19-test-trials>

45) polymerase chain reaction

46) HM Treasury, Chancellor outlines Winter Economy Plan, 2020. 9. 24.,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outlines-winter-economy-plan>

HM Treasury, Winter Economy Plan, 2020. 9. 2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inter-economy-plan>

HM Treasury, Job Support Scheme, 2020. 9. 2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job-support-scheme>

HM Treasury,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SEISS) Grant Extension, 2020. 9. 2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lf-employment-income-support-scheme-seiss-grant-extension>

47) 대기업 고용주는 보조금 적용기간 동안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등을 할 수 없음

하고 2차 보조금은 2021년 2~4월(3개월) 기간에 적용되며 지원 금액은 추후 검토 예정

- (기업 부담 완화) 정부 지원 대출 제도의 신청기간 연장, 회복 지원 대출(Bounce Back Loans)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대출(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s)의 상환 조건 변경, 조세 감면 및 유예 등
 - 현재 운영 중인 정부지원 대출제도들⁴⁸⁾의 신청기간을 2020년 11월까지 연장
 - 회복 지원 대출(BBLS)을 받은 기업의 부담 완화(Pay as You Grow)
 - 대출 상환기간 연장(6년→ 최대 10년)을 선택 가능하며 이 경우 월 평균 상환액이 약 절반 감소
 - 최대 6개월 동안 이자만 상환(최대 3회 활용 가능)하거나 최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법도 선택 가능하여 기업이 개별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음
 - 대출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대출(CBILS)의 대출 기관이 대출기간을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接客업 및 관광부문의 한시적 VAT 세율 인하 (20%→5%) 기한을 당초 내년 1월 12일에서 내년 3월 말로 연장
 - 올해 3~6월 기간 VAT 납세를 연기한 기업은 내년

3월 말에 일시불로 전액납부하는 대신 FY2021-22에 11회 균등분할 방식으로도 납부 가능

-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납부 기한 연장 서비스(Time to Pay) 혜택 강화
 -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현재까지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NHS와 공공 서비스 지원에 687억파운드 추가 자금을 승인함
 - 코로나19 자가격리 강제 및 지원 패키지 발표 (2020. 9. 21.)⁴⁹⁾
 - (자가격리 강제) NHS Test and Trace에 따른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벌금을 부과
 -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벌금 1천파운드 부과(반복 위반 시 최고 1만파운드)
 - (지원금 지급(Test and Trace Support payment)) 저소득층이 재정적 부담 없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필요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
 - (자격) 잉글랜드에서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약 400만명 미만으로 추정)
 - (지원금액) 지원금 500파운드
 - (시행시기) 9월 28일부터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48) Bounce Back Loan Scheme(BBLS),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CBILS), Coronavirus Large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CLBILS), Future Fund

49)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New package to support and enforce self-isolation, 2020. 9. 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ackage-to-support-and-enforce-self-isolation>



중국

[기타]

■ 국무원, 디지털 경제를 통한 신(新) 소비 촉진과 경제회복 지원을 발표(2020. 9. 11.)⁵⁰⁾

-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가 급감하였으나 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주축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신 소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비대면 소비모델의 혁신, 온라인 교육 등의 커리큘럼과 온라인 의료서비스 보급의 확대, 헬스케어 및 여행 등 분야의 온·오프라인 융합, 스마트 슈퍼 등 새로운 유통 모델 모색, 농업과 상업을 연계한 농산물 공급망 구축 강화 방안을 언급함
- 중국 상무부는 2020년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적인 ‘소비 촉진의 달’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⁵¹⁾
 - 이 기간 동안 중국 상무부는 관련 부처 및 지역과 함께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회복을 추진할 계획임

- 일부 지방(산시성, 헤이룽장성)은 각 성(省)의 재정을 각각 특별자금으로 투입하고 각 시(市)는 이에 협력하여 소비쿠폰 발급과 카드할인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선전(深圳)은 가전제품 디지털기기 소비행사를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중국 은련카드(中国银联)와 중국 농업은행(农业银行)은 영세기업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할 계획이고, 중국 공상은행(工商银行)도 영세기업 대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할 계획임

■ 중국 국무원, 베이징(北京), 후난(湖南), 안후이(安徽)의 자유무역시험구역(FTZ) 건설과 저장(浙江)의 자유무역시험구역 확장 방안을 발표함(2020. 9. 22.)^{52), 53)}

-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역(FTZ)⁵⁴⁾의 확대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모색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내재적 동력을 끌어내어 새로운 발전을 조성하고자 함
 - 중국은 현재 18개[상하이(上海), 광둥(广东), 라오닝(辽宁), 하이난(海南), 산둥(山东) 등]의 자유무역시험구역이 있음

50) 每经网, <http://www.nbd.com.cn/articles/2020-09-09/1502266.html>, 검색일자: 2020. 9. 14.

51) 人民网, <http://finance.people.com.cn/n1/2020/0907/c1004-31851715.html>, 검색일자: 2020. 9. 14.

52) 人民网(조선판),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4831.html>, 검색일자: 2020. 9. 28.

53) 人民网, <http://energy.people.com.cn/n1/2020/0922/c71661-31869915.html>, 검색일자: 2020. 9. 28.

54) 자유무역시험구역(FTZ, Free Trade Zone)은 2013년 9월 상하이에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 1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무역과 투자 등 방면에서 WTO 관련 규정 보다 혜택이 크며, 관세구역 외 특정 구역 내 면세로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함

- 자유무역시험구역(FTZ)의 건설과 확장에 대해서는 지방 맞춤형 정책지원을 시행할 예정임
 - 베이징의 경우 과학기술 혁신과 서비스업 개방,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건설
 - 후난의 경우 공정 기계, 궤도 교통설비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 육성, 산업인터넷 구축 등의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안후이의 경우 허페이(合肥), 우후(芜湖), 병부(蚌埠) 3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조성하고자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재정포럼

2020년 10월호 통권 제292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김석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0년 10월 15일 발행 / 제24권 제10호(통권 제29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신창디지털프린텍 TEL: 042-631-2307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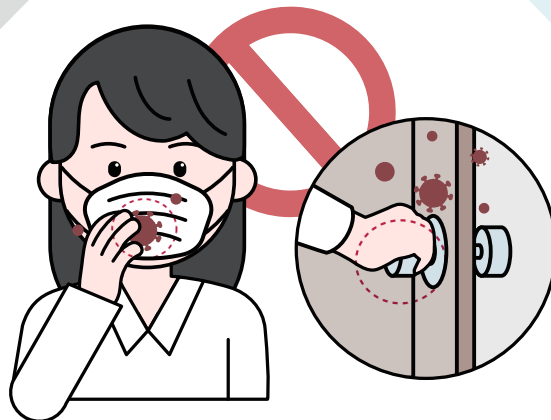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